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와 청년층 인력 활용 방안”의 최종보고서로서 지식경제부의 2012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와 청년층 인력 활용 방안

2012. 12.

연구기관: 다산경제연구원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제 출 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식경제부의 수탁연구과제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와 청년층 인력활용 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2

다산경제연구원

대표 이 중 원

— 연 구 진 —

|         |     |            |
|---------|-----|------------|
| 연구책임자 : | 조준모 | 성균관대학교     |
| 참여연구자 : | 조동훈 | 한림대학교      |
|         | 진숙경 | 성균관대 HRD센터 |
| 연구보조원 : | 안준기 | 성균관대 HRD센터 |
|         | 우광호 | 성균관대 HRD센터 |
|         | 이 태 | 성균관대 HRD센터 |



# < 목 차 >

연구요약 ..... i~xx

**제1장. 청년인력 미스매치의 원인 및 관련정책 정리 ..... 1**

1.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 및 청년인력 미스매치의 원인 ..... 1

- 1) 청년인력 공급측면의 요인들 ..... 2
- 2) 청년인력 수요측면의 요인들 ..... 7

2. 청년층 대상 일자리 정책 정리 ..... 16

- 1) 2010년 이전의 청년 일자리 정책 ..... 17
- 2) 2010년 이후의 청년 일자리 정책 ..... 20

3. 소결 ..... 22

**제2장. 해외 주요 국가의 청년인력 활용방안 ..... 26**

1. 주요국가의 청년인력 수급현황 ..... 26

2. 해외 주요 국가의 청년층 고용정책 ..... 30

- 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30
- 2) 각 나라별 청년층 고용정책 ..... 34

3. 소결 ..... 57

**제3장. 청년층의 근로 실태 현황 ..... 59**

1. 산업별 청년 고용 현황 ..... 59

2. 청년층의 임금 및 근로시간 ..... 63

- 1) 임금 ..... 63
- 2) 근로 시간 ..... 68

3. 청년층의 4대 보험 및 상여금, 퇴직금, 노동조합 적용 현황 ..... 74

|  |     |
|--|-----|
| 1) 4대 보험 .....                                     | 74  |
| 2) 상여금, 퇴직금 적용 여부 및 노조가입 비율 .....                  | 81  |
| 4. 산업 및 기업규모별 청년 고용 현황 .....                       | 86  |
| 5. 청년층의 산업 및 규모별 임금, 근로시간 .....                    | 89  |
| 1) 임금 .....  | 89  |
| 2)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                               | 93  |
| 6. 청년층의 산업 및 규모별 4대 보험, 상여금, 퇴직금, 노동조합 적용 현황 ..... | 99  |
| 1) 4대 보험 .....                                     | 99  |
| 2) 상여금, 퇴직금 적용 여부 및 노조가입 비율 .....                  | 106 |
| 7. 청년 고용현황 로드맵 .....                               | 110 |
| 1) 추정 방법 .....                                     | 110 |
| 2) 산업별 취업자 전망 .....                                | 111 |
| 3) 청년고용현황 로드맵 .....                                | 113 |
| 8. 소결 .....  | 131 |

## **제4장.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 133

|                              |     |
|------------------------------|-----|
| 1. 청년고용 실태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  | 133 |
| 2. 청년문화 친화적 고용대책 .....       | 137 |
| 1) 청년고용 정책의 문화적 접근 필요성 ..... | 138 |
| 2) 청년문화와 정합적인 정책의 재구성 .....  | 141 |

|                 |     |
|-----------------|-----|
| [ 참고 문헌 ] ..... | 146 |
|-----------------|-----|

## 〈 표 목차 〉

|   |    |
|---|----|
| <표 1-1>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유형 .....                    | 5  |
| <표 1-2>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좋은 일자리 수 추이 .....           | 8  |
| <표 1-3> 주요기업의 신규 및 경력직 채용추이 .....               | 14 |
| <표 1-4> 대졸 신규 채용인력의 능력수준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 | 15 |
| <표 1-5> 2003년 이후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현황 .....            | 17 |
| <표 1-6> 2010년도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관련사업 현황 .....         | 21 |
|   |    |
| <표 2-1> 청년실업률, 청년고용률 추이 .....                   | 26 |
| <표 2-2> 훈련정책과 보조금일자리 비교평가 .....                 | 32 |
| <표 2-3> 학교-직장 이행의 유형분류 .....                    | 38 |
| <표 2-4> 2000년대 독일의 청년실업대책 .....                 | 39 |
| <표 2-5> 프랑스 긴급 고용대책 주요내용 .....                  | 44 |
|   |    |
| <표 3-1> 산업별 청년 고용 현황 .....                      | 60 |
| <표 3-2> 산업별 청년의 정규직 고용 현황 .....                 | 62 |
| <표 3-3> 산업별 청년의 정액급여 현황 .....                   | 64 |
| <표 3-4> 산업별 청년의 초과급여 현황 .....                   | 65 |
| <표 3-5> 산업별 청년의 특별급여 현황 .....                   | 66 |
| <표 3-6> 산업별 청년의 소정실근로일수 현황 .....                | 68 |
| <표 3-7> 산업별 청년의 휴일실근로일수 현황 .....                | 70 |
| <표 3-8> 산업별 청년의 소정실근로시간수 현황 .....               | 71 |
| <표 3-9> 산업별 청년의 휴일실근로시간수 현황 .....               | 72 |
| <표 3-10> 산업별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               | 75 |
| <표 3-11> 산업별 청년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               | 76 |
| <표 3-12> 산업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               | 78 |
| <표 3-13> 산업별 청년의 산재보험 가입 현황 .....               | 79 |
| <표 3-14> 산업별 청년의 상여금 적용 현황 .....                | 81 |
| <표 3-15> 산업별 청년의 퇴직금 적용 현황 .....                | 83 |
| <표 3-16> 산업별 청년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 .....               | 84 |



|   |     |
|---|-----|
| <표 3-17>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 고용 현황             | 86  |
| <표 3-18>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의 정규직 현황           | 87  |
| <표 3-19>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정액급여 현황             | 90  |
| <표 3-20>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초과급여 현황             | 91  |
| <표 3-21>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특별급여 현황             | 92  |
| <표 3-22>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소정실근로일수 현황          | 94  |
| <표 3-23>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휴일실근로일수 현황          | 95  |
| <표 3-24>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소정실근로시간수 현황         | 96  |
| <표 3-25>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휴일실근로시간수 현황         | 97  |
| <표 3-26>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 100 |
| <표 3-27>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 102 |
| <표 3-28>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 103 |
| <표 3-29>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의 산재보험 가입 현황       | 104 |
| <표 3-30>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의 상여금 적용 현황        | 106 |
| <표 3-31>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의 퇴직금 적용 현황        | 107 |
| <표 3-32>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       | 108 |
| <표 3-33> 산업 대분류 취업자 전망                    | 112 |
| <표 3-35> 산업 대분류 청년 고용의 질 평가               | 116 |
| <표 3-36> 산업 대분류 청년 고용의 안정성 평가(4대보험)       | 118 |
| <표 3-37> 산업 대분류 청년 고용의 안정성 평가(상여금, 퇴직금)   | 119 |
| <표 3-38>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 고용 현황             | 120 |
| <표 3-39>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 고용 현황 격차          | 121 |
| <표 3-40>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초과근로 격차              | 123 |
| <표 3-41> 산업 및 규모별 청년 고용의 안정성 평가(4대보험)     | 124 |
| <표 3-42> 산업 및 규모별 청년 고용의 안정성 평가(상여금, 퇴직금) | 125 |
| <표 3-43> 청년 고용 로드맵 종합                     | 127 |
| <표 3-44> 청년 고용 로드맵 종합(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 130 |

## < 그림 목차 >

|  |     |
|--|-----|
| [그림 1-1] OECD 주요국의 사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            | 4   |
| [그림 1-2] 기업규모 및 근로조건(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추이 ..... | 9   |
| [그림 1-3] 중소기업의 상대적 노동생산성 및 임금추이 .....            | 11  |
| [그림 1-4] 제조업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          | 12  |
| [그림 1-5] 대졸 신규 취업자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 추이 .....         | 13  |
|  |     |
| [그림 2-1] 주요국들의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 1985-2009 .....      | 27  |
| [그림 2-2] 경제위기기간 인적특성에 따른 실업률 .....               | 28  |
| [그림 2-3] OECD국가별 청년 및 성인 실업률 비교 .....            | 29  |
| [그림 2-4] 근로인구 중 청년층의 비중 추정(1975-2025) .....      | 29  |
| [그림 2-5] 신고용협정 구조 .....                          | 35  |
| [그림 2-6] 2010년과 2008년 NEET 비율 차이 .....           | 50  |
|  |     |
| [그림 3-1] 표준정규분포 곡선 .....                         | 110 |
| [그림 3-2] 산업 대분류 중장기 취업자 전망 .....                 | 111 |



## [ 연구요약 ]

### 제1장. 청년고용 문제의 원인 및 관련정책

-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청년실업의 주요원인을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
  
- 청년층의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고학력화와 함께 신규 대졸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청년실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지속적인 고학력화 추세에 맞춰 구직자가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산업구조가 노동절약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기술진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전 산업에 걸쳐 취업계수가 감소하고 있음. 또한 청년들의 고학력화 추세와 달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절대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을 배출하는 학교 교육시스템과 인력의 수요처인 산업계와의 부조화도 청년실업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됨. 즉, 산업과 기업체의 노동수요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육시스템은 시스템 자체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적절한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청년인력의 수요측면의 요인들도 청년인력의 고용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20% 내외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외환위기 이후 절대수가 감소해옴.
  -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함께 노동시장의 양극화 역시 청년층 취업난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 즉, 대기업 및 공공부문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중심의 2차 노동시장 간에 고용의 질과 근로조건 등에서 격차가 심한 이중구조 문제도 청년층 실업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연구됨.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인력채용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제시됨. 즉,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인력을 적게 쓰는 고부가가치사업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하여왔고 자동화와 아웃소싱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기업의 인력채용 방식도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수시모집 증가, 비정규직 및 경력직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대내적인 산업구조의 변화 및 전반적인 사회의식의 변화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초래하는 발생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 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악화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생산성 및 고용흡수력 저하로 미래 고용사정은 매우 부정적.
-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급속한 산업 및 기업 간 구조조정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흡수할 서비스업 및 다수 중소기업, 즉, 고용 흡수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저조함.
- 생산의 글로벌화와 함께 대기업의 해외생산 및 조달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기업 수와 거래액수가 점차 하락해옴.

○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에 있어서도 창업보다는 특정 전문직 또는 대기업을 선호하며 안정된 삶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해 가고 있음.

-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특히 고학력의 청년층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는 니트족/프리터족의 증가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청년층의 직업에 대한 근본적 의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변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됨.

○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종합실업대책 수립 이외에 별도의 '청년고용대책'을 수립하여 2010년 현재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서 발표, 추진 중에 있음.

- 외환위기 직후에는 주로 인턴제 또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의 실업대책이 추진됨.
- 2000년 이래로는 청년실업률이 6~7% 수준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청년실업이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일자리 공급감소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그리고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인 청년층 대상 실업대책을 추진하여옴.

○ 청년 일자리대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청년층 대상 정부사업에 대체로 부정적이 평가를 내리고 있음.

- 기존의 청년고용 사업들은 각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유사·중복 사업들이 많고, 정책의 대상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이 낮으며, 추진체계의 분권화와 전달체계 간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청년 일자리대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는 사업참여자의 정규직화, 직무능력 향상, 만족도 제고효과 및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이러한 청년인턴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제도의 지속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인턴십이 중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

업 참여자들의 기업 내 직장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청년고용대책의 성과가 높은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고용인센티브 사업이나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보다는 직업훈련이나 공공고용서비스 등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고용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 간 유기적 연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평가체계 기능의 통합도 필요하며, 유사·중복 사업의 검토를 통한 재조정 및 사업간 연계성 강화가 요구됨.

## 제2장. 해외 주요 국가의 청년인력 활용방안

- 2장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청년층 인력 수급현황과 각 나라별 청년인력 정책을 살펴봄.
-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되는 200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과 인구대비 실업률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여 그 문제점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 15-24세의 연령대에서 다른 연령층 대비 고용률의 감소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층의 타격이 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 한국은 성인대비 청년실업률이 약 3개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우려되는 수준이며 이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 6개 주요국의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와 미흡한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 시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 먼저, 영국의 경우 장점으로서는 아래의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음.
  - 첫째, 정부가 청년, 장기실업자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취직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둘째,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능을 얻어 취직으로의 이행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 셋째, 단순히 구인정보를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고 행정서비스나 직업훈련의 정보제공 등 카운슬링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
  - 마지막으로, 교육, 직업훈련을 국가인정직업자격(NVQ)의 취득과 연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영국정부에서 실시한 신고용협정은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특히 청년층 실업률 감소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 받고 있음.
  
-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고용협정의 고용창출효과를 영국 정부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고 청년을 제외한 장애인,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아직 소수의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음.
  
- 독일은 직업교육에 기반한 중·고등 교육과정으로, 도제시스템과 기업과 연계된 직업교육체제가 노동수요와 공급간의 미스매칭을 줄이는 이원화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으로서는 이원화된 시스템 하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공신력이 높다는 점과 기업과 훈련생 그리고 국가사이에서 그 재원과 조달을 결정함으로써 인력 수요와 공급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훈련이 종료된 후 고용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시스템의 단점으로는 15세에서 19세 사이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진행됨으로 청년층의 진로가 너무 이른 나이에 결정된다는 지적이 존재함.
- 또한 급변하는 산업구조하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시간이 갈수록 훈련종료 후 견습생을 채용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초기단계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실패한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에 미비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프랑스에서는 Schwartz 보고서에서 제시한 16~18세 사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정책은 아래의 4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하였음.

- 첫째, 청년층이 학교와 학교 이외의 기관, 즉 기업, 사회단체, 그리고 행정기관 등에서 이론교육과 실기를 번갈아 가면서 습득할 수 있는 훈련체계여야 함.
- 둘째, 직업교육의 학점 인증제를 실시하여 직업교육의 질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셋째, 직업훈련과 노동조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청년층이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이해하도록 행정기관, 기업, 그리고 각종 사회적 파트너들이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위의 원칙을 바탕으로 서비스업 및 취약계층 청년층에 대한 고용대책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 이러한 정책들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수의 취약계층 청년들이 참여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비율은 높지 않은 점을 단점으로 들 수 있음.
-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에 이해 부족으로 취업인 된 경우에도 정

규직 또는 장기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탈리아의 경우, 다른 주요국에 비해 청년층 실업률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에 대한 장벽과 한국과 유사하게 성인이 된 후에도 상당기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관습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탈리아의 청년층 고용대책은 크게 직업훈련 계약과 도제 계약을 들 수 있음.

-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은 크게 장기(24개월)와 단기(12개월) 직업훈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훈련 모두 사용자의 사회보장부담금을 경감하고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낮추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도제 계약은 14세부터 20세 사이의 청년층 실업자에게 손재주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일 경험과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 도제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임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의 감소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음.

○ 하지만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과 도제 계약은 참가인원수 등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층의 고용증대에 기대한 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청년층 고용인원수는 상당히 증가했지만, 그와 같은 고용증가의 상당 부분은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한 것에 불과했음.

○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이 호경기에 크게 증가했다는데 있음.

- 이는 기업들이 호경기에 필요 인력을 전부 채용하지 않고 청년층 직업훈

련 계약에 의한 청년층 노동력을 일시적으로 활용하여 노동비용을 낮추고 고용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을 이용했기 때문.

- 미국의 경우는 비교적 낮은 청년실업률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그 비율이 OECD 평균을 넘어섰고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심각성이 대두 되고 있음.
- 미국에서 실시한 청년고용정책은 크게 전반적인 청년층 교육훈련과 취약 청년층을 중심으로 둔 프로그램을 나눌 수 있음.
  - 청년층 훈련교육은 다시 경력 및 기술교육과 도제과정(apprenticeship)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미국학생 90%가 경력 및 기술 교육 과정(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ourse, CTE)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과정을 하나 이상 수료하였고 수료는 취업과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음.
  - 도제과정은 전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자에 의해 결정됨으로 그 구조나 성격이 매우 다양한데, 모든 등록도제과정은 적어도 연간 2,000시간의 OJT 교육이 있어야 하고 기술수준이 높은 직업의 경우 적어도 연간 144시간의 교실수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실시됨.
- 취약 청년층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 복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는 Job Corps 프로그램, Youth Build 프로그램, 그리고 WIA 청년 활동 프로그램이 존재함.
- 미국의 청년고용관련 프로그램들은 주정부마다 그 지역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도 각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을 유도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맞는 정책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대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음.
  - 신규 졸업자 또는 실업 졸업자에 대한 지원과 프리타<sup>1)</sup>에 대한 취직 지원, 그리고 주니어 인턴쉽으로 직업의식 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뉘짐.
- 일본의 청년실업대책의 핵심인 직업훈련(일본식 듀얼 시스템)과 취업지원정책은 한국의 고졸 이하 청년실업에도 상당부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일본의 듀얼 시스템은 고졸 이하의 계층을 두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5개월, 1년, 2년 코스로 다양화하고 훈련방법도 학습과 기업체간 조화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 특징임.
- 수행기관도 학교, 기업, 업종별 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 위탁하여 지역과 노동시장 수요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고용 트라이얼(trial) 제도는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신규고용 촉진 지원금, 즉 청년 고용 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주요국의 청년 대책을 살펴봤을 때, 청년대책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직접적인 고용이 가능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 지역에 맞는 수요중심적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음.
- 또한 전반적인 청년층을 아우르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취약 청년층에 대한

---

1) 프리타(freeter)란 free(자유롭다) + arbeit(시간제 근로)가 합쳐진 말로, 15~34세의 아르바이트나 계약 파견 사원 등 저임금으로 단기간의 취업상태를 반복하는 청년 근로자 또는 현재 무직으로 아르바이트나 계약 파견 사원을 희망하는 사람을 의미함.

정책은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효과가 있으며, 청년고용정책이 일부 저질의 일자리를 대신하는데 이용되어 다른 연령대의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함.

- 그리고 보조금 지원을 오랜 기간 받는 청년의 경우 낙인효과로 인해 기업에서 꺼리는 등 과도한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청년층 취업에 부정적인 효과와 보조금의 사중효과로 사회적 낭비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과 기업의 부정적인 인식과 이해부족은 청년고용정책의 가장 큰 거림돌 중 하나임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3장. 청년층의 근로 실태 현황

-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청년층의 근로 환경에 맞춰 살펴보고자 함.
  - 이에 따라 산업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고용의 질적, 양적 비교를 통해 취약 직종을 제시하고자 함.
  - 청년층의 근로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최근 데이터인 2011년 자료를 이용함.
  
- 먼저 산업별 청년 고용 실태를 분석한 후, 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청년층의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고용의 안정성 측면인 정규직 비율을 살펴본 후, 고용의 질적인 측면인 임금, 근로일수, 노동시간, 4대 보험, 상여금 및 퇴직금 적용, 노동조합 가입 비율을 통해 청년 고용 실태를 분석함.
  - 또한 고용 전망 또한 중요한 변수라 판단하여 결과에 반영함.
  - 이러한 현황을 정규분포의 특성을 이용하여 Red Zone, Yellow Zone, Green Zone으로 구분하여 취약 산업을 파악하고 있음.

| 평가          | 정의                             | 구분                              |
|-------------|--------------------------------|---------------------------------|
| Red Zone    | - 청년 취약직종<br>-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집단  | $\mu - 1\sigma \geq$ , 하위 15.8% |
| Yellow Zone | - 청년 취약 차상위 직종<br>- 관리가 필요한 집단 | $\mu \pm 1\sigma$ , 중위 68.2%    |
| Green Zone  | - 청년 안정직종<br>- 유지관리 및 벤치마크 집단  | $\mu + 1\sigma \leq$ , 상위 15.8% |

○ 산업별 분석 결과,

|                      | 취업       |    |     | 고용의 질 |          | 고용 안정성   |           | 종합 |   |
|----------------------|----------|----|-----|-------|----------|----------|-----------|----|---|
|                      | 취업<br>전망 | 취업 | 정규직 | 임금    | 초과<br>근로 | 4대<br>보험 | 상여<br>토착금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R        | Y  | Y   | Y     | G        | Y        | Y         | 7  | Y |
| 광업                   | R        | R  | Y   | Y     | R        | Y        | Y         | 4  | R |
| 제조업                  | R        | Y  | G   | Y     | R        | Y        | Y         | 6  | Y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Y        | R  | Y   | G     | Y        | G        | Y         | 8  | Y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G        | R  | G   | Y     | Y        | G        | Y         | 9  | G |
| 건설업                  | Y        | R  | Y   | G     | Y        | Y        | Y         | 7  | Y |
| 도매 및 소매업             | Y        | Y  | Y   | Y     | Y        | Y        | Y         | 7  | Y |
| 운수업                  | Y        | Y  | Y   | Y     | Y        | Y        | Y         | 7  | Y |
| 숙박 및 음식점업            | R        | G  | R   | R     | G        | R        | R         | 4  | R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G        | Y  | Y   | Y     | Y        | Y        | Y         | 8  | Y |
| 금융 및 보험업             | Y        | Y  | Y   | G     | G        | Y        | Y         | 9  | G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Y        | R  | Y   | Y     | G        | Y        | Y         | 7  | Y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G        | Y  | Y   | G     | Y        | Y        | Y         | 9  | G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G        | Y  | Y   | Y     | Y        | Y        | Y         | 8  | Y |
| 교육서비스업               | Y        | Y  | R   | Y     | G        | -        | R         | 5  | R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G        | Y  | G   | Y     | Y        | Y        | Y         | 9  | G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G        | G  | R   | R     | G        | R        | R         | 6  | Y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Y        | Y  | Y   | Y     | G        | Y        | R         | 7  | Y |
| 전산업                  | Y        | Y  | Y   | Y     | Y        | Y        | Y         | 7  | Y |

○ Red Zone

- 광업의 경우 취업 전망과 취업자 수, 초과 근로 부분에서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청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나머지 세부 항목들

에 대해서도 관리를 요하는 수치를 보임.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취업자 수와 초과 근로 부분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취업전망, 정규직 비율, 임금, 4대 보험 적용, 상여·퇴직금 적용 부분 모두 취약하여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는 초과 근로가 적어 다른 산업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정규직 비율과 상여·퇴직금 적용 비율 등이 청년층 내에서도 떨어지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함.

#### ○ Yellow Zone 하위 산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취업전망 및 취업자 수, 초과근로 부분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정규직 비율 및 임금, 4대 보험 적용, 상여·퇴직금 적용 부분에서 평가가 낮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 Green Zone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청년 취업자 수는 적지만 앞으로의 취업전망과 정규직 비율, 4대 보험 적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 및 보험업은 청년층의 임금 및 초과 근로 부분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취업 전망 및 임금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취업 전망 및 정규직 비율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별 격차를 확인한 결과,

- 기업 규모별 청년층의 고용율과 정규직 비율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오히려 더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임금의 경우는 모든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낮고, 평균 격차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정규직 여부와 같은 일자리의 안정성 보다는 임금과 같은 일자리의 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반증함.

|                      | 취업       |    |     | 고용의 질 |          | 고용 안정성   |           | 종합 |   |
|----------------------|----------|----|-----|-------|----------|----------|-----------|----|---|
|                      | 취업<br>전망 | 취업 | 정규직 | 임금    | 초과<br>근로 | 4대<br>보험 | 상여<br>퇴직금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R        | Y  | G   | Y     | Y        | Y        | R         | 6  | Y |
| 광업                   | R        | Y  | G   | Y     | Y        | Y        | Y         | 7  | Y |
| 제조업                  | R        | Y  | Y   | Y     | Y        | Y        | Y         | 6  | Y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Y        | Y  | Y   | Y     | Y        | Y        | G         | 8  | Y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G        | Y  | Y   | Y     | G        | Y        | Y         | 9  | G |
| 건설업                  | Y        | Y  | Y   | R     | R        | Y        | Y         | 5  | R |
| 도매 및 소매업             | Y        | Y  | Y   | Y     | Y        | Y        | Y         | 7  | Y |
| 운수업                  | Y        | Y  | G   | Y     | R        | Y        | Y         | 7  | Y |
| 숙박 및 음식점업            | R        | Y  | R   | Y     | Y        | R        | R         | 3  | R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G        | G  | G   | Y     | Y        | Y        | Y         | 10 | G |
| 금융 및 보험업             | Y        | Y  | G   | Y     | Y        | Y        | Y         | 8  | Y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Y        | Y  | G   | Y     | Y        | Y        | Y         | 8  | Y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G        | Y  | G   | Y     | Y        | Y        | Y         | 9  | G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G        | Y  | G   | Y     | R        | Y        | Y         | 8  | Y |
| 교육서비스업               | Y        | G  | G   | Y     | Y        | -        | Y         | 8  | Y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G        | Y  | G   | Y     | Y        | G        | Y         | 10 | G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G        | G  | Y   | Y     | Y        | R        | Y         | 8  | Y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Y        | Y  | G   | Y     | Y        | R        | R         | 6  | Y |
| 전산업                  | Y        | Y  | Y   | Y     | Y        | Y        | Y         | 7  | Y |

○ Red Zone

- 건설업의 경우는 임금 및 초과근로 분야에서 상대적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 전망, 정규직 비율, 4대 보험 적용, 상여·퇴직금 적용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책 제언

- 건설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해소 :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상여금 적용대상 확대 :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및 퇴직금 사전 정산 방식 개선,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의 처우 관리.

## 제4장.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 주요국의 청년 대책을 살펴봤을 때, 청년대책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직접적인 고용이 가능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 지역에 맞는 수요 중심적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에 도움이 됨.

- 따라서 각 지역이나 수요에 맞추어 청년고용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작 단계에서부터 보다 세심한 계획수립이 필요.
- 또한 전반적인 청년층을 아우르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취약 청년층만을 집중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구분하여 수립하여야만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청년고용정책이 일부 저질의 일자리를 채워주는데 악용되어 다른 연령대의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경쟁으로 혹은 세대간 일자리 갈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정부의 청년고용 장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취업자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시부터 기업의 정확한 요구 파악과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

○ 본 연구의 중소기업 청년층과 대기업 청년층의 고용실태 격차 분석에서는 상당수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정규직 비율이 대기업의 정규직 비율 보다 높아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종사상 지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하지만 임금격차 부분에서는 모든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임금의 경우 개인 및 기업의 생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일괄적인 정책은 현실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적용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함.

- 건설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거래가 일반적이고 도급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근로 조건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음.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선 산업구조 공평화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 또한 원청의 성과주의 확대와 원·하청간의 성과공유, 그리고 원·하청관계 형성시 임금수준과 임금체계에 대한 서면계약주의를 확대하여 임금수준과 공평거래의 상호작용이 선순환을 그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중소기업 청년층과 대기업 청년층의 고용실태 격차 분석에서는 상당수 산업에서 고용안정성을 추측할 수 있는 4대 보험 적용 비율이나 상여·퇴직금 적용 비율에서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동종 산업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에도 원인이 있으나, 열악한 근무환경, 직업-주거환경의 불일치 등도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있어 단순한 인력양성 및 매칭 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지역에서 인재를 교육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수용하는 취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단위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야함.

○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기존의 다양한 정책을 연계하고 강화하여 청년고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함.

- 지역단체 및 산업 등의 예산지원을 일자리 창출실적과 연계하여 고용창출형 산업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이 고용창출과 좀 더 긴밀히 연결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정부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지자체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객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많은 사업을 실시하기 보다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 나가야함.

○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들 및 분석결과들을 청년문화 친화적 고용대책의 관점과 접목시켜 시사점과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청년문화의 특징은 자유분방함, 다양성, 개성으로 표현되며 조직 내 새롭게 등장한 이러한 젊은 세대를 가리켜 ‘브라보(BRAVO) 세대’라고 정의내림.
- 하지만 동일한 BRAVO세대들을 가리켜 혹자는 ‘88만원세대’라고도 칭하며, 이렇게 BRAVO의 특성을 가졌지만 처한 현실은 88세대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청년층은 노동공급을 전담하고 있음.

- 그간 대부분의 청년고용정책 패러다임은 노동시장의 열패자나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시혜성 정책이었던 측면이 존재.
- 앞으로는 ‘청년들이 일을 통해 꿈을 이루는 나라’라는 모토를 가지고 청년 구직자들을 열패자로, 또는 패배주의에 젖은 구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힘찬 주역으로써 주목하는 문화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메뉴의 세부사항에 녹아들어가야만 함.

○ 청년문화에 정합적인 정책의 재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음.

○ 먼저 청년층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구직자들의 높은 눈높이의 원인이 그들의 높은 콧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여건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뤄야 함.

- 이를 위해 우선 각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린 사업장 정책을 펼쳐 나가고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뿐만 아니라, 대기업 대비 장기근속 및 합리적인 업무부담 등 중소기업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대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진로설정에 실질적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성해 나가야 함.

○ 기업차원에서는 중소기업에서의 직장경험이 직무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무설계를 하고 청년문화에 정합적인 인사관리를 해나가야 함.

- 이를 위해서 업종별 협의체에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청년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여 기업의 조직문화에 청년문화 정합적인 인사관리가 현장에서 수행되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야함.

- 또한 불필요한 스펙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기업별 최소 스펙을 공지하고 이 이상의 스펙은 불필요하며 직무능력 중심으로 선별해 나가는 채용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함.
  - 더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열사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간에 상호협력적인 자매관계를 맺어 이들 기업 간에 공동채용, 공동훈련, 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왕성하게 진행해 나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신입직원·재직자에 대한 직무교육(OJT)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으나, 일반 소양교육은 사내에서 해나가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종별 기업협의체를 활성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함.
- 초·중등교육에서부터 직업과 직무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스펙 All-In 문화의 불필요성이 조기교육을 통해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함.
- 초·중생의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 동안 직장체험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전문가의 지도하에 밀도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 직업 인식 변화를 위해 어린시기부터 진로탐색 교육 강화해 나가야 함.
  - 중소기업들도 청년들의 직무능력 함양 로드맵을 제시하여 성공한 중소기업 인재 Role-Model 창출해 가는 노력이 필요함.
- 청년문화 친화적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 제공의 질적 개선도 시급한 과제임.
- 정책의 수립 및 고용서비스 제공에 있어 청년특별위원회를 두어 청년정책 및 문화 전문가들과 지역별 미팅을 정기적으로 열어 청년문화 친화적 정책에 대한 대화채널을 열어두고 Best Practice를 확산시켜 청년고용정책

문화를 역동적으로 혁신시켜 나가야 함.

- 다양한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혹은 전문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전문적이고 가치 있는 취업서비스 그리고 역동적이고 당당한 미래상의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 전달체계 종사자들의 교육과 보상, 그리고 문화적 업그레이드가 시급함.
- 이와 더불어 학교 단위에서의 취업을 위한 마인드와 행정개혁 또한 시급함.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장기 재학생들도 정책대상으로 고려해야 하고, 취업에 별관심이 없고 낙담한 학생들을 취업시장으로 유인하여 취업 버퍼링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커리큘럼’의 도입도 필요.
- 더불어 청년들의 취업마인드를 촉진시키기 위해 학교주도의 산학협력체계가 아니라 기업주도의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학협력교수를 기업과 학교의 겸임교수 등으로 임용하고 현장실습을 통해 산학협력활동의 참여를 학점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음.





# 제1장. 청년인력 미스매치의 원인 및 관련정책 정리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과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장에서는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일자리대책 사업의 전개 방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 및 청년고용문제의 원인을 기존 연구들을 통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OECD에서는 15~24세를 청년층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남성의 병역의무기간을 고려한다면, 다른 OECD 회원국가와 비교할 때,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1~3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어렵다는 예상에 취업준비를 길게 한다든가 일자리의 안정성이 좀 더 보장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등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은 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있는 미취업 고학력자들이 있어 이들까지 고려한다면, 30대 초반까지 청년층의 정의가 확대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년층을 OECD 기준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15~29세로 정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 및 청년인력 미스매치의 원인<sup>1)</sup>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199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내 청년 노동시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다른 OECD회원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청년층의 고용률이 현저히 낮다. 둘째, 취업재수생이나 공무원시험준비 등

1) 본 절은 청년고용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정리된 내용임을 밝혀둔다.

의 이유로 유희인력이 많다. 셋째,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노동이동도 잦다. 넷째, 학교로부터 일자로의 원활한 이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고학력 인력과 하향취업에 따른 수급불일치가 존재한다. 여섯째, 최근 정규직 일자리 보다는 주로 비정규직으로의 진입률이 높아 청년층의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2010, 한국노동연구원(이승렬 외)). 기존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청년실업의 주요원인을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최근의 청년실업은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 학력과 일자리의 질과의 미스매치 그리고 노동시장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뚜렷한 이중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 1) 청년인력 공급측면의 요인들

### (1) 청년층의 고학력화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청년층의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고학력화와 함께 신규 대졸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청년실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정보공시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과 2010년 2월에 졸업한 전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수는 약 54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취업자 수는 276,003명으로 약 55%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약 27만 명의 미취업자 중에는 1년 이상 취업을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고학력화에 따른 대졸 인력의 공급과잉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혜자·김두순·이주현(2008)의 연구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청년층 취업준비생이 2008년 5월 현재 48만 4천 명에 이르러 이 수치가 “2004년 이후 4년째 ‘공식적’ 청년 실업자의 수를 넘어선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취업준비생은 어느 특정 학력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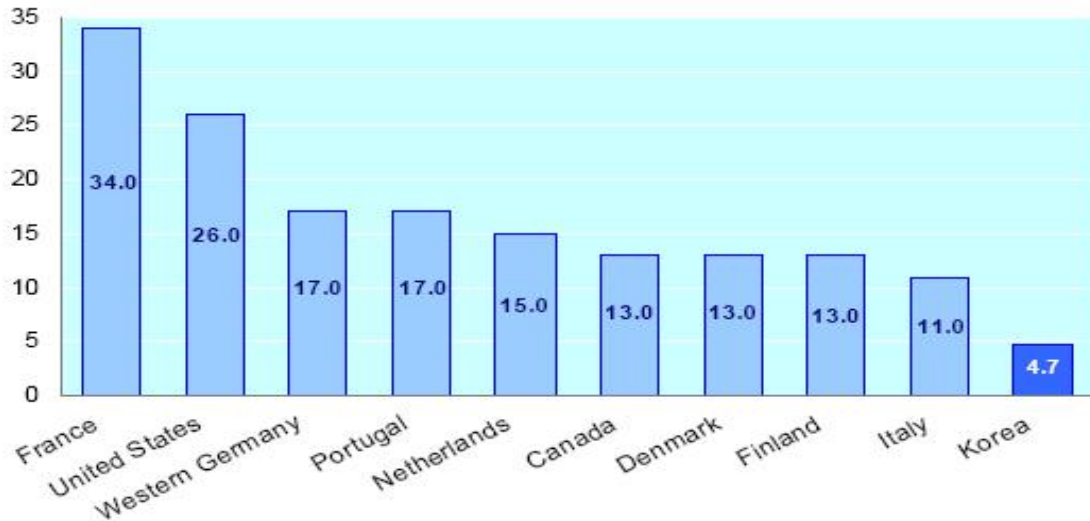
든 교육수준의 청년층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류지성 외(2009)의 연구에서도 취업준비자의 60% 정도가 대졸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고학력화가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안국(2010)은 청년 취업자 수를 분해하여 1999~2005년에는 청년인구감소가, 2006년부터는 청년경제활동참가율 감소가 청년 취업자 수를 감소시킨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최근의 청년 대졸자 고용문제는 취업준비, 유희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청년층에 대한 산업 수요의 변화는 없는 가운데 1994년부터 대졸자 노동공급이 과잉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 2009년경에는 대졸자의 10% 수준이 하향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통계분석으로부터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고학력화 추세에 맞춰 구직자가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산업구조가 노동절약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기술진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전 산업에 걸쳐 취업계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4.7명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사업장 비중이 높다. 이는 1995년 4.9명에서 오히려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사업체당 평균 근로자수가 감소한 것은 대기업에서의 노동절약적 기술도입에 의한 고용규모 축소, 서비스업 규모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청년들의 욕구와 현실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 OECD 주요국의 사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단위: 명)



자료: OECD(2008), Jobs for Youth: Korea.

## (2) 직업에 대한 가치관 변화

청년들의 고학력화 추세와 달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절대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을 보면 77.4%가 국가기관(28.6%), 공기업(17.6%), 대기업(17.1%), 전문직기업(14.1%) 등 소위 좋은 일자리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6년의 77.0%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준으로 대중소기업 및 종사상지위에 따른 격차 확대로 좋은 일자리 선호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인적특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에 비해 여성이, 연령별로는 저연령자가 그리고 대학 재학생에 비해 고교 재학생일수록 좋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D 일자리 기피로 중소기업은 상시적인 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으로 이어져 상위 직종에서는 제한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었고 하위 직종에서는 인력부족률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표 1-1>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유형

(단위: %)

|      |        | 국가<br>기관 | 공기업<br>(공사 등) | 대<br>기업 | 벤처<br>기업 | 외국계<br>기업 | 전문직<br>기업 | 중소기업<br>(벤처제외) | 해외<br>취업 | 자영업  | 기타  |
|------|--------|----------|---------------|---------|----------|-----------|-----------|----------------|----------|------|-----|
| 2006 | 계      | 33.5     | 11.0          | 17.1    | 3.3      | 3.7       | 15.4      | 2.4            | 2.8      | 9.8  | 1.1 |
|      | 남자     | 32.2     | 11.1          | 19.5    | 5.0      | 2.8       | 11.9      | 2.9            | 1.8      | 11.9 | 0.9 |
|      | 여자     | 34.7     | 10.9          | 14.8    | 1.8      | 4.5       | 18.5      | 2.0            | 3.7      | 7.9  | 1.2 |
|      | 15~18세 | 35.9     | 8.1           | 18.4    | 4.1      | 3.1       | 17.2      | 2.2            | 2.7      | 7.1  | 1.2 |
|      | 19~24세 | 31.7     | 13.2          | 16.0    | 2.7      | 4.2       | 14.0      | 2.6            | 2.8      | 11.9 | 0.9 |
|      | 고재     | 35.9     | 7.8           | 18.5    | 4.3      | 3.0       | 17.5      | 2.1            | 2.8      | 6.8  | 1.3 |
|      | 대재이상   | 34.3     | 14.4          | 15.9    | 2.3      | 5.4       | 14.7      | 1.9            | 3.8      | 6.5  | 0.9 |
| 2009 | 계      | 28.6     | 17.6          | 17.1    | 2.5      | 4.3       | 14.1      | 1.9            | 3.5      | 9.4  | 1.0 |
|      | 남자     | 26.5     | 18.7          | 19.3    | 3.6      | 3.7       | 12.0      | 2.3            | 2.7      | 10.3 | 0.8 |
|      | 여자     | 30.6     | 16.5          | 14.9    | 1.5      | 4.8       | 16.0      | 1.6            | 4.4      | 8.5  | 1.2 |
|      | 15~18세 | 29.6     | 12.5          | 20.6    | 3.1      | 4.0       | 17.4      | 1.9            | 3.2      | 6.0  | 1.7 |
|      | 19~24세 | 27.0     | 18.7          | 16.7    | 2.8      | 4.3       | 13.5      | 2.4            | 4.6      | 9.0  | 1.0 |
|      | 25~29세 | 29.2     | 20.5          | 14.8    | 1.8      | 4.4       | 12.0      | 1.6            | 2.9      | 12.3 | 0.6 |
|      | 고재     | 29.3     | 13.6          | 20.0    | 3.5      | 3.9       | 17.0      | 1.8            | 3.7      | 5.5  | 1.7 |
|      | 대재이상   | 28.5     | 18.9          | 17.3    | 2.5      | 6.0       | 14.7      | 1.5            | 4.0      | 5.8  | 0.9 |

주: 2009년은 15~29세, 2006년은 만 24세 이하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에 있어서도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창업보다는 특정 전문직 또는 대기업을 선호하며 안정된 삶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해 왔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고학력의 청년층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 고학력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은 ‘일자리가 없어서’ 보다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학력 청년층은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나, 대기업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중소·중견기업과는 보상수준에서 눈높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년실업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는 니트족/프리터족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의 개념이 정착되고, 삶의 질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안정성과 자기계발 가능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데 그 이유가 있다. 즉, 임금 수준이나 고용안정성이 높고, 복지혜택이 많은 대기업에 구직하고자 하는 경향은 강화되고 있으며, 구직자들은 대기업·공기업으로의 취업을 위해 장기간의 실업 상태를 감내 하면서 많은 구직 시간이 니트족/프리터족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청년층(20~29세)의 실업률에 비해서 고용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20대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장기간동안 교육기관에 속해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취업준비에 머무는 청년층인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은 우리나라의 경우 11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니트족의 경우, 취업 의사는 있으나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였거나, 더 나은 취업조건을 위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취업 시기를 늦추면서 구직비용이 증가하고,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더욱 취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니트족이 장년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고용구조의 악화와 사회 안정성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유길상 외, 2011).

## (2)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부조화

인력을 배출하는 학교 교육시스템과 인력의 수요처인 산업계와의 부조화도 청년실업의 구조적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산업과 기업체의 노동수요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육시스템은 시스템 자체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적절한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일찍이 최경수·박기성(1995)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인 문제로 경제성장에 걸맞게 개선되지 못한 교육제도를 꼽고 있으며, 이 때문에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안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내용과 방

법이 산업사회 및 직업세계와 유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술교육 또한 부실하여 고학력임에도 실질적인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산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손민중 외(2010)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2010년 상반기의 청년 체감실업률이 23.0%이며, 청년실업의 단기소득상실액은 4조 9,000억 원, 장기소득상실액은 23조원 수준임을 주장하며, 이와 같은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서는 첫째, 산업수요와 대학교육 간의 미스매치 현상, 둘째, 산업수요와는 무관한 고학력 추구경쟁을 들고 있다. 이 때문에 입직연령이 높아지고, 희망하는 초임금도 높아짐으로써 구직자의 눈높이가 상승하여 청년층 취업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 2) 청년인력 수요측면의 요인들

### (1)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 상실

청년인력의 수요측면의 요인들도 청년인력의 고용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 말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즉,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20% 내외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외환위기 이후 절대수가 감소해 왔던 것이다. 외환위기 전후 일자리 변화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87.4만 명, 공무원 △3.3만 명, 금융업 △9.7만 명이 감소하여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총 100.4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되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0)<sup>2)</sup>.

2) 한편, 대기업, 공무원, 금융업에서의 일자리수는 1995년 총 409.3만개 일자리에서 2006년 344.2만 명으로 15.9%가 감소하였다. 대기업일자리 2006년 191.7만개로 1995년에 비해 24%가 감소하였고, 공무원은 2000년대 들어 소폭 증가하였지만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는 현 정부 들어서는 공무원과 공사에서의 신규채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금융업 역시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소폭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좋은 일자리 수 추이

(단위: 만개)

|             | 1995    | 2000    | 2005    | 2008    | 2009    |
|-------------|---------|---------|---------|---------|---------|
| 전체 일자리      | 1,363.4 | 1,360.4 | 1,514.7 | 1,628.8 | 1,681.8 |
| 좋은 일자리      | 412.7   | 312.3   | 331.8   | 314.8   | 327.4   |
| ·300인이상 대기업 | 180.1   | 102.3   | 120.3   | 151.3   | 162.1   |
| ·공무원        | 90.5    | 87.2    | 93.1    | 96.9    | 97.1    |
| ·금융업        | 71.1    | 61.4    | 59.2    | 66.6    | 68.2    |

주: 300인 이상 대기업일자리는 금융업 일자리를 제외한 일자리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각년도

이처럼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관계 불안과 글로벌 경쟁심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이전, 글로벌 아웃소싱, 노동절약형 기술도입 등을 추진함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로 인하여 구조적인 일자리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 공기업 부분에서의 노동수요가 현격하게 줄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은 공기업 및 대기업, 전문직 중심으로 쏠리고 있는 것도 청년 일자리 문제 심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30대 대기업 및 공기업의 경력직 채용은 1997년의 41%에서 2008년에는 82%로 크게 증가한 반면, 청년인력의 좋은 일자리 선호 현상은 심화되고 있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중소기업 및 종사상지위에 따른 일자리의 질적 격차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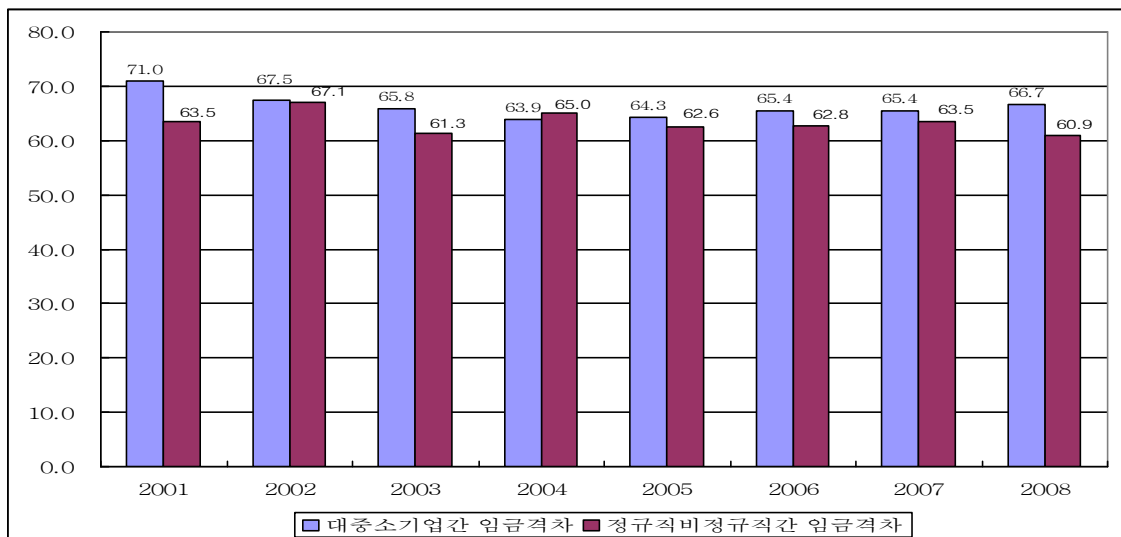
## (2)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함께 노동시장의 양극화 역시 청년층 취업난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대기업 및 공공부문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중심의 2차 노동시장 간에 고용의 질과 근로조건 등에서 격차가 심한 이중구조 문제도 청년층 실업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분절된 이중구조가 심각한 노동시장의 특성 하에서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대기업의 취업자 비중은 현저히 낮아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취업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수준이나 고용안정성 등 근로조건이 양극화됨에 따라 고학력 청년층의 대기업, 정규직에의 선호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임금비중은 2001년 70.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2005년 64.3%까지 하락하였다가 2005년부터 완화되는 추세로 2008년은 66.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2002년에는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7년(63.5%)이래 악화되어 2008년에는 60.9%에 그쳤다. 통계청의 2010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을 보면 정규직 229.4만원에 비해 비정규직은 125.8만원에 그쳐 54.8%에 불과한 수준이다(통계청, 2010. 10).

[그림 1-2] 기업규모 및 근로조건(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매월노동통계(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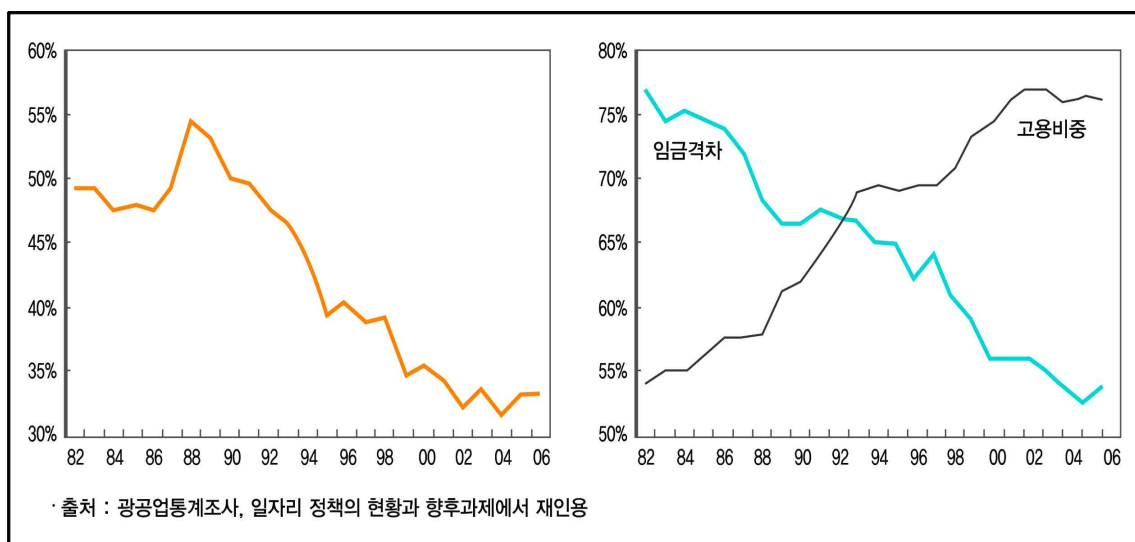
정인수·김기민(2005)의 연구에서도 청년층 실업문제의 주원인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서 중견기업 부족 및 중소기업 근로조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며,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안정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병유 외(2009)의 연구에서도 청년층 고용문제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첫째, 청년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약, 둘째, 양질의 일자리 기회의 제약과 고학력화로 인한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유희화율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안국(2010)의 연구에서는 청년 대졸자 고용문제의 구조적 요인 중 한 가지로서 대·중소기업 하도급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3)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앞 절에서 한국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대기업 및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의 고용의 질과 임금수준의 격차를 지목하였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격차를 유발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시장은 저보상·저숙련의 함정에 빠져있다. 즉,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능력개발기회의 부족 등으로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중소기업간 격차 심화는 또다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로 이어지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생산성 및 고용흡수력 저하로 미래 고용사정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판단된다(유길상 외, 201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적 생산성([그림 1-3] 참고)은 '88년 50%대에서 최근에는 30%대로 감소,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상대적 임금 수준도 대기업의 70%대에서 현재는

50%대로 하락하였다(유길상 외, 2011). 비록 중소기업의 상대적 임금은 하락하였으나, 상대적 생산성이 더욱 크게 하락하여 중소기업의 실효임금은 대기업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중소기업은 임금 압박을 상대적으로 더욱 심하게 받는 기현상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서 두드러지나 사업체의 영세화 현상은 경제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3] 중소기업의 상대적 노동생산성 및 임금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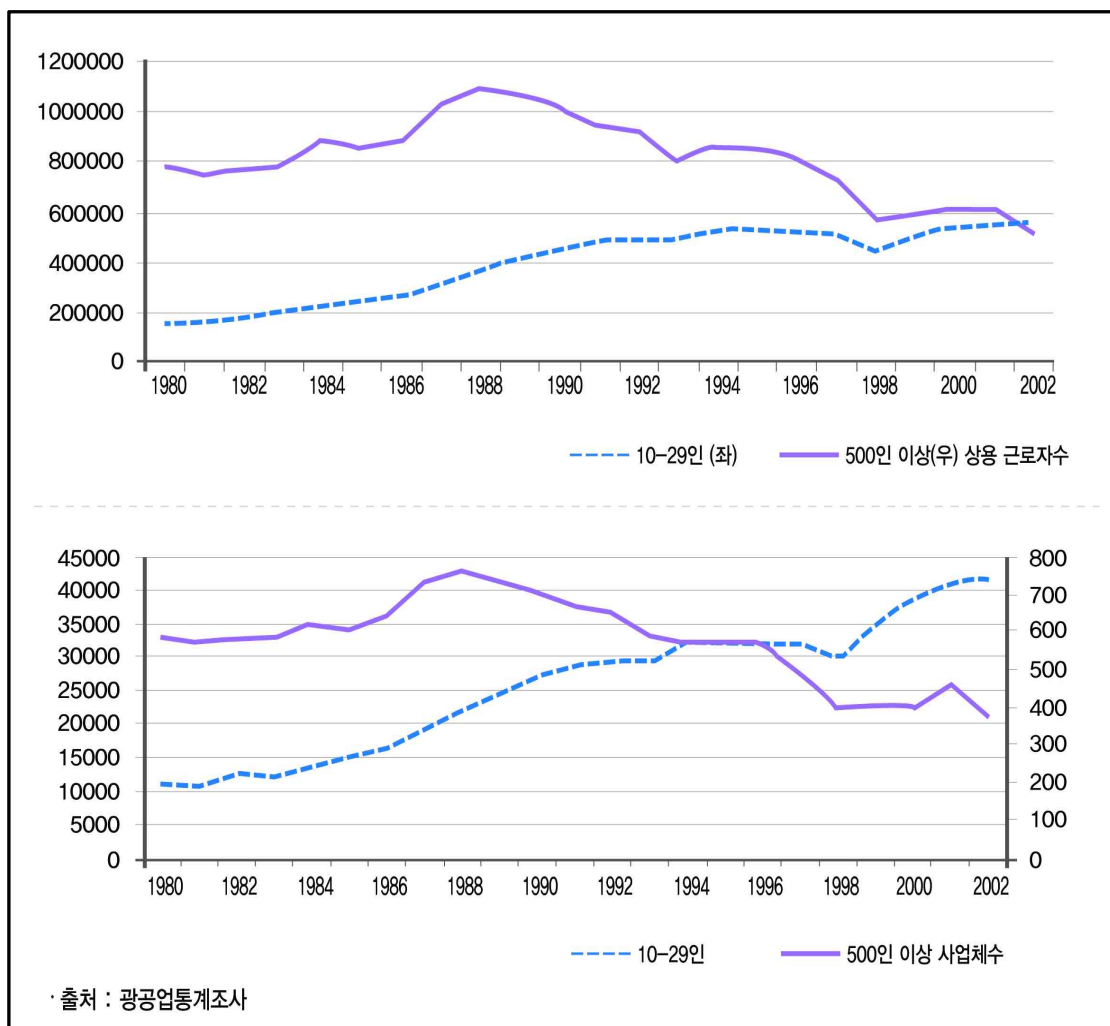


자료: 유길상 외(2011)에서 재인용

[그림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의 수와 종사자는 '88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 대신 30인 미만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취약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급속한 산업 및 기업 간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방출부문과 고용흡수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즉,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흡수할 서비스업 및 다수 중소기업, 즉, 고용 흡수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의 글로벌화와 함께 대기업의 해외생산 및 조달이 확대됨에 따라 '00년대에 들어와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기업 수와 거래액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중소기업의 비중은 2000년 66.4%에서 2007년 46.6%로 하락하였

으며, 하도급 납품액 비중도 52.8%에서 42.0%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거래 비중 하락은 판로개척 등 경영역량과 혁신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장환경이 악화됨을 시사하고,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은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 조직적으로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간 구조조정을 통하여 자원배분이 개선하며,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혁신활동을 신속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유길상 외, 2011).

[그림 1-4] 제조업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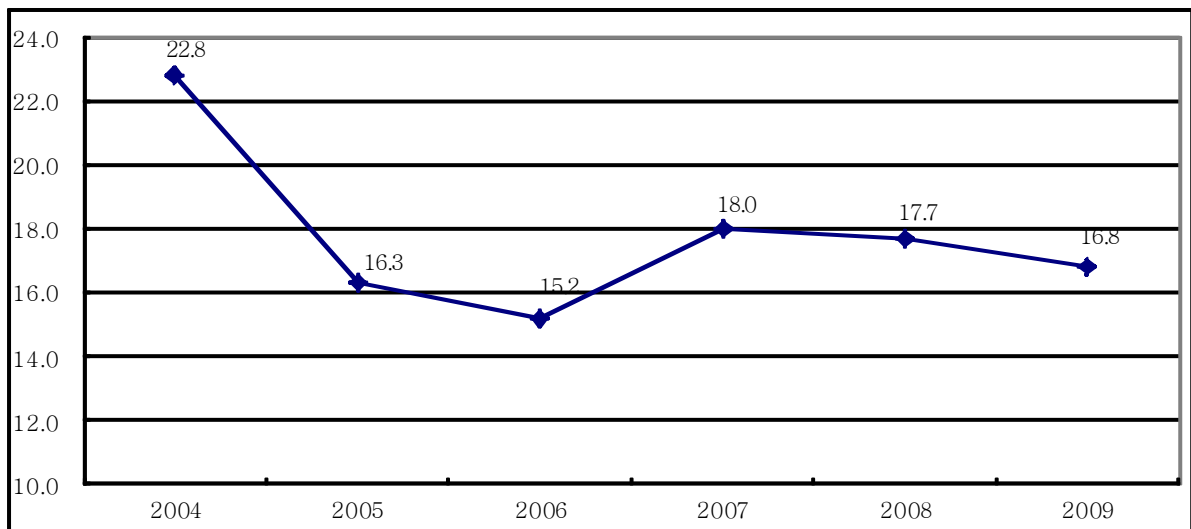
자료: 유길상 외(2011)에서 재인용

#### (4) 기업의 인력채용 패턴 변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인력채용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제시되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인력을 적게 쓰는 고부가가치사업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하여왔고 자동화와 아웃소싱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기업의 인력채용 방식도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수시모집 증가, 비정규직 및 경력직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채용 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청년고용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내 30대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 비중이 1997년 39.3%에서 2002년에는 82%로 급증하였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으로 인해 대기업의 일자기가 32만 6천 개로 줄어드는 등 기업의 고용여력이 감소하였다(김기승, 2005).

[그림 1-5] 대졸 신규 취업자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주: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생 모두 포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DB.

2000년대 들어 한국경제의 저성장기조로 인해 대기업 등 소위 좋은 일자리

의 증가 추세는 정체되어 2000년대 중반 이후 신규 대졸자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 중반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은 대졸 신규 취업자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 추이가 2004년 22.8%에서 2009년 16.8%로 5년 만에 6%p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보험DB를 분석한 이병희(2003)의 연구에도 청년층 고용문제의 원인을 대규모 사업체에서 노동력의 중·장년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 경력 중시형 채용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변화하면서 중·장년층의 청년층 고용대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1997년 청년 채용자 가운데 신규채용이 63.1%, 경력직 채용이 29.2%를 차지하였으나 2001년에는 각각 22.1%, 62.3%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고용정보원(2004)의 자료에서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력직 채용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6년에는 전체 채용인원 중 경력직은 35%에 불과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 비중이 역전되어 2002년에는 82%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주요기업의 신규 및 경력직 채용추이

(단위: %)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신규직채용 | 65.2 | 60.7 | 45.3 | 27.1 | 21.7 | 21.3 | 18.2 |
| 경력직채용 | 34.8 | 39.3 | 54.7 | 72.9 | 78.3 | 78.7 | 81.8 |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한국의 고용구조, 2004.

이러한 경력직 선호 현상은 세계화에 따른 기업경쟁 격화로 일정기간 교육 투자를 해야 업무성과가 나오는 신입사원보다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사원이 기업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숙련기간 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고, 신입직원보다 조직문화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채용 및 훈련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때문

에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향후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데에는 국내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경제단체는 종종 현재 청년층 취업난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기업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채용하고 싶어도 적격자가 없음을 지적해 왔다. 채창균 외(2006)의 연구에서는 2005년 신입사원 채용 경험이 있는 532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졸 신규 채용인력의 능력이 기업요구에 부응하는 정도를 체크한 결과 만족도가 30%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열별로 구분해보면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다소 못 미치는 수준(56.3%), 크게 못 미치는 수준(20.0%)로 나타나 76.3%가 대졸 신규채용인력의 능력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10%p 가량 낮았지만, 못 미치는 수준 53.3%, 크게 못 미치는 수준 9.9%로 나타나는 등 역시 부정적 응답이 예상 보다 높았다.

<표 1-4> 대졸 신규 채용인력의 능력수준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        | 매우 유사한 수준 | 다소 유사한 수준  | 다소 못 미치는 수준 |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합계          |
|--------|-----------|------------|-------------|-------------|-------------|
| 인문사회계열 | 9(1.8%)   | 110(22.0%) | 282(56.3%)  | 100(20.0%)  | 501(100.0%) |
| 이공계열   | 16(3.3%)  | 169(34.5%) | 261(53.3%)  | 44( 9.0%)   | 490(100.0%) |

자료: 채창균 외(2006).

2006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대학교육과정이 이론위주로 이뤄져 기업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과 기업 간 연계도 부족하며 대학교육에 대한 성과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대한상의, 2006. 6. 7). 이후의 조사에서도 대학교육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았다. 인크루트가 2009년 국내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5.6점에 불과하였는데, 이처럼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획일적 인재양산, 전문성 부족, 인성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대졸 신입사원에게 가장 부족한 점으로 ‘실무능력’(43.6%)을 꼽았으며 이어서 ‘인성 및 태도’(39.8%), ‘전공지식’(12.5%), ‘외국어능력’(2.1%)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담당자들이 대학 교육에 가장 바라는 점으로는 ‘실습 및 현장 학습 위주의 교육’(43.6%)이라고 응답해 대학 교육과 실제 직무 현장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재경일보, 2009. 4. 27).

## 2. 청년층 대상 일자리 정책 정리<sup>3)</sup>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실업률이 1998년 12.2%까지 치솟으면서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종합실업대책 수립 이외에 별도의 ‘청년고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서 발표, 추진 중에 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주로 인턴제 또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의 실업대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래로 청년실업률이 6~7% 수준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2003년 9월 장단기 청년실업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2005, 2007, 2009년까지 ‘청년고용촉진대책’, 2010년에는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제1호 안건으로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지속적인 청년층 대상 실업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3) 본 절의 내용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국회예산정책처, 2010)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심층연구(이승렬 외, 2010)를 바탕으로 재정리된 것임을 밝혀둔다.



## 1) 2010년 이전의 청년 일자리 정책

국민의 정부 때 추진된 주된 청년층 일자리지원사업(실업대책)은 2000년에 ‘2000년 종합실업대책’의 청소년 대책, ‘청소년 인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 ‘청소년 실업대책’과 2001년 12월의 ‘청소년 실업 종합대책’ 등이 있다. 이 시기에 정부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인턴제와 초·중등 전산보조원 등과 같은 단기일 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경기회복과 단기일자리 제공에 힘입어 청년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다.

<표 1-5> 2003년 이후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현황

(단위: 억원, 명, 개)

| 대책명       | 일자     | 예산     | 지원인원    | 사업수 | 부처수 |
|-----------|--------|--------|---------|-----|-----|
| 청년실업 종합대책 | 2003.9 | 5,390  | 126,453 | 31  | 11  |
| 청년고용 촉진대책 | 2005.1 | 7,885  | 252,716 | 53  | 13  |
| 청년고용 촉진대책 | 2008.8 | -      | -       | -   | -   |
| 청년고용 추가대책 | 2009.3 | 13,240 | 397,198 | 38  | 13  |

주: 청년고용 추가대책(2009.3)의 사업 수(38개)는 미래산업 청년리더육성 프로젝트(9개 부처, 44개 세부 사업)를 1개의 사업으로 처리한 수치임.

자료: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국회예산정책처, 2010).

청년실업이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일자리 공급감소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그리고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2003년 9월 장단기 청년실업대책을 발표하였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육성·공급하며 셋째, 노동시장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학교로 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다만 중장기대책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 대책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력직채용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해 취업 시 마찰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3년 9월 청년실업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가 오히려 심화되고, 기업의 고용흡수력 저하로 향후에도 청년실업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기존 실업대책에 대한 점검·평가와 새로운 정책방안을 발굴하여 정부는 2005년 1월 새로운 청년실업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2003년 청년실업종합대책이 학력 계층별 실업자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정책이었으나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고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부 사업별로 평가해보면 단기일자리제공 사업은 비교적 효과가 낮았으나 직업훈련이나 직장체험프로그램 및 해외취업지원사업은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정부는 청년실업의 일시적 해결이 아닌 학교-노동시장 이행원활화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청년층 고용을 지속적으로 촉진·안정화시키기 위한 청년고용대책을 수립하였다. 2005년 청년실업대책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일자리창출, 직업지도·직업교육강화,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및 취업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대책에 주안점을 두었고, 청년취업애로 층의 감소와 11개월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소요기간 단축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2008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년실업대책으로서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계획이 발표되고 2008년 8월 29일에 새로운 청년고용촉진대책이 확정·발표되었다. 2008년 대책은 청년고용률(2004년 45.1%-2007년 42.6%)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청년실업자·취업준비자 등 취업애로층이 1백만명을 상회하여 체

감실업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취업애로계층에 특화된 정책을 집중·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학교교육 개혁, 경제·산업구조 선진화를 통해 청년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청년친화적 일자리지원(청년창업지원 및 사업적 기업가육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턴채용기회 확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및 우량기업 육성), 직업체험 확대(단기복무장병 취업캠프)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한국형 마이스터 고교·기술계학원 육성, 미래산업 청년리더양성, 산업단위 훈련-고용 원스톱 지원, 대학취업률 공표 확대),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취업청년 취업촉진, 직업·취업 등 고용정보 제공강화)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공급차원에서는 대학 간 통폐합, 대학유사·중복학과 통합 등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수요차원에서는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송·통신·문화·관광 등 분야별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인프라차원에서는 정부시행사업의 대폭적 민간위탁, 유료직업소개사업 가격규제 완화 등 민간고용서비스시장 적극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해당 대책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청년실업해소특별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명칭 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경기가 빠르게 냉각되면서, 정부는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청년층 고용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2009년 3월 범정부적인 청년고용 추가대책을 발표하였다. 2009년 추가대책은 2008년에 수립된 글로벌청년리더 양성계획(2008. 4) 및 청년고용 촉진대책(2008. 8)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추경예산에 3,592억 원을 반영하여 16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추가대책의 주요내용은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취약청년 취업지원사업(취업장려금제도 신규도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확대), 교육훈련(stay-in-school 프로그램 신규도입, 직장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창업지원, 청년인턴(중소기업인턴 및 공공기관인턴) 확대, 단기일자리제공(학교 내 학습보조인력, 대학 내 조교채용지원, 공공DB구축 등)사업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 2) 2010년 이후의 청년 일자리 정책

정부의 2010년도 청년고용대책에 사업 내역은 다음의 <표 1-6>에 나타나 있다. 청년고용대책은 크게 청년인턴지원, 교육훈련,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단기 일자리, 취약(고졸이하) 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산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청년고용대책을 포함한 일자리대책 전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던 2009년에 비해 2010년도 청년고용대책은 예산 및 지원인원 규모가 모두 감소하였다(예산은 3,833억원, 지원인원은 13만 5,461명 감소). 특히, 단기일자리제공 및 청년인턴지원 부분의 예산이 2009년에 비하여 2010년에 2,720억원이 감소하여 다른 부문에 비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2010년의 청년고용대책 관련 사업에는 2009년의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관광분야 청년인턴제’, ‘고용서비스 인턴제’, ‘권역별 직업능력 중심대학 운영’ 등 6개 사업이 새롭게 추가되고, 사회서비스 벤처창업 지원이 제외되었으며, ‘학습보조교사’, ‘미취업 대졸자 학교 내 채용지원’ 사업이 단기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인턴지원’으로 변경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한편 청년 일자리대책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청년인턴제의 경우 크게 정부의 행정인턴, 공공기관인턴, 중소기업인턴, 해외인턴 등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의 유형에 따라 채용목표와 달성률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행정인턴의 경우, 2009년 기준 달성률이 각각 88%, 101%인데 비해 중소기업인턴은 4.4%, 해외인턴은 5.7% 등으로 사업군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턴 채용목표 약 5만 3천명 중 실적 달성률도 26.8%에 그치고 있다(방하남 외, 2011).

<표 1-6> 2010년도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관련사업 현황

(단위: 억원, 명)

| 구분                | 사업명               | 2010년 계획 |         | 부처명   |
|-------------------|-------------------|----------|---------|-------|
|                   |                   | 예산       | 인원      |       |
| 청년<br>인턴<br>지원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 2,070    | 30,000  | 고용노동부 |
|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제      | 152      | 4,000   | 행안부   |
|                   | 자치단체 청년인턴제        | 178      | 9,360   | 행안부   |
|                   | 공공기관 인턴제          | -        | 8,000   | 기재부   |
|                   | 고용서비스 인턴제         | 120      | 1,200   | 고용노동부 |
|                   | 정부 출연기관 인턴제       | 141      | 742     | 교과부   |
|                   | 학습보조 인턴교사인턴제      | 819      | 7,000   | 교과부   |
|                   | 농산업 인턴제           | 12       | 303     | 농림부   |
|                   | 관광분야 청년 인턴제       | 22       | 350     | 문광부   |
|                   | 미취업 대졸생 학교 내 채용지원 | 79       | 1,500   | 교과부   |
|                   | 소 계               | 3,953    | 62,455  |       |
| 교육<br>훈련          | 권역별 직업능력 중심대학 운영  | 165      | 30,000  | 고용노동부 |
|                   | 기술·기능인력 양성        | 381      | 18,694  | 고용노동부 |
|                   | 우선선정직종훈련          | 619      | 7,400   | 고용노동부 |
|                   |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 337      | 17,251  | 고용노동부 |
|                   | 전직실업자훈련           | 807      | 45,664  | 고용노동부 |
|                   | 미래산업 청년리더 양성      | 963      | 12,091  | 기재부   |
|                   | 중소기업 인력채용 패키지사업   | 52       | 3,000   | 중기청   |
|                   |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95       | 2,200   | 중기청   |
|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 154      | 3,500   | 교과부   |
|                   |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 151      | 15,000  | 고용노동부 |
|                   | 소 계               | 3,724    | 154,800 |       |
| 글로벌<br>청년리더<br>양성 | 해외취업              | 274      | 4,500   | 고용노동부 |
|                   | 해외인턴              | 172      | 2,590   | 지경부 등 |
|                   | 자원봉사              | 764      | 3,830   | 외교부   |
|                   | 소 계               | 1,210    | 10,920  |       |
| 단기<br>일자리<br>제공   | 전파자원총조사           | 42       | 99      | 방통위   |
|                   | 공공DB구축            | 404      | 4,160   | 행안부   |
|                   | 소 계               | 446      | 4,259   |       |
| 취약청년<br>일자리<br>지원 |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 91       | 11,000  | 고용노동부 |
|                   |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315      | 13,503  | 고용노동부 |
|                   | 취업장려수당            | 18       | 4,800   | 고용노동부 |
|                   | 소 계               | 424      | 29,303  |       |
|                   |                   | 9,397    | 261,737 |       |

주: 미래산업 청년리더육성 프로젝트는 9개 부처, 44개 세부사업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프로젝트는 9개 부처의 17개 세부사업을 하나로 묶은 것임.

자료: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국회예산정책처, 2010).

### 3. 소결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들을 바탕으로 청년실업의 주요원인을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최근의 청년실업은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 학력과 일자리의 질과의 미스매치 그리고 노동시장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뚜렷한 이중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년층의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고학력화와 함께 신규 대졸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청년실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고학력화 추세에 맞춰 구직자가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산업구조가 노동절약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기술진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전산업에 걸쳐 취업계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청년들의 고학력화 추세와 달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절대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D 일자리 기피로 중소기업은 상시적인 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으로 이어져 상위 직종에서는 제한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었고 하위 직종에서는 인력부족률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에 있어서도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창업보다는 특정 전문직 또는 대기업을 선호하며 안정된 삶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해 왔다. 특히, 고학력 청년층은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나, 대기업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중소·중견기업과는 보상 수준에서 눈높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청년층의 직업에 대한 근본적 의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변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청년들은 졸업초기에는 연봉, 기업브랜드 등이 직업 선택시 최우선 변수이나 직장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근무환경(근무시간, 시설), 직장-주거지역 일치여부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에도 원인이 있으나, 열악한 근무환경, 직업-주거환경의 불일치 등도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있어 단순한 인력양성 및 매칭 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또한, 교통비 상승과 출퇴근 어려움 때문에 직업 선택시 직장-주거일치형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재를 교육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수용하는 취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단위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유길상 외, 2011).

청년인력의 수요측면의 요인들도 청년인력의 고용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0년 말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즉,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20% 내외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외환위기 이후 절대수가 감소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로 인하여 구조적인 일자리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함께 노동시장의 양극화 역시 청년층 취업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기업 및 공공부문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중심의 2차 노동시장 간에 고용의 질과 근로조건 등에서 격차가 심한 이중구조 문제도 청년층 실업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즉,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능력개발기회의 부족 등으로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중소기업간 격차 심화는 또다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인력채용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제시되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인력을 적게 쓰는 고부가가치사업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하여왔고 자동화와 아웃소싱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기업의 인력채용 방식도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수시모집 증가, 비정규직 및 경력직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채용 추이를 살펴보

면 대기업의 청년고용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자 정부는 종합실업대책 수립 이외에 별도의 ‘청년고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서 발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대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청년층 대상 정부사업에 대체로 부정적이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기존의 청년고용 사업들은 각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유사·중복 사업들이 많고, 정책의 대상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이 낮으며, 추진체계의 분권화와 전달체계 간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규용 외, 2011). 즉, 정부의 청년 일자리대책 사업들 중 다수는 서로 중복이 되며 유사한 사업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정되는데 서로 지원 조건이나 운영방식이 달라 어떤 사업들의 경우 책정된 지원액이나 지원 숫자가 과다하고, 어떤 사업들은 지원액이나 지원 숫자가 너무 과소하여 현장의 수요와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공급이 서로 맞지 않는 비효율성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회예산처, 2010).

청년 일자리대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인턴제에 대한 평가(2010년 고용보험 사업평가)를 살펴보면 사업참여자의 정규직화, 직무능력 향상, 만족도 제고효과 및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정규직 채용과정의 일환으로 인턴을 채용함으로써 자사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인턴의 직무능력 향상에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인턴십이 견실하게 운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러한 청년인턴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제도의 지속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인턴십이 중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자들의 기업 내 직장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방하남 외, 2011). 또한 인턴십이 기존의 채용보조금과 차별화를 가지고 청년층 고용대책으로서 정부지원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이를 통한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고용대책 평가(2010)을 통해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사업의 취업성과를 분석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년고용대책의 성과가 높은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고용인센티브 사업이나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보다는 직업훈련이나 공공고용서비스 등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년고용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 간 유기적 연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평가체계 기능의 통합도 필요하며, 유사·중복 사업의 검토를 통한 재조정 및 사업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 제2장. 해외 주요 국가의 청년인력 활용방안

본 장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청년층 인력 수급현황과 각 나라별 청년인력 정책을 살펴본다. 각 나라별 청년층의 고용과 그 수준은 성인고용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청년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한국과 실정이 비슷한 나라 혹은 청년층의 고용이 원활이 되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을 참고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 주요국가의 청년인력 수급현황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에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40.5%, 청년실업률은 8.1%에 달했으나, 이후 전반적인 경제 회복세에 따라 청년고용지표 역시 개선되고 있다. 구조적 하락세를 보이던 청년고용률의 경우 2010년 이후 반등하였으며, 특히 주 취업 연령층인 25~29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역시 2009년 이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우수한 실적이라 할 수 있다.

<표 2-1> 청년실업률, 청년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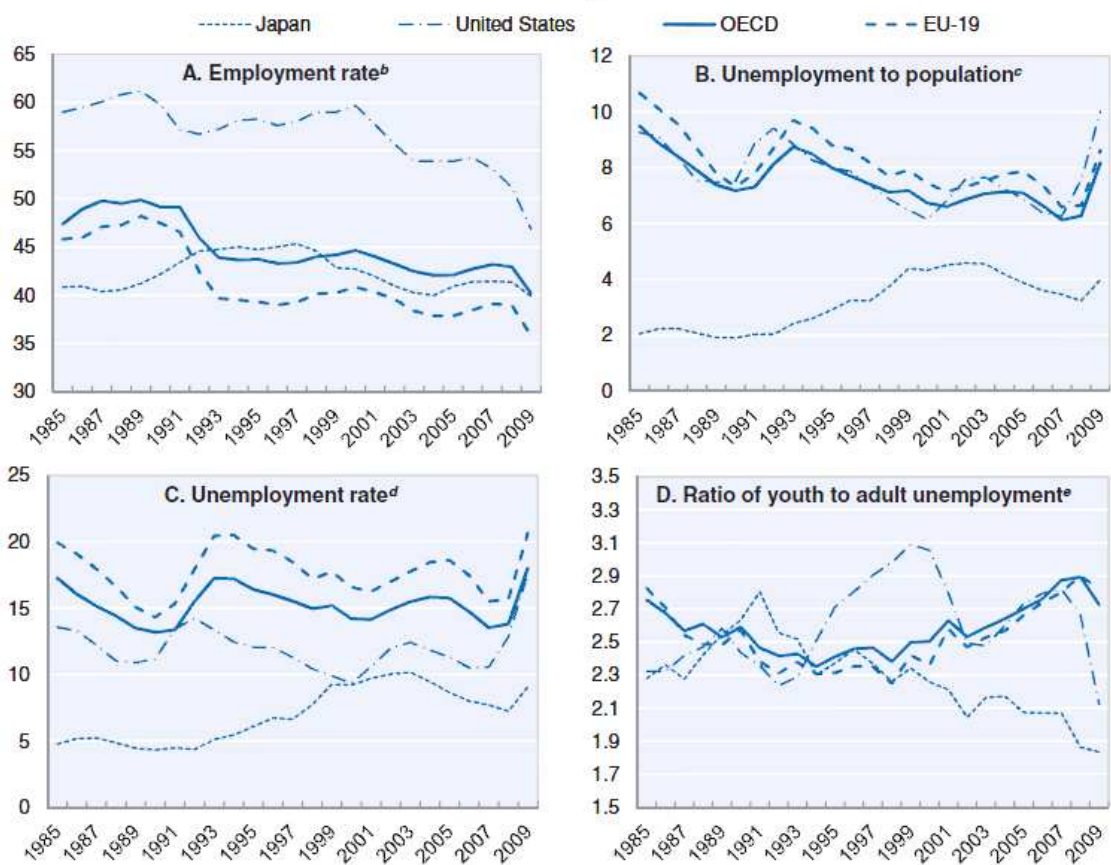
(단위: %)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1년<br>6월 | 2012년<br>6월 |
|-----|-------|-------|-------|-------|-------------|-------------|
| 실업률 | 7.2   | 8.1   | 8.0   | 7.6   | 7.6         | 7.7         |
| 고용률 | 41.6  | 40.5  | 40.3  | 40.5  | 40.6        | 40.7        |

하지만 위에 나타난 지표만으로 판단하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청년층에서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혹은 진입하더라도 그 기간

이 길어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아래는 일본, 미국, EU 그리고 OECD국가의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살펴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되는 200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과 인구대비 실업률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여 그 문제점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주요국들의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 198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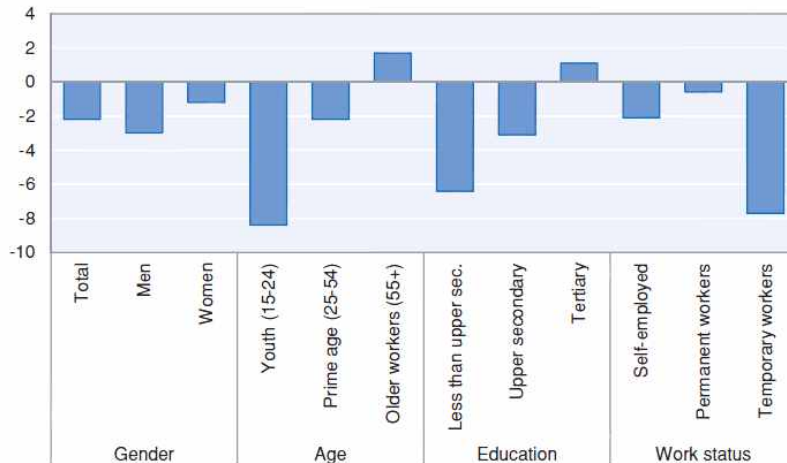


source: OECD(2010)

그리고 그림 [II-2]는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동안 OECD국가의 고용의 변화를 연령별, 교육수준별,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본 것인데, 15-24세의 연령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률의 감소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시직에 종사하는 그룹일수록 타 집단에 비해 고용률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경제위기가 기간 인적특성에 따른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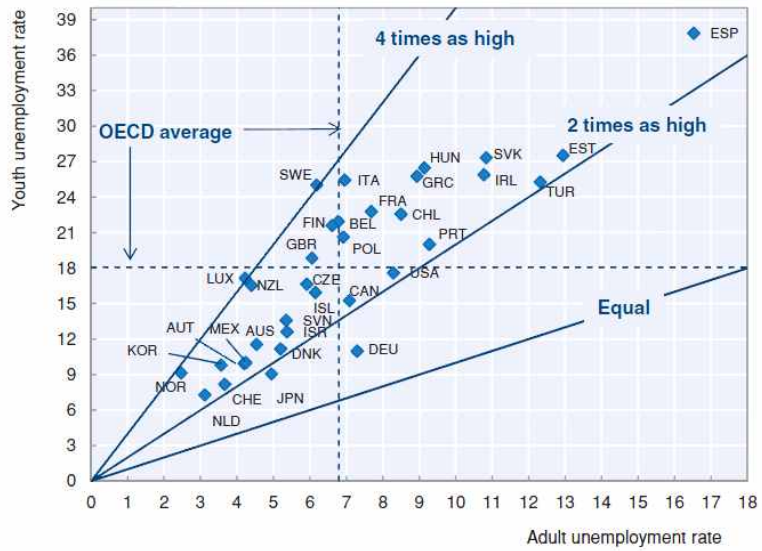
source: OECD(2010)

다음은 OECD국가들의 청년층 대비 성인층 실업률을 국가간 비교한 그림이다. 청년실업률은 평균 약 18%이고 이중 청년실업수준이 가장 심각한 국가는 경기가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실업률에 대한 위험도를 살펴보면 OECD국가 평균 중장년층의 실업률은 약 7%정도이고 청년층의 실업률은 약 18%로 약 2.7배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률 수준으로만 볼 경우 가장 심각한 나라는 스페인으로 약 38% 수준을 보이고 있고, 독일의 경우 청년실업률과 성인층 실업률의 비율이 1.5배에 불과해 상대 비율은 가장 낮은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성인대비 청년실업률이 약 3배로 우려되는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고학력화 경향으로 인하여 이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 이탈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림 II-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근로인구 중 청년층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여 2025년 추정결과 그 비중이 성인층에 비해 15%도 안되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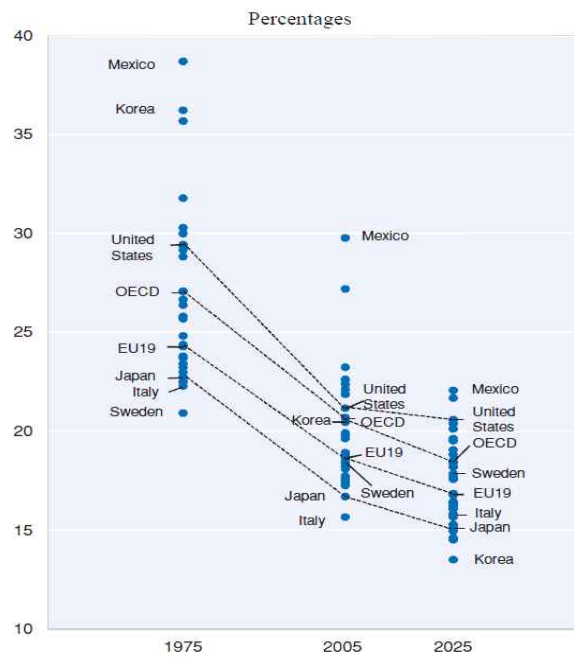
고 있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3] OECD국가별 청년 및 성인 실업률 비교



a) All countries above the “Equal” line have a higher youth unemployment rate than that of adults.  
 Source: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그림 2-4] 근로인구 중 청년층의 비중 추정(1975-2025)



source: OECD(2010)

## 2. 해외 주요 국가의 청년층 고용정책

청년층의 노동시장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부로 그 대상이 청년층이고 교육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에 관련한 이슈들이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정책들과 그 정책에 관련한 연구들과 각 나라별 청년 고용정책을 살펴본다.

### 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1) 고용 보조금 정책

1990년대 스웨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시되어 ‘적극적 노동시장의 실험장’으로 불려진다. 이때 시행된 정책들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2000년대 들면서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 먼저, Carling & Richardson(2003)의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실업기간의 단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일자리 보조금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스웨덴의 많은 실업대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직업훈련(AMU), 직접일자리, 작업장 실습(API), 직장체험프로그램(ALU), 훈련생대체 프로그램, 일자리 보조금 등이 그것이다. 연구에서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보조금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남발이 오히려 비효율성을 가져왔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러 OECD 국가들의 보조금 정책의 비교를 통해서 주장되는 의견으로는 청년층과 같이 취업취약계층에 현장 경험과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다는 점은 임금보조 정책은 유용하다고 보고 있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세계은행의 보고서(Betchermant et al., 2007)에서도 임금보조 정책은 청년취약계층의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보인바 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동안 청년층의 일자리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잘 축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책이나 그러

하듯 임금보조 정책이 청년층 취업문제의 긍정적인 효과만 주는 것은 아니다. 임금보조금 정책은 사중손실의 문제가 항상 우려가 되며 대상범위를 넓힐수록 사중손실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사중손실을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Van derLinden(1995)에서는 벨기에 프로그램(Voordeelbanenplan)의 사중손실을 53%로 예측 하였다. 프랑스의 CIE 프로그램을 분석한 Belleville(2001)에서는 앞의 연구보다는 조금 낮은 19~39%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역시 사중손실이 발생함을 보였다. 하지만 그 사중손실의 이유로 정책 대상을 너무 좁힐 경우도 이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나타나 고용주가 회피할 수도 있으니 정책설계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 (2) 훈련 정책

훈련정책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많은 연구들을 살펴볼 때 효과측정에 있어서 matching 방법을 통해 훈련대상을 적절히 통제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여전이 관측치의 이질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이 실업혜택 연장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꾸준히 제기되어오면서 스웨덴의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는 2004년 GDP 대비 0.32%에서 2008년 0.07%로 대폭 감소했다. 노르웨이의 훈련 프로그램을 연구한 Hardoy(2005)에서도 비판적 결과가 나오는데 1990년대 노르웨이의 훈련프로그램이 청년층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ichadson & van den Berg(2006)에서는 생존분석을 통해서 스웨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료 직후에는 실업탈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몇 주 후에는 그 효과가 사라지며 프로그램에 보낸 시간을 고려하면 실업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훈련 정책과 보조금 일자리의 연구들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2-2> 훈련정책과 보조금일자리의 비교평가

| 국가  | 연구자                   | 비교대상정책   | 분석방법   | 결과   |
|-----|-----------------------|--|--|--|
| 프랑스 | Broday et. al. 2000   | 민간부문<br>보조금일자리+on-the-job<br>training (CPWL) vs.<br>공공부문일자리창출(TUC)                                     | propensity score<br>matching                                   | 민간부문<br>보조금일자리가<br>청년고용에 더 효과적   |
| 스웨덴 | Forslund & Skans 2006 | 훈련정책과 작업장<br>practice program(Youth<br>Practice) 비교  | matching   | practice program<br>효과가 더 좋음   |
| 스웨덴 | Larsson 2003          | 훈련정책과 보조금에<br>의한 practice 정책(Youth<br>Practice) 비교   | matching   | 둘 다 효과 거의<br>없지만, 훈련보다는<br>보조금일자리가 나음  |
| 독일  | Huber et al 2009      | ① short training<br>(구직교육포함), ②<br>further training(훈련), ③<br>public employment<br>progr.(1-Euro jobs) | regression<br>adjusted caliper<br>propensity score<br>matching | 공공부문<br>임시일자리인 1-Euro<br>job은 효과 없음.<br>short training은 효과<br>있음. Further<br>training은 다른<br>연령층에는 효과<br>없으나 청년층에는<br>효과 있음. |

### (3)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영국의 NDYP 프로그램은 Gateway 단계가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고 할 수 있다. Blundell et al(2004), Di Giorgi(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의 고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Centeno et al(2009)는 포르투갈의 청년구직 프로그램(Inserjovem)  
의 효과분석을 통해서 실업급여 상태의 청년이 청년구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업기간의 단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NDYP  
프로그램과의 다른 결과를 비교하면서 포르투갈의 청년구직 프로그램이 구직  
프로그램 자체에만 비중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고 구직 프로그램이 단독으로



작동될 때보다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결되어 패키지로 제공될때 청년고용의 성과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노르웨이의 연구(Rønsen & Skarðhamar, 2009)에서는 사회부조수급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한 정책변화를 이용하여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전체적인 고용에 대한 영향은 증가하였으나 청년층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고용서비스와 관련한 실험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실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청년층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된 결과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실업보험 수혜자의 고용서비스 효과를 서베이한 Meyer(1995)에 따르면 구직서비스는 약 2.5~5% 정도 구직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tz(1998)는 고용지원서비스가 임금보조금, 훈련과 함께 작용할 때 고용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지적하였다.

#### (4) 직접 일자리 프로그램

스웨덴의 Sianesi(2008)의 연구에서 보면 1990년대 스웨덴의 6가지 주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에서 직접일자리사업(relief work)은 중장기적으로 취업확률에서 가장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Dorsett(2004)는 영국의 NDYP 프로그램의 네 가지 옵션인 보조금 일자리, 교육 및 훈련, 직장경험을 얻기 위한 무급일자리, 환경일자리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공공일자리 성격이 강한 환경일자리 옵션 선택의 경우 실업탈출에서 가장 낮은 효과를 나타냈다. 프랑스의 경우 Bonnal et al(1994)에 TUC<sup>4)</sup>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였는데 취업확률 상승의 효과가 있다고 연구한 그 결과를 Brodaty et al(2000)가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매칭기법을 이용하여 다시 조사한 결과 TUC 프로그램의 효과는 0이거나 음(-)으로 나타났다.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주장하듯이 직접 일자리 사업은 취업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

4) 이 프로그램은 취업취약 청년층에 3~12개월 정도 비영리단체에서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다.

## 2) 각 나라별 청년층 고용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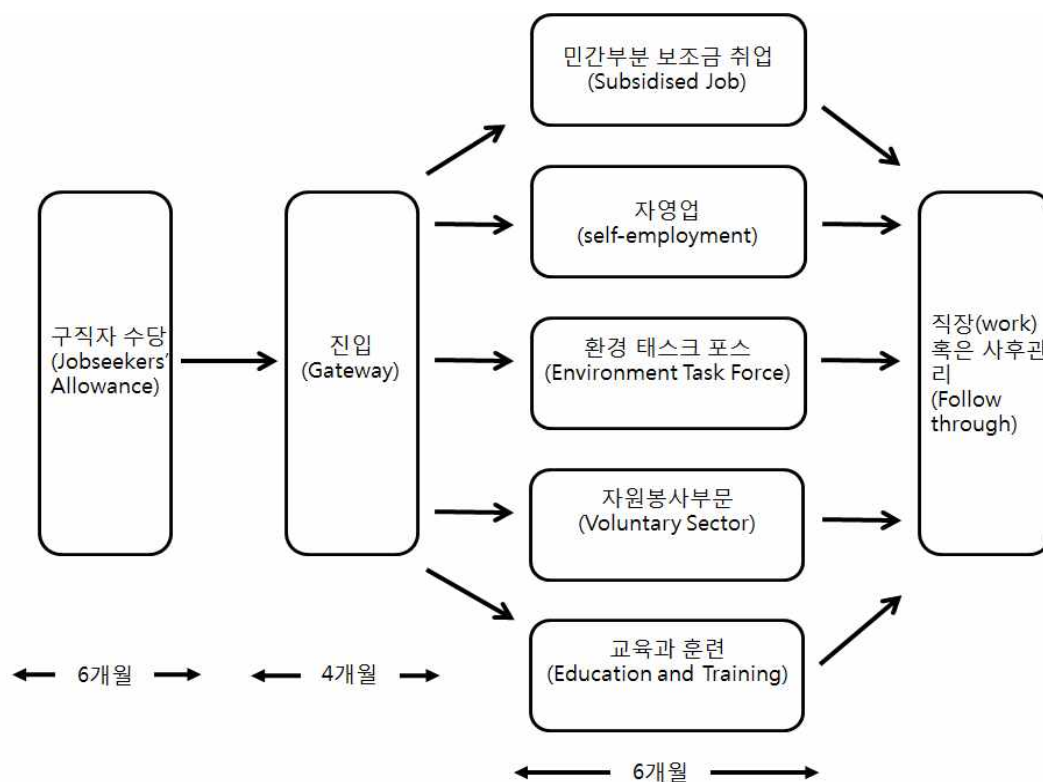
### (1) 영국

영국의 청년실업문제의 시작은 경제성장률이 정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앞 절에서 살펴본 집단별 고용률의 변화에서도 나타났듯이 경기가 나빠지거나 경제위기 닥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청년계층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1973년의 석유위기 이후 1970년대를 통하여 청년실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직업 훈련을 통하여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청소년고용기회사업(Youth Opportunities Programme : YOP)'이 긴급대책으로 도입되었다. 대처정권 초기인 1980년대 초기도 실업자가 급증하고 특히 청소년 실업률이 급증함에 따라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보수당 정부는 새로운 청소년 훈련제도(Youth Training Scheme : YTS) 및 청소년 훈련(Youth Training :YT)을 도입하였다. 대처를 포함한 보수당 정권 시절에는 이러한 청년실업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기에도 청년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았다. 블레어 노동당 정권에서는 청년실업대책을 국가적 중요정책으로 파악하여 청년실업을 낮추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소위 뉴딜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청년 신고용협정이 1998년부터 25세 미만의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신노동당을 대표하는 정책인 신고용협정은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청년 신고용협정5)은 25세 미만의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으로, 1998년 1월에 12개 지역에서 시범 도입된 후 3개월의 시험기간을 거쳐 같은 해 4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협정의 대상은 구직자급여(이전의 실업급여를 개조한 것)를 6개월 이상 받고 있는 18~24세의 청소년 실업자이다. 대상자에게는 안내장을 보내며 직업안정소가 창구가 된다. 모든 대상자는 프로그램 참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참가를 거부하는 경우 및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구직자수당의 수급자격을 잃게 된다. 프로그램의 제1단계는 게이트웨이(Gateway)로 불린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실직하고 있는 18~24세의 실업자

는 게이트웨이 단계로 넘어가며, 이 단계에서 직업안정소의 개별 상담원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계획을 작성하고 카운슬링 및 기초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최장 4개월간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그림 2-5] 신고용협정 구조



자료: 정인수 외(2006)에서 재구성

이 기간 동안 구직자수당은 계속해서 받게 된다. 일단 게이트웨이 단계에서 취직이 되더라도 13주간 이내에 다시 실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NDYP에 참가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1997년 이후 청년, 장기실업자 수가 75%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뉴딜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비결로는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청년, 장기실업자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취직활동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직자수당의 지급과 직업훈

련을 세트로 하여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면 구직자수당을 정지, 감액한 것이다. 이는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한 ‘제3의 길’의 접근방법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민간부문에 위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제 직업훈련을 함으로써 기업이나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능을 얻어 취직으로 직결되기 쉬워지는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보조금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대로 계속 고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민간 기업에서의 취업 프로그램을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반년간의 보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그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청년실업자를 위한 뉴딜에서는 61%, 장기실업자를 위한 뉴딜에서는 67%에 이르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약 6할이 그대로 계속 고용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 할 것이다. 개인 어드바이저 제도 등의 카운슬링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점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개인 어드바이저는 단순히 구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고 행정서비스나 직업훈련의 정보제공 등 폭넓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제공되어 왔던 서비스를 개인 어드바이저가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넷째, 교육, 직업훈련을 국가인정직업자격(NVQ)의 취득과 연결하고 있는 점이다. NVQ와 연결하는 것에 의해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훈련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격을 취득하면 실업자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능력을 고용주에게 보일 수 있으므로 유리한 취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보조금이 끊어진 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경향이 높은 사람은 자격보유자, 고도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직무경험자 등으로 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신고용협정이 청년층을 비롯한 장기실업자의 취업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신고용협정의 경우 신고용협정 선택의 단계에 있는 대상자 중 교육과 훈련을받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과반수에 가까운 45.4%에 이르고 있다. 특히25세 이상 장기실직자 신고용협정의 경우, 진입단계를 지난 실직자에 게는 심화활동기간(Intensive Activity Period : IAP)을 설정하여, 고용능력향상 훈련, 교육과 훈련 기회 등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제공한다

## (2) 독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고용관련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 독일은 청년층 고용관련 지표 또한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성인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의 비율이 1.5배 정도 수준으로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5세에서 25세 청년층의 고용지표만 보더라도 2000년대 초반에 10% 이하로 머물렀던 실업률이 2005년에는 12.5%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sup>5)</sup>. 경제위기를 맞은 2009년에도 청년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교육에 기반한 중·고등 교육과정으로, 도제시스템과 기업과 연계된 직업교육체제가 노동수요와 공급간의 미스매칭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의 표는 학교-직장 이행의 유형을 정리해놓은 표이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의 경우 이원적 직업훈련제도를 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sup>6)</sup>.

이러한 이원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점으로는 이원화된 시스템 하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공신력이 높다는 점이다. 훈련의 과정에서 취득된 자격증은 노동시장으로의 긍정적인 신호를 주어 원하는 일자리와의 매칭과 이행을 원활하게 해준다. 또한 사업체의 사업주와 해당 노동조합이 훈련에 함께 참여하여 진행됨으로 그 경험과 숙련의 축적에서 있어 효과가 탁월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기업과 훈련생 그리고 국가사이에서 그 채용과 조달을 결정함으로써 인력 수요와 공급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훈련이 종료된 후 고용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5) BA(Bundesagentur für Arbeit)

6) 이원적 직업훈련제도(Dual system)은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2~4일은 사업체에서 실습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도이다. 독일 학생들은 4년제 초등교육을 마친 후 11세에 기간학교(Hauptschule), 실업학교(Realschule), 인문계 학교(Gymnasium), 종합학교(Gesamtchule) 사이에서 진로선택을 해야한다 (이승렬 외, 2010). 이원적 직업훈련은 보통 중등교육 후기에 접어드는 15~16세부터 19세까지 진행되는데 학교유형을 막론하고 적용 범위가 넓다. 기간학교 졸업생 중 75%, 실업학교 졸업생 중 60%, 대학입학 자격을 가진 학생 중 25%가 이원적 직업훈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Frommberger 2009)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표 2-3> 학교-직장 이행의 유형분류

|                  | 유형분류     | 특징                               | 해당국가  |
|------------------|----------|----------------------------------|---|
| ILO<br>(1998)    | 독일형      | 이원적 직업훈련                         |   |
|                  | 프랑스형     | 학교 직업훈련                          |   |
|                  | 북미형      | 일반 훈련                            |   |
|                  | 남미형      | 전일제 직업훈련                         |   |
| Rauner<br>(1999) | 제1유형     | 학교교육과 고용이 독립적                    | 일본  |
|                  | 제2유형     | OJT 중심                           | 미국, 영국  |
|                  | 제3유형     | 이원적 직업훈련                         | 벨기에, 덴마크, 독일,<br>네덜란드                           |
|                  | 제4유형     | 학교 직업훈련                          |   |
| OECD<br>(2000)   | 견습제도형    | 견습생 비율이 50% 상회                   | 독일, 스위스   |
|                  | 학교 직업훈련형 | 견습생은 20% 하회, 50% 이상이 학교 직업훈련에 참가 |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태리, 폴란드, 스웨덴, 영국       |
|                  | 일반교육형    | 50% 이상이 일반 교육프로그램에 참가            | 호주,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
|                  | 혼합형      | 견습생은 20~50%, 일반교육생의 비율은 50% 하회   |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

자료: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심층연구, 이승렬 외(2010)에서 인용

<표 2-4> 2000년대 독일의 청년실업대책

|               | 구분              | 시기                             | 특징  |
|---------------|-----------------|--------------------------------|---|
| 사회협약/<br>후속조치 | 직업훈련 협약         | 1차: 2004~2007<br>2차: 2007~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정부와 경제단체 간의 협약</li> <li>훈련장소 공급확대</li> </ul>   |
|               | Jobstarter 프로그램 | 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협약의 교육연구부 후속 조치</li> <li>양성훈련 거버넌스 개선</li> <li>Jobstarter Connect 프로그램으로 변화</li> </ul> |
|               | EQJ 프로그램        | 2004~20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협약의 노동사회부 후속 조치</li> <li>훈련장소 공급확대</li> <li>2007년부터 청년에서 일반 노동시장 정책으로 발전</li> </ul>    |
| 직업훈련 제도개선     | 직업훈련혁신          | 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훈련 혁신 10개 지침 마련</li> </ul>   |
|               | 교육을 통한 상향이동     | 20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훈련 혁신 지침의 계승</li> <li>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협약</li> </ul>                                      |
| 법률개정          | 직업훈련법 개정        | 20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성훈련의 유연화</li> </ul>   |
|               | 사회법전3권 4차 개정    | 20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훈련수당 및 취업수당</li> </ul>   |
|               | 사회법전3권 5차 개정    | 20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훈련 보너스 제도 도입</li> </ul>  |

자료: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심층연구, 이승렬 외(2010)에서 인용

한편으로 그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 앞서 설명하였듯이 청년층의 진로가 너무 이른 나이에 결정된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15세에서 19세 사이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그 직업과 경험을 결정하는 것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나이에 어쩔수 없이 선택한 직업선택에 대한 이직 혹은 전공 변경에 대한 비용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구조하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훈련종료 후 견습생을 채용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초기단계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실패한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에 미비하다. 훈련장소가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O'Higgins, 2001, 103-105).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에 들어서 독일이 실시한 청년실업대책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의 경우 앞에서 지적한 이원적 시스템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장소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1차 협약에서는 매년 3만 개씩, 2차 협약에서는 매년 6만 개씩 늘리자는 데 합의했다. 또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연구부는 Jobstater 및 Jobstarter Connect 프로그램을, 노동사회부는 EQJ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장소 공급 확대를 도왔다. 이와 같이 독일은 직업훈련 협약을 개정하고 확대를 통해 훈련장 부족의 해소, 새로운 훈련종목의 개발과 변하는 산업구조에 맞는 직종으로의 변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나라에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의 노력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 (3) 프랑스

프랑스는 1980년대 중 후반 이후, 전반적인 고실업, 특히 높은 청년실업률을 경험한 나라이며, 청년층과 중고령층 사이의 일자리 경쟁, 청년층의 낮은 직업안정성 등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왔다. 따라서 청년층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시도하여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적인 문제가 보다는 비정규직의 확산, 여성고용의 부진, 임금격차의 확대, 청년실업의 증가 등 질적인 측면과 그 구성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청년실업이 주요한 이슈인 프랑스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고용전략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제도, 강력한 고용보호제도,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등 역사적으로 형성된 노동시장제도가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데 불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 1990년에는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프랑스의 노동시장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고용정책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프랑스 청년실업정책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프랑스가 도입하였던 청년 고용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였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들의 내용과 평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청년고용정책의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실시되는 청년층 관련 정책은 Schwartz 보고서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다<sup>7)</sup>. 이 보고서가 나오기전 프랑스 청년층 노동시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높았으므로 청년층들의 취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1970년대에 노동시장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어 교육 및 노동시장을 개혁을 모색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모색하였는데 그 큰 두 가지 정책으로 방향으로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숙련된 노동력을 공급하여 불일치를 없애고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춰 고용증대를 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주장은 기업에 맞는 노동력 생산과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사회가 청년층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Schwartz 보고서는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정책이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청년층이 학교와 학교 이외의 기관, 즉 기업, 사회단체, 그리고 행정기관 등에서 이론교육과 실기를 번갈아 가면서 습득할 수 있는 훈련체계여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의 학점 인증제를 실시하여 직업교육의 질과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직업훈련과 노동조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

7) 1981년에서 새로 출범한 미테랑 정부가 Paris-Dauphine 대학의 Schwartz 교수에서 16세에서 21세 사이의 청년층들이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뢰한 결과로 제출한 보고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삶은 노동과 사회생활 모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쓰였다 (정인수의 2006).

는 과정에서 청년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청년층이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이해하도록 행정기관, 기업, 그리고 각종 사회적 파트너들이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Schwartz 보고서는 18세 이상 21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는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년층에 대한 교육훈련정책의 4가지 원칙에다가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층을 돕기 위한 정보 및 오리엔테이션 지역 센터의 설립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판단한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 초반에 ‘청년층 미래계획(Plan Avenir Jeunes)’이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국가의 계획을 반영하고 Schwartz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에도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1990년대 후반 들어 특정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고용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를테면, 1997년에 발족된 NSEJ와 1998년에 출범한 TRACE는 각각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청년층의 고용대책, 취약계층, 청년층에 대한 고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1990년대 초반에 불경기의 여파로 인하여 청년층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주요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청년층 노동력 유희화가 심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청년층의 활동을 늘리고 실업률을 낮추고자 고안된 것이 NSEJ이다. NSEJ에서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서비스 활동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서비스 활동이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에 내맡겼을 때는 발생하기 어려우면서 동시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서비스 활동을 가리킨다. NSEJ는 18~25세 사이의 청년층 가운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26~29세 사이의 청년층 가운데 실업자이면서 취업기간이 짧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도

NSEJ의 대상이 된다. 다만 청년층 가운데 학력이나 기술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NSEJ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NSEJ에서는 청년 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에 임금보조금이 월 단위로 5년간 지급된다. NSEJ에 의하여 창출된 일자리들은 대부분 풀타임 일자리였으며, 청년층에게 지급된 임금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어서 NSEJ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중손실 효과와 대체효과가 크고, 동 프로그램의 운용에 지출된 비용이 커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주었으며, 보다 전문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이 부족한 것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한편 TRACE는 취약계층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하여 이들의 고용을 증대시키고자 출범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청년층 실업률이 고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학교중퇴자를 비롯하여 약물중독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층들의 실업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TRACE이다.

TRACE는 장기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약계층 청년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보건, 주거등과 같이 취약계층 청년들이 직면하는 각종 개인적·사회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개개인이 처한 여건에 적합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담원에 의한 개인별 진로지도가 중요한데, 상담원은 자신에게 배정된 청년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장 24개월까지 직업훈련 및 직장탐색에 관한 조언과 지도를 하며, 주택, 건강, 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청년들을 도와주고 있다.

<표 2-5> 프랑스 긴급 고용대책 주요내용

| 주요제도             | 지원내용   | 대상<br>인원<br>(천 명) | 2009년<br>지출규모<br>(백만<br>유로) | 2010년<br>지출규모<br>(백만<br>유로) |
|------------------|--|-------------------|-----------------------------|-----------------------------|
| 수습직원<br>제도의 강화   | - 2009년 6월부터 1년동안 고용인 50인 미만의 기업이 청년을 수습직원으로 고용시에는 1,800유로의 지원금이 지급 됨. 1년동안 32만명의 수습직원직 마련 | 160               | 86.4                        | 86.4                        |
| 직업훈련생<br>고용제도 강화 | - 기업의 직업훈련생 고용에 대해 1년간 1,000유로를 지원, 고졸 미만인 직업훈련생을 고용할 경우에는 2,000유로를 지원함                    | 170               | 113.3                       | 113.3                       |
| 인턴사원<br>고용활성화    | - 2009년 4월에서 9월사이에 인턴사원을 같은 기업에서 정식으로 채용할 경우 3,000유로의 지원금 지급                               | 50                | 150                         | -                           |
| 직업 교육책<br>마련     | - 경기회복시 고용활성화를 위해 2009년 가을부터 5만명의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실시   | 50                | 80                          | 250                         |
| 재교육제도<br>강화      | -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나 학력 수준이 미달되는 청년 7,200명을 대상으로 재교육제도 강화   | 7.2               | 9                           | 17                          |
| 최초고용<br>제도지원     | - 2009년 하반기에 민간부분에서 5만명의 최초고용을 지원  | 50                | 75                          | 75                          |
| 공공분야<br>청년 고용지원  | - 공공분야에서의 직업경험을 통해 민간분야로 이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 2009년 하반기부터 3만명에 대해 시행                 | 30                | 70                          | 160                         |
|                  | <b>총 지원규모</b>  | <b>517.2</b>      | <b>583.7</b>                | <b>701.7</b>                |

자료 : 프랑스 노동부

그리고 지난 4월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노동부는 13억 유로(약 2조 3,000억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교육과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청년고용에 대한 정부 보조를 골자로 하는 긴급대책을 발표하였다.

청년층이 취업시 직면하는 어려움이 경력부족이며 수습직원제도와 직업훈련을 거친 청년의 경우 70% 가량이 정식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2009년 6월부터 1년 동안 50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프랑스 긴급고용대책의 주요내용은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4) 이탈리아

2011년 이탈리아 통계청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이 28.9%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 수치는 1년 전에 비해 2.4% 증가했으며 향후 수개월 동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탈리아는 예전부터 다른 OECD국가들에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각한 나라에 속한다. 이탈리아의 청년층 실업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노동시장 신규 높은 진입장벽과 같은 경제적 측면이다.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용환경이 신규 노동자보다는 기존 노동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직이 빈번한 중소기업에서는 비교적 그렇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이 일단 직장을 구하면 쉽게 직장을 이직하거나 잃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일정기간 부모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사회적 관습도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2006, 정인수 외). 일인당 GDP 2만 달러에 진입할 시점에서 경제사정의 악화되면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자, 이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청년층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국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청년층이 많고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탈리아와 매우 유사하다.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당장 의식주가 걱정이 없는 청년층들은 구직에 있어 평균적인 눈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층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장기간 실업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청년층 실업은 가족관계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탈리아의 청년층 고용대책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1996년 집권한 Prodi 정부는 노동조합 및 사측과 함께 국가노동협약(Accordo per il Lavoro)을 체결하고 고실업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찾아 제거하여 실업률을 낮추고자 했다. 이전에 체결된 노동협약에 비해 교육훈련에 대한 개혁,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새로운 규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분관화 및 개편, 실업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Onofri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소극적 복지(passive welfare)에서 기회복지(welfare of opportunities)로의 정책 변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청년층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고, 또한 전체 실직자 가운데 단지 20% 정도만 실업수당이 주어졌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기 위해 기회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회 복지로의 전환은 소득보상체계의 개편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의미하였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단 가운데 특히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청년층 실업을 획시적으로 줄이고자 하였다.

국가노동협약에서는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대학 혹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운수통신, 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였다. 고용증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으로는 청년층이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창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층 및 노동자들에 대한 또 다른 지원방안은 조세감면이 있다. 1994년에 제정된 Tremonti 법률에 기초하여 재정상의 인센티브 제공, 신규 고용에 대한 보너스 지급 등이었다. 32세 이하의 노동자, 이동성 명부에 등록된 노동자, 고용서비스기관에 2년 이상 구직자로 등록된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가운데 자영업을 새로이 시작한자가 해당된다. 그리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그리고 재정상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층이 설립한 업체, 또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이 주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업체가 해당된다. 창업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

고, 생산 및 고용을 증대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하였다.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계약(Contratti d'Area)이 있다. 지역계약은 경제위기로 고용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생산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국가노동협약에서는 일자리, 직업훈련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계약 형태를 제시하였다. 일자리와 관련한 계약은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노동 계약, 일자리 나누기계약, 그리고 파트타임 계약 등이 있다. 먼저, 임대노동 계약은 임시직 노동자의 고용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며, 일자리 나누기 계약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층 노동자들의 채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파트타임 계약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낮춰 청년층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센티브 제공이 그 목적이다. 또한 직업훈련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을 확대 개편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으로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감소시켜 청년층 실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훈련 기간 동안 훈련생들의 기능 및 기술을 검사한 후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 경험과 중급 이상의 기능 및 기술 습득을 통해 훈련생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은 크게 장기(24개월)와 단기(12개월) 직업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두 훈련 모두 사용자의 사회보장부담금을 경감하고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낮추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기초 직업훈련 계약의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기업이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을 통상적인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초 직업훈련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장기 직업훈련 계약은 중급 전문가 수준의 직업훈련의 경우에 적어도 8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그리고 고급 전문가 수준의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적어도 13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반면에, 기초 직업훈련 계약에서는 직업훈련이 20시간 이상이면 되도록 하였다.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적어도 12개월 동안 해당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어

야 하며, 적어도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의 60% 이상을 통상적인 계약으로 전환한 기업들만이 노동자들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훈련은 보통 현장훈련(OJT)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업은 훈련생들이 갖춘 자격 수준의 정도를 보고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3년 이상의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와 같은 장기 계약은 기업이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을 통상적인 직업훈련 계약으로 모두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었다.

도제 계약(apprenticeship contract)은 14세부터 20세 사이의 청년층 실업자에게 손재주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일 경험과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었다. 도제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임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의 감소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국가노동협약에서는 도제 계약에 참여하는 청년층 실업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그 대상을 농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도제 계약의 기간을 현장훈련 기간, 현장외 훈련 기간, 그리고 전문적인 자격 수준의 도달 여부를 체크하는 마무리 기간으로 세분하는 등 이전에 시행된 도제 계약과 차별화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과 도제 계약은 참가인원수 등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층의 고용증대에 기대한 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계약들을 시행한 결과, 청년층 고용인원수는 상당히 증가했지만, 그와 같은 고용증가의 상당 부분은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이 호경기에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호경기에 필요 인력을 전부 채용하지 않고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에 의한 청년층 노동력을 일시적으로 활용하여 노동비용을 낮추고 고용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공급정책 가운데 직업훈련정책은 직업훈련기관 사이의 협조, 카운셀링 강화, 일 경험 및 현장훈련 개선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탈리아의 직업훈련 구조를 일부 살펴보면, 직업훈련 프로젝트는 각 지역 단위에서 결정되고,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자금 가운데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자금은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Fund)에서 제공되며, 노동부는 지역 단위에서 실행되는 직업훈련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단위에서 결정된 프로젝트를 유럽사회기금에 전달하는 중계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역 단위의 직업훈련 프로젝트는 지역훈련센터 또는 사용자단체 등이 실시하도록 하였다.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은 60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노동자들에게 공인 자격증이 주어지도록 했다.

청년층 직업훈련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을 이수한 청년층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사회보장부담금을 경감시켜 주었다. 1994년에 법률로 제정된 일 접근 프로젝트(work access project)도 국가노동협약에서 중요하게 다룬 노동공급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지역행정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경제위기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노동부가 수행하도록 했다. 일 접근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의무교육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초 교육 훈련, 고졸 학력자를 위한 직업훈련, 그리고 사용자단체의 협조를 받아 실시되는 현장 훈련 및 일 경험 등과 같은 활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 접근 프로젝트는 최장 12개월, 월 80시간 내에서 실시되었는데, 청년층 노동자는 기간 중 구직자로 계속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은 1993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마련된 국가기금으로 충당되며, 지역은 별도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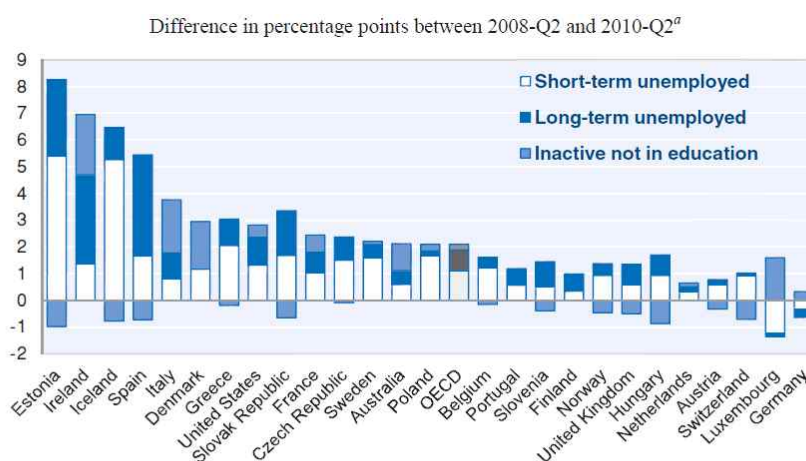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Socially Useful Activities : SUA) 프로그램도 국가노동협약에 따라 실시된 노동공급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SUA 프로그램의 설계는 지자체, 공공행정기관, 공기업 등이 담당했으며, 기술적인 지원

은 지역고용위원회가 맡았다. SUA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부문에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구직 명부에 등록된 일반 실업자, 19세에서 32세 사이의 청년 층 등이 동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다. 일 접근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SUA 프로그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기금과 지역의 추가적인자금지원으로 충당되도록 하였다.

## (5) 미국

미국의 청년실업률은 1991년에 OECD 평균과 같아진 후 꾸준히 3~4%p 정도 낮은 상태를 유지해 왔다. 2000년 이후로도 비교적 낮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청년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약 1%p 정도 높은 17.6%의 높은 실업률을 보였고 2012년에는 18%의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그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 실업률을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중 하나인 니트(NEET)<sup>8)</sup>비율의 경우도 2006년의 경우 약 11%로 이는 동일 시기의 OECD평균인 12%에서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2-6] 2010년과 2008년 NEET 비율 차이



a) Data for Switzerland refer to Q2-2009 instead of Q2-2010. Data for Canada, Japan, Korea, Israel, Mexico, New Zealand and Turkey are missing.

Source: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LFS) for European countries,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for all the others.

8) 니트(NEET)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 약자로, 재학, 근로, 직업훈련 중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영국의 노동정책 용어이다.

하지만 2010년과 2008년의 차이를 보면 니트족 비율이 경제위기 동안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떠한 정책들이 존재하는지를 직업훈련이나 취업 프로그램 등 노동시장 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들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에서 청년층 취업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크게 청년층 훈련교육과 취약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 청년층 훈련교육

청년층 훈련교육은 다시 경력 및 기술교육과 도제과정(apprenticeship)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중등교육 과정에서 독일의 경우처럼 뚜렷한 직업훈련 과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고등학교에서 경력 및 기술교육 과정(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ourse, CTE)에 등록할 수 있다. CTE 과정은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과정에 걸쳐 이수할 수 있으며, CTE 과정을 통해서 주로 일반적인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준비 및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직업교육은 경력 클러스터(career cluster)라고 불리는 16개의 직업군 중에서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력 클러스터는 직업훈련 뿐 아니라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이 각종 비즈니스나 산업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게 해줄뿐만 아니라 진학에 대한 준비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다. NCES(2008)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미국학생 90%가 CTE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과정을 하나 이상 수료하였고 그중 21%는 집중적인 직업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수료 학점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아지는 관계가 있지만 과정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의 경우 취업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노동시장에 특히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학급과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개발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제과정은 전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자에 의해 결정됨으로 그 구조나 성격이 매우 다양한데, 그중에서 등록도제(Registered Apprenticeship)만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특정한 도제프로그램의 수료에 필요한 내용이 그 사항

들은 서로 상이 하며 이러한 내용은 고용주 혹은 노조와 고용주로 이루어진 합동조제위원회(joint apprenticeship committee)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모든 등록도제과정은 다음의 4가지 공통적인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적어도 연간 2,000시간의 OJT 교육이 있어야 하고 둘째, 기술수준이 높은 직업의 경우 적어도 연간 144시간의 교실수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주로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 혹은 원거리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셋째, 자격이 있는 멘토에 의해서 도제의 작업과 수업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멘토는 감독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도제가 직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돕는 일에 중점을 뒀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제에 대한 보수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대체로 처음 시작 시의 임금수준은 관련 업계의 일반적 초급기술자 수준의 50% 정도에서 시작하고 매 6개월마다 훈련 및 이에 따른 기술습득 수준에 맞게 임금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제가 한 고용주 아래에서 도제과정을 마치는 것은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몇 개의 다른 일자리를 거친다. 이를 통해서 업계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함과 동시에 고용주 한 사람에게 OJT 훈련과 관련된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도제과정을 수료한 경우 도제수료증을 받음과 동시에 등록제과정에 따라서는 대학 진학을 위한 학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훈련 기간은 1년에서 6년 정도로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4년의 기간이 가장 흔하다.

## ② 취약 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미국은 노동시장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취약 청년층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 복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취약 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Job Corps 프로그램, Youth Build 프로그램, 그리고 WIA 청년 활동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Job Corps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취약한 16~24세 저소득 가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관련 훈련을 나라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120여개의 Job Corps 센터가 존재하며, 연간 6만 여명의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의 약 70%정도는 고졸 미만의 학생들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중등교육수준에 맞춘 교육과 훈련을 우선시 하고 있다. 또한 몇몇 직업훈련과정들은 도제과정과 연계되어 있어 도제전 과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학생들은 기숙시설에 거주하며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아 각 개인에게 적절한 직업개발 플랜을 준비한다. 동시에, 프로그램을 받는 과정 동안 용돈을 지급받게 되고 중등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착수금조의 금액을 주어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돕고 있다. 최근 이 프로그램의 평가가 Scohchet et al (2006)을 통해 이루어진 바 있으며 평가결과 20~24세 연령대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4년 미국 노동부는 New Vision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Job Corps 프로그램의 기술적 부분을 개발시켜 나가고 있다.

1979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노동부에서 소관하는 Youth Build 프로그램은 16~24세의 취약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고등학교 학력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설현장에서의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16~24세 중 학교를 중퇴한 자로서 저소득 자녀이거나 혹은 다른 조건 중 한가지 이상의 사항만 만족한다면 참여가능하다. 이 프로그램 또한 Job Corps 프로그램과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용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여 기간은 9개월 정도이다. 참여하게 되면 50% 이상의 시간을 교육과 관련 서비스에 투여하여야 하고 최소 40%의 시간은 건설 현장 참여나 훈련, 구직활동 등에 투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1998년 제정된 인력투자법(WIA)를 통해 지원이 되고 있는 WIA 청년활동 프로그램은 14~21세의 취약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대별로 우선시 하는 서비스를 구분하여 14~18세의 연령층은 교육성과 향상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우선시하여 지원하는 반면 19~21세의 연령층에게는 취업서비스를 가장 우선시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 정부마다 그 지역 실정에 맞추어 유연성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6) 일본

1990년대의 일본은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업률도 자연스레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계층에 비해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며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청년 실업은 프리타(freeter)<sup>9)</sup>와 니트(NEET)의 증가 현상으로 대표된다. 현재는 프리타나 니트들이 부모의 원조를 받고 있으므로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프리타와 니트 비율의 증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취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의 부족에 따른 경력 개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일본 정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직업 훈련 제도인 듀얼 시스템(dual system)과 고용대책으로서 신규 졸업자와 미취직 졸업자에 대한 지원, 프리타나 청년실업자의 조기취직 지원, 그리고 청년 직업의식의 형성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

### ① 직업훈련 제도-듀얼 시스템(Dual system)

일본의 듀얼 시스템은 2004년도부터 전국에 도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제도로서 기업에서의 실습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이다.

듀얼시스템의 기본 유형에는 전문학교 등의 교육훈련기관이 주도하는 형태인 교육훈련기관 주도형과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주도형 형태가 있다. 훈련을 받는 사람이 교육훈련기관에 들어가게 되는 교육훈련기관 주도형은 청년을 훈련생으로 받아들여 연계할 수 있는 기업을 모색한다. 그 후 기업과 공동으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실습은 기업에 위탁하는 구

---

9) 프리타(freeter)란 free(자유롭다) + arbeit(시간제 근로)가 합쳐진 말로, 15~34세의 아르바이트나 계약 파견 사원 등 저임금으로 단기간의 취업상태를 반복하는 청년 근로자 또는 현재 무직으로 아르바이트나 계약 파견 사원을 희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조를 가진다. 이와는 반대로 기업주도형은 청년을 파트타임 직원으로 고용한 후 기업이 교육훈련기관을 물색하여 공동으로 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이다.

훈련과정은 훈련기관에 따라 전문과정을 활용하는 2년 코스, 보통과정을 활용하는 1년 코스, 그리고 위탁훈련인 5개월 코스로 나누어진다. 우선 2년 코스(전문과정 활용형)는 높은 취업 실적을 보이는 직업능력개발 대학교 등의 2년제 수업과정으로, 기업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 실습을 실시하는 훈련이다. 자격 조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년 코스(보통과정 활용형)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의 습득으로부터 실천적인 수준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훈련코스에 따라서는 공적인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이다. 학력에 대한 자격 조건은 없다. 5개월 코스(표준 코스)는 전국의 도, 부 현 센터가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해 직업의식의 개발, 학습에 의한 지식 습득, 기업의 실습 훈련 까지 관리하고 있는 직업훈련 과정이다. 다른 과정과는 달리 무료로 진행되며, 자격 대상자는 30세 미만의 구직자이지만 30세이상, 35세 이하의 구직자 중에서도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고용 대책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 대책은 크게 신규 졸업자 또는 실업 졸업자에 대한 지원, 프리타에 대한 취직 지원, 그리고 주니어 인턴십으로 직업의식 형성 지원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신규 졸업자에 대한 지원은 대졸자와 고졸자로 나누어 실시되어 진다. 대학 신규 졸업자에 대해서는 학생직업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학생 담당 헬로우 워크를 설치하여 웹 사이트를 사용한 구인정보 제공, 개별 카운슬링, 취직 가이드와 세미나의 실시 등을 통해 취업을 돕고 있다.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경우에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기업과 제휴하면서 구인을 개척하거나 직업 소개를 실시한다. 실업 졸업자에 대한 지원은 헬로우 워크의 job

supporter를 전국 100여군데 배치하여 상담과 취직 지원, 직업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

프리타에 대한 취직지원 대책으로는 청년 공공직업안정소라는 헬로우 워크를 설치하여, 취직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취직지원의 한 방안으로서 청년 트라이얼 고용(Trial Employment)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OJT를 통해서 직업 경험을 쌓아 직업능력을 높여 주는 제도이다. 취직지원의 또 다른 방안으로는 경험이 부족한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 고용 정책으로, 고교생의 직업의식 형성을 위한 지원을 위해 주니어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 견학을 통한 취업 체험을 통해 직업의식 형성을 보완해줌 과 동시에 보호자에게도 의식을 높여 주기 위해 세미나가 실시되고 있다. 적성이나 능력, 흥미, 혹은 직업, 산업의 실태를 바탕으로 장래 경력 형성에 관한 의식을 높여주는 지원 방법 또한 중요한 고용정책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 3. 소결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지표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년층에서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혹은 진입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어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성인대비 청년실업률이 약 3배 차이를 보여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의 청년실업정책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청년실업정책 수립에 영국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참고할 수 있는데, 먼저 영국의 경우 그 장점은 장기실업문제가 심각한 고령자와 청소년을 위한 대책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정책들이 지방자치체의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능을 얻어 취직으로의 이행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과 단순히 구인정보를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고 행정서비스나 직업훈련의 정보제공 등 카운슬링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 등은 한국의 정책수립 시 참고할만한 부분들이다.

일본의 경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청년실업정책의 2대 축인 직업훈련(일본식 듀얼 시스템)과 취업지원정책은 우리나라 고졸 이하 청년 실업해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듀얼 시스템은 고졸 이하자들의 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5, 12, 24 개월 등의 다양한 코스를 개설하고 훈련방법도 이론학습과 기업체의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수행기관도 학교, 기업, 업종별 단체에 맡김으로서 지역과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고용 트라이얼(trial) 제도는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신규고용촉진 지원금, 즉 청년 고용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으로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는 2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은 정책 수립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부분이기도 하다.

주요국의 청년 정책을 살펴봤을 때, 청년대책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직접적인 고용이 가능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 지역에 맞는 수요 중심적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학중 브릿지 프로그램 및 청년아카데미, 그리고 인턴 등의 제도를 실시할 때 단순한 경험을 쌓거나 취업가능성이 낮은 곳에서 경험은 직접적인 구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음으로 각 지역이나 수요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도록 시작 단계에서 보다 세심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전반적인 청년층을 아우르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취약 청년층에 대한 정책은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효과가 있으며, 청년고용정책이 일부 저질의 일자리를 대신하는데 이용되어 다른 연령대의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경쟁으로 혹은 세대간 일자리 갈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오랜 기간 받는 청년의 경우 낙인효과로 인해 기업에서 꺼리는 등 과도한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청년층 취업에 부정적인 효과와 보조금의 사중효과로 사회적 낭비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과 기업의 부정적인 인식과 이해부족은 청년고용정책의 성공여부는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중에 하나임으로 정책 수립시 기업의 정확한 필요인력과 그 수준 등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요구된다.

## 제3장. 청년층의 근로 실태 현황

본 장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청년층의 근로 환경에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산업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고용의 질적, 양적 비교를 통해 취약 직종 및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년층의 근로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최근 데이터인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청년층은 만 15세에서 29세<sup>10)</sup>에 해당하는 인구로 정의하였다.

먼저 청년층의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고용의 안정성 측면인 정규직 비율을 살펴본 후, 고용의 질적인 측면인 임금, 근로일수, 노동시간, 4대 보험, 상여금 및 퇴직금 적용, 노동조합 가입 비율을 살펴본다.

### 1. 산업별 청년 고용 현황

201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근로자 및 청년층 근로자를 추정한 결과 전체 근로자수는 1,270만 여명이고, 이 가운데 만 15세에서 29세 이하의 청년층 취업자는 268만 여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청년의 고용율은 21.1%로 나타나 전체 근로자 가운데 약 1/5 정도가 청년층인 것으로 파악된다.

단순 근로자수로 파악할 때 청년층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으로 청년층 근로자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15.3%), 숙박 및 음식점업(1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10) OECD의 경우 만 15-24세를 청년(youth)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군입대 등의 특수적인 여건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만 15-29세로 정의한다.

<표 3-1> 산업별 청년 고용 현황

(단위 : 명, %)

|                       | 청년<br>취업자수 | 전체<br>취업자수 | 청년내<br>고용분포 <sup>a)</sup> | 청년<br>고용률 <sup>b)</sup> | 청년평균<br>고용비율<br>과의격차 <sup>c)</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3,011      | 27,215     | 0.1%                      | 11.1%                   | -10.0%                             |
| 광업                    | 693        | 14,263     | 0.0%                      | 4.9%                    | -16.2%                             |
| 제조업                   | 599,345    | 3,050,749  | 22.4%                     | 19.6%                   | -1.4%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4,837      | 54,529     | 0.2%                      | 8.9%                    | -12.2%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5,381      | 61,017     | 0.2%                      | 8.8%                    | -12.3%                             |
| 건설업                   | 89,783     | 1,033,146  | 3.4%                      | 8.7%                    | -12.4%                             |
| 도매 및 소매업              | 409,967    | 1,618,274  | 15.3%                     | 25.3%                   | 4.3%                               |
| 운수업                   | 69,335     | 617,632    | 2.6%                      | 11.2%                   | -9.8%                              |
| 숙박 및 음식점업             | 299,387    | 902,582    | 11.2%                     | 33.2%                   | 12.1%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20,808    | 410,041    | 4.5%                      | 29.5%                   | 8.4%                               |
| 금융 및 보험업              | 113,418    | 771,609    | 4.2%                      | 14.7%                   | -6.4%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24,049     | 345,396    | 0.9%                      | 7.0%                    | -14.1%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58,802    | 675,469    | 5.9%                      | 23.5%                   | 2.4%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50,567    | 730,698    | 5.6%                      | 20.6%                   | -0.5%                              |
| 교육서비스업                | 161,893    | 715,891    | 6.1%                      | 22.6%                   | 1.5%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83,259    | 967,255    | 10.6%                     | 29.3%                   | 8.2%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76,026     | 171,126    | 2.8%                      | 44.4%                   | 23.4%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04,794    | 529,987    | 3.9%                      | 19.8%                   | -1.3%                              |
| 전체                    | 2,675,355  | 12,696,879 | 100.0%                    | 21.1%                   | 0.0%                               |

주) a) 청년내 고용분포=(해당 산업의 청년 취업자수/전체 청년 취업자수)

b) 청년 고용율=(해당 산업의 청년 취업자수/해당 산업의 전체 취업자수)

c) 청년평균 고용 비율과의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고용률-전체 산업의 청년 고용률 평균)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청년 근로자의 분포를 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이 44.4%로 해당 산업 전체에서 청년층의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3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29.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9.3%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업(4.9%), 부동산업 및 임대업(7.0%), 건설업(8.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8.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8.9%)로 10% 미만의 고용율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수의 규모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데 반해 청년고용율이 타 산업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파악해 보기 위해 산업별 청년층의 근로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자.

고용 안정성의 대리변수로 파악할 수 있는 정규직 여부를 보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70.1%가 정규직이고, 청년층 취업자의 정규직 비율이 65.3%로 나타나 약 4.9% 포인트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정규직의 비율이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26.7%, 교육 서비스업이 4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의 경우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산업에선 정규직 채용 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산업내 정규직 비율 격차를 통해 청년 정규직 비율이 열악한 산업을 보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8.6%P),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5.7%P),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14.9%P),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4.4%P), 숙박 및 음식점업(-14.3%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산업 전체의 정규직 비율이 높고 낮음과 관계 없이 청년층에 대한 고용 차별이 크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표 3-2> 산업별 청년의 정규직 고용 현황

(단위 : %, %P)

|                       | 청년<br>정규직비율 | 전체<br>정규직비율 | 청년내<br>정규직격차 <sup>a)</sup> | 산업내<br>정규직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48.2%       | 58.3%       | -17.0%P                    | -10.1%P                    |
| 광업                    | 79.2%       | 86.4%       | 13.9%P                     | -7.2%P                     |
| 제조업                   | 86.4%       | 87.8%       | 21.1%P                     | -1.4%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77.9%       | 93.6%       | 12.7%P                     | -15.7%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84.9%       | 89.1%       | 19.6%P                     | -4.2%P                     |
| 건설업                   | 64.6%       | 53.2%       | -0.7%P                     | 11.4%P                     |
| 도매 및 소매업              | 61.0%       | 67.2%       | -4.2%P                     | -6.2%P                     |
| 운수업                   | 69.8%       | 81.7%       | 4.5%P                      | -11.9%P                    |
| 숙박 및 음식점업             | 22.2%       | 36.5%       | -43.1%P                    | -14.3%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66.9%       | 85.6%       | 1.7%P                      | -18.6%P                    |
| 금융 및 보험업              | 68.3%       | 51.7%       | 3.0%P                      | 16.6%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6.4%       | 55.6%       | 1.1%P                      | 10.7%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83.8%       | 90.5%       | 18.6%P                     | -6.6%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62.4%       | 70.3%       | -2.9%P                     | -7.9%P                     |
| 교육서비스업                | 40.9%       | 47.1%       | -24.4%P                    | -6.3%P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87.8%       | 80.0%       | 22.5%P                     | 7.8%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26.7%       | 41.6%       | -38.5%P                    | -14.9%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55.7%       | 70.1%       | -9.6%P                     | -14.4%P                    |
| 전체                    | 65.3%       | 70.1%       | 0.0%P                      | -4.9%P                     |

주) a) 청년내 정규직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정규직 비율-전체 산업의 청년 정규직 비율)

b) 산업내 정규직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정규직 비율-해당 산업의 전체 정규직 비율)

## 2. 청년층의 임금 및 근로시간

고용의 질 측면에서 청년층의 임금 및 근로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자. 임금의 경우 정액급여(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 및 초과급여, 특별급여(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로 구성이 되는데 합산해서 처리할 경우 임금 상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으로 파악한다.

근로 시간 또한 소정실근로일수, 휴일실근로일수 및 소정실근로시간수, 초과실근로시간수 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분화된 상태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1) 임금

2011년 전체 근로자의 정액급여 평균은 198만원 임에 반해 청년층의 정액급여 평균은 145만원으로 약 52.9만원의 격차가 있다.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주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약 199만원을 지급한다.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88만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81만원), 운수업(17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정액임금을 주는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으로 약 338만원의 급여를 주고 있으며, 금융 및 보험업은 301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86만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2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산업별 청년의 정액급여 현황

(단위 : 천원)

|                       | 청년<br>정액급여 | 전체<br>정액급여 | 청년내<br>정액급여<br>격차 <sup>a)</sup> | 산업내<br>정액급여<br>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389.3    | 2,015.0    | -60.9                           | -625.7                          |
| 광업                    | 1,675.9    | 2,305.5    | 225.7                           | -629.6                          |
| 제조업                   | 1,521.5    | 1,924.7    | 71.3                            | -403.2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879.6    | 3,376.2    | 429.4                           | -1,496.6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582.1    | 2,013.6    | 131.9                           | -431.5                          |
| 건설업                   | 1,740.2    | 2,093.9    | 290.0                           | -353.7                          |
| 도매 및 소매업              | 1,343.6    | 1,780.6    | -106.6                          | -437.0                          |
| 운수업                   | 1,699.5    | 1,945.0    | 249.2                           | -245.5                          |
| 숙박 및 음식점업             | 825.5      | 1,109.3    | -624.7                          | -283.8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691.3    | 2,861.0    | 241.1                           | -1,169.7                        |
| 금융 및 보험업              | 1,988.4    | 3,013.4    | 538.1                           | -1,025.1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493.0    | 1,611.8    | 42.8                            | -118.8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806.4    | 2,815.1    | 356.1                           | -1,008.8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503.0    | 1,793.3    | 52.7                            | -290.3                          |
| 교육서비스업                | 1,442.1    | 2,151.4    | -8.2                            | -709.3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575.2    | 1,795.5    | 125.0                           | -220.3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1,100.3    | 1,483.5    | -349.9                          | -383.2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247.7    | 1,546.1    | -202.5                          | -298.3                          |
| 전체                    | 1,450.2    | 1,979.3    | 0.0                             | -529.1                          |

주) a) 청년내 정액급여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정액급여 평균-전체 산업의 청년 정액급여 평균)

b) 산업내 정액급여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정액급여 평균-해당 산업의 전체 정액급여 평균)

청년층 평균 정액임금과의 격차를 보여주는 청년내 정액급여 격차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62.5만원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5만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0.3만원), 도매 및 소매업(10.7만원)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청년층에 비해 낮은 임



금을 받고 있다.

산업 내에서의 청년 임금격차를 보면 청년층 내에서 높은 임금군에 속했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산업이 148만원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17만원), 금융 및 보험업(103만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1만원)의 순으로 산업내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3-4> 산업별 청년의 초과급여 현황

(단위 : 천원)

|                       | 청년<br>초과급여 | 전체<br>초과급여 | 청년내<br>초과급여<br>격차 <sup>a)</sup> | 산업내<br>초과급여<br>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31.6       | 37.6       | -74.4                           | -6.0                            |
| 광업                    | 174.1      | 306.1      | 68.1                            | -132.0                          |
| 제조업                   | 289.1      | 307.9      | 183.1                           | -18.8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85.0      | 279.7      | 79.0                            | -94.7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7.5       | 186.4      | -8.5                            | -89.0                           |
| 건설업                   | 64.4       | 55.0       | -41.6                           | 9.4                             |
| 도매 및 소매업              | 54.2       | 51.3       | -51.8                           | 2.9                             |
| 운수업                   | 109.4      | 173.0      | 3.4                             | -63.6                           |
| 숙박 및 음식점업             | 24.2       | 24.8       | -81.8                           | -0.6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1.1       | 68.6       | -54.9                           | -17.6                           |
| 금융 및 보험업              | 38.3       | 43.8       | -67.7                           | -5.5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7.1       | 35.7       | -58.9                           | 11.4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61.0       | 75.2       | -45.0                           | -14.2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90.8       | 119.0      | -15.2                           | -28.2                           |
| 교육서비스업                | 12.0       | 29.1       | -94.0                           | -17.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85.1       | 75.4       | -20.9                           | 9.7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36.8       | 72.8       | -69.2                           | -36.0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8.9       | 30.7       | -87.1                           | -11.8                           |
| 전체                    | 106.0      | 124.0      | 0.0                             | -18.0                           |

주) a) 청년내 초과급여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초과급여 평균-전체 산업의 청년 초과급여 평균)

b) 산업내 초과급여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초과급여 평균-해당 산업의 전체 초과급여 평균)

청년층 내에서 초과급여가 가장 높은 산업은 제조업으로 청년층 평균 초과급여인 10.6만원 보다 약 18.3만원이 높은 28.9만원 보이고 있다. 낮은 산업으로는 교육서비스업(1.2만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9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2.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산업별 청년의 특별급여 현황

(단위 : 천원)

|                       | 청년 특별급여 | 전체 특별급여  | 청년내 특별급여 격차 <sup>a)</sup> | 산업내 특별급여 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261.4 | 4,453.2  | -745.4                    | -3,191.8                  |
| 광업                    | 1,708.8 | 4,424.2  | -297.9                    | -2,715.4                  |
| 제조업                   | 4,245.3 | 5,974.1  | 2,238.5                   | -1,728.8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6,646.3 | 15,737.6 | 4,639.6                   | -9,091.3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540.2 | 2,814.8  | -466.6                    | -1,274.6                  |
| 건설업                   | 1,173.8 | 1,662.1  | -832.9                    | -488.3                    |
| 도매 및 소매업              | 997.2   | 2,448.2  | -1,009.5                  | -1,450.9                  |
| 운수업                   | 3,536.5 | 4,331.7  | 1,529.7                   | -795.2                    |
| 숙박 및 음식점업             | 219.7   | 426.6    | -1,787.1                  | -206.9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140.4 | 5,073.0  | -866.4                    | -3,932.6                  |
| 금융 및 보험업              | 4,691.8 | 8,224.5  | 2,685.0                   | -3,532.7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60.4   | 1,433.4  | -1,146.4                  | -573.1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2,340.6 | 5,009.3  | 333.8                     | -2,668.7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411.3 | 2,659.1  | -595.5                    | -1,247.9                  |
| 교육서비스업                | 285.3   | 1,919.7  | -1,721.4                  | -1,634.4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942.7 | 2,367.7  | -64.1                     | -425.0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465.1   | 1,456.0  | -1,541.6                  | -990.9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450.3   | 1,667.4  | -1,556.5                  | -1,217.1                  |
| 전체                    | 2,006.8 | 3,719.4  | 0.0                       | -1,712.6                  |

주) a) 청년내 특별급여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특별급여 평균-전체 산업의 청년 특별급여 평균)

b) 산업내 특별급여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특별급여 평균-해당 산업의 전체 특별급여 평균)

그러나 초과급여의 경우 초과 근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별 특

성이 반영되어 있어 단순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다만 동일 산업내에선 연령층에 상관없이 초과 근로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산업내 비교가 가능하다. 산업내에서 청년층의 초과근로소득의 격차를 의미하는 산업내 초과급여 격차를 보면 광업에서 13.2만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산업(9.5만원),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8.9만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여금이나 성과금에 해당하는 특별급여의 경우 청년층 평균은 201만원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내에서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으로 약 665만원 이었으며, 금융 및 보험업 469만원, 제조업 425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22만원으로 특별급여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업 28.5만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5만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5만원의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초과급여와 청년층 초과급여의 차이를 보면 청년층내 초과급여가 가장 높은 산업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산업에서 909만원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93만원, 금융 및 보험업 353만원의 순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 2) 근로 시간

<표 3-6> 산업별 청년의 소정실근로일수 현황

(단위 : 일)

|                       | 청년<br>소정<br>실근로일수 | 전체<br>소정<br>실근로일수 | 청년내 소정<br>실근로일수<br>격차 <sup>a)</sup> | 산업내 소정<br>실근로일수<br>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20.7              | 20.4              | -0.1                                | 0.3                                 |
| 광업                    | 21.5              | 21.9              | 0.7                                 | -0.5                                |
| 제조업                   | 21.2              | 21.4              | 0.4                                 | -0.3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21.0              | 21.1              | 0.2                                 | -0.1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22.0              | 22.4              | 1.2                                 | -0.4                                |
| 건설업                   | 19.9              | 19.5              | -0.9                                | 0.4                                 |
| 도매 및 소매업              | 21.1              | 22.1              | 0.4                                 | -1.0                                |
| 운수업                   | 21.3              | 21.4              | 0.5                                 | -0.1                                |
| 숙박 및 음식점업             | 19.2              | 21.4              | -1.6                                | -2.2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0.2              | 20.7              | -0.6                                | -0.6                                |
| 금융 및 보험업              | 20.9              | 20.9              | 0.1                                 | 0.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21.2              | 20.3              | 0.5                                 | 0.9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20.9              | 20.9              | 0.1                                 | 0.0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9.9              | 20.8              | -0.9                                | -0.9                                |
| 교육서비스업                | 19.8              | 19.3              | -0.9                                | 0.6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2.3              | 22.0              | 1.5                                 | 0.3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20.3              | 20.9              | -0.5                                | -0.6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21.4              | 22.1              | 0.6                                 | -0.8                                |
| 전체                    | 20.8              | 21.2              | 0.0                                 | -0.4                                |

주) a) 청년내 소정실근로일수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소정실근로일수 평균-전체 산업의 청년 소정실근로일수 평균)

b) 산업내 소정실근로일수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소정실근로일수 평균-해당 산업의 전체 소정실근로일수 평균)

정규 근로일수를 의미하는 소정실근로일수는 전체평균 21.2일로 나타났고, 청년의 경우 20.8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내에서 정규 근로일수가 가장 높은 직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약 22.3일을 근무하고 있으며,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2일), 광업(21.5일) 등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모두 청년층 평균 소정실근로일수에서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다.

산업내 평균 정규 근로일수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청년층의 근로일수가 많은 직종이 나타난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동일 산업 전체 근로자에 비해 0.9일 정규 근로를 더 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업 0.6일, 건설업 0.4일 등의 순으로 청년층의 근로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휴일 근로일수의 경우엔 제조업이 1.3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광업 0.8일,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5일의 순으로 나타났다지만,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산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별 비교 분석에서도 정규 근로일수와 유사하게 전체와 청년층의 휴일 근로일수에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표 3-7> 산업별 청년의 휴일실근로일수 현황

(단위 : 일)

|                       | 청년<br>휴일<br>실근로일수 | 전체<br>휴일<br>실근로일수 | 청년내 휴일<br>실근로일수<br>격차 <sup>a)</sup> | 산업내 휴일<br>실근로일수<br>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0.2               | 0.2               | -0.3                                | 0.0                                 |
| 광업                    | 0.8               | 0.9               | 0.3                                 | -0.2                                |
| 제조업                   | 1.3               | 1.2               | 0.8                                 | 0.2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0.4               | 0.4               | -0.1                                | 0.0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0.5               | 0.6               | 0.0                                 | -0.1                                |
| 건설업                   | 0.4               | 0.2               | -0.1                                | 0.1                                 |
| 도매 및 소매업              | 0.2               | 0.2               | -0.2                                | 0.0                                 |
| 운수업                   | 0.4               | 0.5               | -0.1                                | -0.1                                |
| 숙박 및 음식점업             | 0.1               | 0.1               | -0.4                                | 0.0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0.3               | 0.3               | -0.2                                | 0.0                                 |
| 금융 및 보험업              | 0.0               | 0.1               | -0.4                                | 0.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0.2               | 0.1               | -0.3                                | 0.1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0.3               | 0.3               | -0.2                                | 0.0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0.4               | 0.5               | 0.0                                 | 0.0                                 |
| 교육서비스업                | 0.0               | 0.0               | -0.4                                | 0.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0.3               | 0.3               | -0.1                                | 0.1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0.2               | 0.3               | -0.3                                | -0.1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0.1               | 0.1               | -0.4                                | 0.0                                 |
| 전체                    | 0.5               | 0.4               | 0.0                                 | 0.0                                 |

주) a) 청년내 휴일실근로일수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휴일실근로일수 평균-전체 산업의 청년 휴일실근로일수 평균)

b) 산업내 휴일실근로일수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휴일실근로일수 평균-해당 산업의 전체 휴일실근로일수 평균)

소정실근로시간수의 경우 청년층 전체 평균은 164시간으로 전체 평균인 169시간에 비해 약 5시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내에서 소정실근로시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178시간에 달했으며,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75시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시간의 순으로 실근로시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산업별 청년의 소정실근로시간수 현황

(단위 : 시간)

|                       | 청년<br>휴일<br>실근로시간수 | 전체<br>휴일<br>실근로시간수 | 청년내 소정<br>실근로시간수<br>격차 <sup>a)</sup> | 산업내 소정<br>실근로시간수<br>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64.2              | 162.4              | -0.2                                 | 1.9                                  |
| 광업                    | 173.0              | 174.7              | 8.6                                  | -1.7                                 |
| 제조업                   | 169.8              | 171.5              | 5.3                                  | -1.8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69.6              | 170.3              | 5.2                                  | -0.7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74.7              | 177.3              | 10.3                                 | -2.5                                 |
| 건설업                   | 159.6              | 157.0              | -4.8                                 | 2.6                                  |
| 도매 및 소매업              | 170.7              | 175.3              | 6.2                                  | -4.6                                 |
| 운수업                   | 170.5              | 171.4              | 6.1                                  | -0.9                                 |
| 숙박 및 음식점업             | 143.5              | 173.7              | -20.9                                | -30.2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56.6              | 164.4              | -7.9                                 | -7.8                                 |
| 금융 및 보험업              | 167.5              | 167.2              | 3.1                                  | 0.3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73.7              | 199.2              | 9.2                                  | -25.5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67.1              | 167.4              | 2.7                                  | -0.2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60.3              | 166.1              | -4.2                                 | -5.8                                 |
| 교육서비스업                | 146.7              | 141.8              | -17.7                                | 4.9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77.6              | 170.8              | 13.2                                 | 6.8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154.7              | 161.6              | -9.7                                 | -6.9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72.6              | 173.9              | 8.2                                  | -1.3                                 |
| 전체                    | 164.4              | 169.0              | 0.0                                  | -4.6                                 |

주) a) 청년내 소정실근로시간수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소정실근로시간수 평균-전체 산업의 청년 소정실근로시간수 평균)

b) 산업내 소정실근로시간수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소정실근로시간수 평균-해당 산업의 전체 소정실근로시간수 평균)

산업내 평균 실근로시간수와의 격차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청년층의 실근로시간수가 산업평균에 비해 약 6.8시간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교육서비스업 4.9시간, 건설업 2.6시간의 순으로 해당 산업 평균에 비해 더 많은 근로시간수를 보이고 있다.

휴일 실근로시간수의 경우는 초과 근로시간수를 의미하는데, 청년층의 경우 제조업이 29.9시간으로 가장 높으며, 광업 18.3시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3.7시간, 운수업 10.0시간의 순으로 휴일 근로시간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9> 산업별 청년의 휴일실근로시간수 현황

(단위 : 시간)

|                       | 청년<br>휴일<br>실근로시간수 | 전체<br>휴일<br>실근로시간수 | 청년내 휴일<br>실근로시간수<br>격차 <sup>a)</sup> | 산업내 휴일<br>실근로시간수<br>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3.8                | 3.6                | -6.9                                 | 0.2                                  |
| 광업                    | 18.3               | 22.8               | 7.6                                  | -4.5                                 |
| 제조업                   | 29.9               | 27.5               | 19.3                                 | 2.5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3.7               | 14.4               | 3.0                                  | -0.7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5                | 15.3               | -1.2                                 | -5.8                                 |
| 건설업                   | 6.3                | 4.2                | -4.3                                 | 2.2                                  |
| 도매 및 소매업              | 5.9                | 4.8                | -4.8                                 | 1.1                                  |
| 운수업                   | 10.0               | 14.2               | -0.7                                 | -4.2                                 |
| 숙박 및 음식점업             | 3.0                | 2.7                | -7.7                                 | 0.3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2                | 5.4                | -5.4                                 | -0.1                                 |
| 금융 및 보험업              | 3.2                | 2.4                | -7.4                                 | 0.9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7                | 2.6                | -5.9                                 | 2.2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5.1                | 5.2                | -5.6                                 | -0.2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8.6                | 10.4               | -2.1                                 | -1.8                                 |
| 교육서비스업                | 1.1                | 2.6                | -9.6                                 | -1.5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6.9                | 5.9                | -3.7                                 | 1.0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3.8                | 6.1                | -6.9                                 | -2.3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9                | 2.6                | -8.8                                 | -0.7                                 |
| 전체                    | 10.7               | 10.7               | 0.0                                  | -0.1                                 |

주) a) 청년내 휴일실근로시간수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휴일실근로시간수 평균-전체 산업의 청년 휴일 실근로시간수 평균)

b) 산업내 휴일실근로시간수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휴일실근로시간수 평균-해당 산업의 전체 휴일 실근로시간수 평균)



산업내 전체 평균과의 격차에서도 제조업의 청년층이 2.5시간 휴일근로시간 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각각 2.2시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시간의 순으로 해당 산업 평균 휴일실근로시간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및 근로시간을 종합하면, 청년층은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산업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초과급여나 특별급여에 있어서도 임금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수의 경우 산업내 평균 근로일수나 시간수와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특정 산업에 있어서는 청년층의 근로일수나 시간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청년층의 경우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다고 판단될 수 있다.

물론 해당 직종에 있어서의 숙련도나 경력, 학력 등이 임금에 반영되어 있어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청년층 내에서의 임금과 근로시간의 격차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차이가 아닌 차별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특정 산업에 편중되고, 여건이 열악한 산업은 기피할 수밖에 없다.

### 3. 청년층의 4대 보험 및 상여금, 퇴직금, 노동조합 적용 현황

#### 1) 4대 보험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4대 보험 가입율을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4대 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으로 구분된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4대 보험 항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1) 고용보험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3.6%로 전체 평균인 73.9%와 거의 차이가 없다. 청년층 내에서의 격차를 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40.0%P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39.6%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8.1%P, 농업, 임업 및 어업 -5.9%P, 도매 및 소매업 -1.9%P의 순으로 청년층 평균에 밀리고 있다.

산업내 격차에서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16.8%P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4.6%P,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2%P의 순으로 산업내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청년층 고용규모가 10%를 넘는 직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에 취약한 산업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표 3-10> 산업별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단위 : %, %P)

|                       | 청년<br>고용보험<br>가입비율 | 전체<br>고용보험<br>가입비율 | 청년내<br>고용보험<br>가입비율<br>격차 <sup>a)</sup> | 산업내<br>고용보험<br>가입비율<br>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67.7%              | 67.3%              | -5.9%P                                  | 0.4%P                                   |
| 광업                    | 96.3%              | 90.3%              | 22.8%P                                  | 6.1%P                                   |
| 제조업                   | 91.9%              | 90.8%              | 18.3%P                                  | 1.1%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99.7%              | 99.5%              | 26.1%P                                  | 0.2%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7.2%              | 93.0%              | 23.6%P                                  | 4.2%P                                   |
| 건설업                   | 93.1%              | 83.6%              | 19.5%P                                  | 9.5%P                                   |
| 도매 및 소매업              | 71.6%              | 72.5%              | -1.9%P                                  | -0.9%P                                  |
| 운수업                   | 92.5%              | 86.6%              | 18.9%P                                  | 5.9%P                                   |
| 숙박 및 음식점업             | 33.9%              | 38.5%              | -39.6%P                                 | -4.6%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0.3%              | 93.5%              | 16.7%P                                  | -3.2%P                                  |
| 금융 및 보험업              | 88.9%              | 58.2%              | 15.4%P                                  | 30.7%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2.6%              | 65.4%              | 9.1%P                                   | 17.2%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95.2%              | 94.7%              | 21.6%P                                  | 0.5%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92.0%              | 85.6%              | 18.5%P                                  | 6.4%P                                   |
| 교육서비스업                | -                  | -                  | -                                       |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91.4%              | 87.1%              | 17.8%P                                  | 4.3%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33.6%              | 50.3%              | -40.0%P                                 | -16.8%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55.5%              | 57.6%              | -18.1%P                                 | -2.1%P                                  |
| 전체                    | 73.6%              | 73.9%              | 0.0%P                                   | -0.4%P                                  |

주) a) 청년내 고용보험 가입비율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고용보험 가입비율 평균-전체 산업의 청년 고용보험 가입비율 평균)

b) 산업내 고용보험 가입비율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고용보험 가입비율 평균-해당 산업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비율 평균)

## (2)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을 보면 청년층 근로자의 73.0%가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은 73.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3-11> 산업별 청년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단위 : %, %P)

|                       | 청년<br>건강보험<br>가입비율 | 전체<br>건강보험<br>가입비율 | 청년내<br>건강보험<br>가입비율<br>격차 <sup>a)</sup> | 산업내<br>건강보험<br>가입비율<br>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77.5%              | 72.8%              | 4.5%P                                   | 4.7%P                                   |
| 광업                    | 89.5%              | 91.8%              | 16.5%P                                  | -2.3%P                                  |
| 제조업                   | 95.7%              | 92.9%              | 22.7%P                                  | 2.7%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98.9%              | 99.4%              | 25.9%P                                  | -0.5%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7.4%              | 96.2%              | 24.4%P                                  | 1.3%P                                   |
| 건설업                   | 70.2%              | 58.3%              | -2.8%P                                  | 11.9%P                                  |
| 도매 및 소매업              | 69.2%              | 73.2%              | -3.9%P                                  | -4.0%P                                  |
| 운수업                   | 92.0%              | 90.3%              | 19.0%P                                  | 1.7%P                                   |
| 숙박 및 음식점업             | 30.1%              | 34.9%              | -42.9%P                                 | -4.8%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89.6%              | 94.6%              | 16.6%P                                  | -5.0%P                                  |
| 금융 및 보험업              | 88.4%              | 58.5%              | 15.4%P                                  | 29.9%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2.5%              | 82.4%              | 9.4%P                                   | 0.0%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94.6%              | 96.4%              | 21.6%P                                  | -1.8%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87.5%              | 87.7%              | 14.5%P                                  | -0.1%P                                  |
| 교육서비스업                | -                  | -                  | -                                       |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97.2%              | 91.8%              | 24.1%P                                  | 5.4%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31.9%              | 50.6%              | -41.2%P                                 | -18.8%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54.3%              | 61.3%              | -18.7%P                                 | -6.9%P                                  |
| 전체                    | 73.0%              | 73.7%              | 0.0%P                                   | -0.7%P                                  |

주) a) 청년내 건강보험 가입비율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건강보험 가입비율 평균-전체 산업의 청년 건강보험 가입비율 평균)

b) 산업내 건강보험 가입비율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건강보험 가입비율 평균-해당 산업의 전체 건강보험 가입비율 평균)

청년층내 격차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42.9%P로 청년층 평균과 비교해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41.2%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18.7%P, 도매 및 소매업 -3.9%P, 건설업 -2.8%P의 순으로 청년층 평균 건강보험 가입 비율에 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내 격차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18.8%P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6.9%P,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0%P, 숙박 및 음식점업 -4.8%P의 순으로 산업간 평균에 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청년층의 가입 비중은 71.6%로 전체 근로자의 가입비율인 6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층 내에서의 산업간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청년층 평균 가입비율에 크게 못미치는 29.3%로 나타나 -42.3%P 차이가 났으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는 -39.8%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7%P의 격차를 보였다.

해당 산업내 청년층의 격차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15.6%P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1%P, 숙박 및 음식점업 -3.3%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3-12> 산업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단위 : %, %P)

|                       | 청년<br>국민연금<br>가입비율 | 전체<br>국민연금<br>가입비율 | 청년내<br>국민연금<br>가입비율<br>격차 <sup>a)</sup> | 산업내<br>국민연금<br>가입비율<br>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71.6%              | 65.1%              | 0.0%P                                   | 6.5%P                                   |
| 광업                    | 89.3%              | 83.5%              | 17.7%P                                  | 5.9%P                                   |
| 제조업                   | 91.6%              | 88.8%              | 20.0%P                                  | 2.8%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98.9%              | 98.8%              | 27.3%P                                  | 0.2%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7.0%              | 88.5%              | 25.4%P                                  | 8.5%P                                   |
| 건설업                   | 69.4%              | 54.9%              | -2.2%P                                  | 14.5%P                                  |
| 도매 및 소매업              | 68.6%              | 70.8%              | -3.0%P                                  | -2.2%P                                  |
| 운수업                   | 91.8%              | 82.7%              | 20.2%P                                  | 9.1%P                                   |
| 숙박 및 음식점업             | 29.3%              | 32.6%              | -42.3%P                                 | -3.3%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89.5%              | 93.6%              | 17.9%P                                  | -4.1%P                                  |
| 금융 및 보험업              | 88.3%              | 58.1%              | 16.7%P                                  | 30.2%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2.3%              | 53.6%              | 10.7%P                                  | 28.7%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94.6%              | 93.2%              | 23.0%P                                  | 1.3%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87.5%              | 77.4%              | 15.9%P                                  | 10.1%P                                  |
| 교육서비스업                | -                  | -                  | -                                       |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94.6%              | 87.9%              | 23.0%P                                  | 6.7%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31.8%              | 47.4%              | -39.8%P                                 | -15.6%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53.9%              | 56.8%              | -17.7%P                                 | -2.9%P                                  |
| 전체                    | 71.6%              | 69.4%              | 0.0%P                                   | 2.2%P                                   |

주) a) 청년내 국민연금 가입비율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국민연금 가입비율 평균-전체 산업의 청년 국민연금 가입비율 평균)

b) 산업내 국민연금 가입비율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국민연금 가입비율 평균-해당 산업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비율 평균)

#### (4) 산재보험

산재 보험의 가입 비율에 있어서도 청년층의 가입비율은 80.2%로 전체 근로자 가입비율인 80.5%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13> 산업별 청년의 산재보험 가입 현황

(단위 : %, %P)

|                       | 청년<br>산재보험<br>가입비율 | 전체<br>산재보험<br>가입비율 | 청년내<br>산재보험<br>가입비율<br>격차 <sup>a)</sup> | 산업내<br>산재보험<br>가입비율<br>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78.0%              | 75.8%              | -2.3%P                                  | 2.2%P                                   |
| 광업                    | 98.4%              | 97.2%              | 18.1%P                                  | 1.2%P                                   |
| 제조업                   | 98.6%              | 96.3%              | 18.3%P                                  | 2.3%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00.0%             | 99.7%              | 19.8%P                                  | 0.3%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00.0%             | 98.6%              | 19.8%P                                  | 1.4%P                                   |
| 건설업                   | 96.9%              | 95.9%              | 16.6%P                                  | 1.0%P                                   |
| 도매 및 소매업              | 77.5%              | 77.0%              | -2.8%P                                  | 0.5%P                                   |
| 운수업                   | 95.7%              | 92.0%              | 15.5%P                                  | 3.7%P                                   |
| 숙박 및 음식점업             | 53.8%              | 50.1%              | -26.4%P                                 | 3.8%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7.3%              | 97.7%              | 17.0%P                                  | -0.5%P                                  |
| 금융 및 보험업              | 89.1%              | 58.8%              | 8.9%P                                   | 30.4%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2.8%              | 85.4%              | 2.5%P                                   | -2.6%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97.0%              | 97.8%              | 16.8%P                                  | -0.8%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96.4%              | 93.2%              | 16.1%P                                  | 3.2%P                                   |
| 교육서비스업                | -                  | -                  | -                                       |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97.2%              | 96.7%              | 16.9%P                                  | 0.5%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42.2%              | 59.9%              | -38.1%P                                 | -17.7%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62.7%              | 66.5%              | -17.5%P                                 | -3.8%P                                  |
| 전체                    | 80.2%              | 80.5%              | 0.0%P                                   | -0.3%P                                  |

주) a) 청년내 산재보험 가입비율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산재보험 가입비율 평균-전체 산업의 청년 산재보험 가입비율 평균)

b) 산업내 산재보험 가입비율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산재보험 가입비율 평균-해당 산업의 전체 산재보험 가입비율 평균)

청년층내 산재보험 가입 비율을 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38.1%P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26.4%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7.5%P의 순으로 청년층 평균 가입 비율과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내 격차를 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17.7%P의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8%P, 부동산업 및 임대업 -2.6%P의 해당 산업 평균과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4대 보험 가입 비율에서는 청년층과 전체 근로자와의 큰 격차를 보이지 않지만, 특정 산업 분야에서 청년층내, 산업군내 격차를 보이고 있어 청년층 고용에 취약한 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 2) 상여금, 퇴직금 적용 여부 및 노조가입 비율

### (1) 상여금

상여금 적용 여부나 퇴직금 적용 여부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표 3-14> 산업별 청년의 상여금 적용 현황

(단위 : %, %P)

|                       | 청년<br>상여금<br>적용비율 | 전체<br>상여금<br>적용비율 | 청년내<br>상여금<br>적용비율<br>격차 <sup>a)</sup> | 산업내<br>상여금<br>적용비율<br>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48.8%             | 54.7%             | -6.1%P                                 | -5.9%P                                 |
| 광업                    | 67.3%             | 76.3%             | 12.4%P                                 | -9.0%P                                 |
| 제조업                   | 81.0%             | 76.8%             | 26.1%P                                 | 4.2%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83.3%             | 94.9%             | 28.4%P                                 | -11.6%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73.7%             | 77.7%             | 18.8%P                                 | -4.0%P                                 |
| 건설업                   | 46.7%             | 36.4%             | -8.2%P                                 | 10.2%P                                 |
| 도매 및 소매업              | 49.0%             | 54.0%             | -5.9%P                                 | -5.0%P                                 |
| 운수업                   | 70.8%             | 72.4%             | 15.9%P                                 | -1.6%P                                 |
| 숙박 및 음식점업             | 16.4%             | 22.1%             | -38.4%P                                | -5.7%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3.2%             | 64.5%             | -1.7%P                                 | -11.3%P                                |
| 금융 및 보험업              | 78.6%             | 56.4%             | 23.7%P                                 | 22.2%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7.8%             | 38.9%             | -7.1%P                                 | 8.9%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68.9%             | 70.3%             | 14.0%P                                 | -1.4%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56.6%             | 52.4%             | 1.7%P                                  | 4.2%P                                  |
| 교육서비스업                | 29.1%             | 36.5%             | -25.8%P                                | -7.4%P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61.5%             | 54.9%             | 6.7%P                                  | 6.6%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19.6%             | 32.2%             | -35.3%P                                | -12.6%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34.2%             | 41.2%             | -20.7%P                                | -7.1%P                                 |
| 전체                    | 54.9%             | 56.1%             | 0.0%P                                  | -1.2%P                                 |

주) a) 청년내 상여금 적용비율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상여금 적용비율 평균-전체 산업의 청년 상여금 적용비율 평균) b) 산업내 상여금 적용비율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상여금 적용비율 평균-해당 산업의 전체 상여금 적용비율 평균)

청년층의 상여금 지급 비율은 54.9%로 전체 근로자 평균인 56.1%에 비해 낮지만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청년층 내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16.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19.6%, 교육 서비스업 2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내 다른 연령층과의 비교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12.6%P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은 -11.6%P,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3%P의 순으로 나타나 청년층 취업자의 차별이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퇴직금

퇴직금의 경우 청년층의 퇴직금 적용 비율은 71.3%로 오히려 전체 근로자 평균인 70.8%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상여금 적용 비율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청년층 내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26.9%, 숙박 및 음식점업 29.4%, 교육 서비스업 44.9% 등으로 청년층내 취약 직종은 그대로 유지 되었다.

또한 산업내 격차에서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17.5%P,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1.7%P,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2%P 등의 순으로 상여금 적용 비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표 3-15> 산업별 청년의 퇴직금 적용 현황

(단위 : %, %P)

|                       | 청년<br>퇴직금<br>적용비율 | 전체<br>퇴직금<br>적용비율 | 청년내<br>퇴직금<br>적용비율<br>격차 <sup>a)</sup> | 산업내<br>퇴직금<br>적용비율<br>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65.2%             | 64.2%             | -6.2%P                                 | 0.9%P                                  |
| 광업                    | 82.8%             | 87.3%             | 11.5%P                                 | -4.5%P                                 |
| 제조업                   | 91.1%             | 87.7%             | 19.8%P                                 | 3.4%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83.2%             | 94.9%             | 11.9%P                                 | -11.7%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0.6%             | 87.5%             | 19.3%P                                 | 3.1%P                                  |
| 건설업                   | 66.5%             | 52.7%             | -4.9%P                                 | 13.8%P                                 |
| 도매 및 소매업              | 64.5%             | 65.4%             | -6.9%P                                 | -0.9%P                                 |
| 운수업                   | 88.2%             | 84.5%             | 16.9%P                                 | 3.7%P                                  |
| 숙박 및 음식점업             | 29.4%             | 30.7%             | -41.9%P                                | -1.3%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80.3%             | 88.5%             | 8.9%P                                  | -8.2%P                                 |
| 금융 및 보험업              | 85.0%             | 57.3%             | 13.7%P                                 | 27.7%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73.4%             | 75.6%             | 2.0%P                                  | -2.2%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88.4%             | 88.9%             | 17.1%P                                 | -0.5%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87.5%             | 84.2%             | 16.1%P                                 | 3.3%P                                  |
| 교육서비스업                | 44.9%             | 43.1%             | -26.4%P                                | 1.8%P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89.1%             | 84.5%             | 17.7%P                                 | 4.6%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26.9%             | 44.5%             | -44.4%P                                | -17.5%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46.7%             | 54.5%             | -24.6%P                                | -7.8%P                                 |
| 전체                    | 71.3%             | 70.8%             | 0.0%P                                  | 0.6%P                                  |

주) a) 청년내 퇴직금 적용비율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퇴직금 적용비율 평균-전체 산업의 청년 퇴직금 적용비율 평균)

b) 산업내 퇴직금 적용비율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퇴직금 적용비율 평균-해당 산업의 전체 퇴직금 적용비율 평균)

### (3)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비율의 경우 노동조합은 있지만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및 노동조합이 없어서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미가입으로 처리하였다.

<표 3-16> 산업별 청년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

(단위 : %, %P)

|                       | 청년<br>노동조합<br>가입비율 | 전체<br>노동조합<br>가입비율 | 청년내<br>노동조합<br>가입비율<br>격차 <sup>a)</sup> | 산업내<br>노동조합<br>가입비율<br>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1.9%              | 27.6%              | 5.2%P                                   | -15.6%P                                 |
| 광업                    | 23.3%              | 29.1%              | 16.5%P                                  | -5.8%P                                  |
| 제조업                   | 11.3%              | 13.3%              | 4.5%P                                   | -2.1%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69.6%              | 70.1%              | 62.9%P                                  | -0.4%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0.1%              | 17.8%              | 3.3%P                                   | -7.7%P                                  |
| 건설업                   | 2.5%               | 2.2%               | -4.3%P                                  | 0.3%P                                   |
| 도매 및 소매업              | 2.4%               | 3.7%               | -4.4%P                                  | -1.3%P                                  |
| 운수업                   | 25.2%              | 41.9%              | 18.4%P                                  | -16.7%P                                 |
| 숙박 및 음식점업             | 1.4%               | 1.7%               | -5.4%P                                  | -0.3%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4.4%               | 15.3%              | -2.4%P                                  | -10.9%P                                 |
| 금융 및 보험업              | 26.9%              | 23.5%              | 20.2%P                                  | 3.5%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5%               | 4.8%               | -2.3%P                                  | -0.3%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5.9%               | 9.4%               | -0.9%P                                  | -3.5%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8%               | 8.2%               | -2.0%P                                  | -3.4%P                                  |
| 교육서비스업                | 1.1%               | 4.6%               | -5.7%P                                  | -3.4%P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5.9%               | 6.3%               | -0.9%P                                  | -0.4%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3.4%               | 7.9%               | -3.4%P                                  | -4.5%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4%               | 3.7%               | -5.4%P                                  | -2.3%P                                  |
| 전체                    | 6.8%               | 10.5%              | 0.0%P                                   | -3.7%P                                  |

주) a) 청년내 노동조합 가입비율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노동조합 가입비율 평균-전체 산업의 청년 노동조합 가입비율 평균)

b) 산업내 노동조합 가입비율 격차=(해당 산업의 청년 노동조합 가입비율 평균-해당 산업의 전체 노동조합 가입비율 평균)

청년층의 노동조합 가입율은 6.8%로 전체 근로자 가입율인 10.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내에서도 교육 서비스업이 1.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이 각각 1.4%로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내 격차를 보면 운수업이 -16.7%P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 임업 및 어업이 -15.6%P,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0.9%P의 순으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 4. 산업 및 기업규모별 청년 고용 현황

앞선 분석에서는 산업간 청년 고용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기업 규모간 격차를 산업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년 고용 현황을 살펴보자. 중소기업의 청년층 취업자수는 2,247,647명으로 대기업 청년층 취업자수 427,710명에 비해 약 5배 정도 많다. 즉, 청년층 취업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표 3-17>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 고용 현황

(단위 : 명, %)

|                       | 중소기업       |            | 대기업        |            | 중소기업<br>청년<br>고용율 <sup>a)</sup> | 대기업<br>청년<br>고용율 <sup>b)</sup> |
|-----------------------|------------|------------|------------|------------|---------------------------------|--------------------------------|
|                       | 청년<br>취업자수 | 전체<br>취업자수 | 청년<br>취업자수 | 전체<br>취업자수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2,921      | 26,334     | 90         | 882        | 11.1%                           | 10.2%                          |
| 광업                    | 534        | 11,079     | 159        | 3,184      | 4.8%                            | 5.0%                           |
| 제조업                   | 433,992    | 2,421,967  | 165,353    | 628,783    | 17.9%                           | 26.3%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2,872      | 35,002     | 1,965      | 19,526     | 8.2%                            | 10.1%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5,355      | 60,620     | 26         | 397        | 8.8%                            | 6.5%                           |
| 건설업                   | 80,800     | 976,596    | 8,983      | 56,550     | 8.3%                            | 15.9%                          |
| 도매 및 소매업              | 392,013    | 1,561,526  | 17,955     | 56,749     | 25.1%                           | 31.6%                          |
| 운수업                   | 49,919     | 520,187    | 19,416     | 97,446     | 9.6%                            | 19.9%                          |
| 숙박 및 음식점업             | 293,341    | 884,228    | 6,047      | 18,355     | 33.2%                           | 32.9%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00,404    | 316,657    | 20,404     | 93,384     | 31.7%                           | 21.8%                          |
| 금융 및 보험업              | 88,202     | 664,027    | 25,216     | 107,582    | 13.3%                           | 23.4%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22,645     | 334,020    | 1,404      | 11,376     | 6.8%                            | 12.3%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22,031    | 509,749    | 36,771     | 165,720    | 23.9%                           | 22.2%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11,946    | 583,442    | 38,621     | 147,256    | 19.2%                           | 26.2%                          |
| 교육서비스업                | 149,022    | 595,757    | 12,871     | 120,134    | 25.0%                           | 10.7%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16,670    | 793,529    | 66,589     | 173,726    | 27.3%                           | 38.3%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71,900     | 160,999    | 4,126      | 10,127     | 44.7%                           | 40.7%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03,080    | 522,183    | 1,714      | 7,804      | 19.7%                           | 22.0%                          |
| 전체                    | 2,247,647  | 10,977,902 | 427,710    | 1,718,981  | 20.5%                           | 24.9%                          |

주) a) 중소기업 청년고용율 = 중소기업 해당 산업의 청년 취업자 수/중소기업 해당 산업의 전체 취업자 수

b) 대기업 청년고용율 = 대기업 해당 산업의 청년 취업자 수/대기업 해당 산업의 전체 취업자 수

규모별 청년 고용율을 보면 중소기업의 전체 근로자 대비 청년 근로자의 비율은 20.5%이고, 대기업의 청년 고용율은 24.9%로 나타나 상대적인 고용율은 대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청년층 고용율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4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3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7.3%, 도매 및 소매업 25.1%, 교육 서비스업 25.0%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기업의 경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 40.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8.3%, 숙박 및 음식점업 32.9%, 도매 및 소매업 3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8>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의 정규직 현황

(단위 : %, %P)

|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정규직비율 | 대기업<br>청년층의<br>정규직비율 | 산업전체<br>정규직비율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정규직격차 <sup>가)</sup> | 대기업<br>청년층의<br>정규직격차 <sup>가)</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48.6%                 | 35.7%                | 58.3%         | -9.7%P                              | -22.6%P                            |
| 광업                    | 80.1%                 | 76.1%                | 86.4%         | -6.3%P                              | -10.3%P                            |
| 제조업                   | 83.8%                 | 93.1%                | 87.8%         | -3.9%P                              | 5.4%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73.8%                 | 84.0%                | 93.6%         | -19.8%P                             | -9.6%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84.8%                 | 100.0%               | 89.1%         | -4.3%P                              | 10.9%P                             |
| 건설업                   | 63.1%                 | 78.1%                | 53.2%         | 9.9%P                               | 24.9%P                             |
| 도매 및 소매업              | 60.6%                 | 69.7%                | 67.2%         | -6.6%P                              | 2.5%P                              |
| 운수업                   | 79.4%                 | 45.0%                | 81.7%         | -2.3%P                              | -36.7%P                            |
| 숙박 및 음식점업             | 21.6%                 | 51.0%                | 36.5%         | -14.9%P                             | 14.5%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67.6%                 | 63.5%                | 85.6%         | -18.0%P                             | -22.1%P                            |
| 금융 및 보험업              | 69.4%                 | 64.4%                | 51.7%         | 17.7%P                              | 12.7%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6.9%                 | 57.9%                | 55.6%         | 11.3%P                              | 2.3%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85.5%                 | 78.2%                | 90.5%         | -4.9%P                              | -12.3%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63.2%                 | 60.0%                | 70.3%         | -7.1%P                              | -10.3%P                            |
| 교육서비스업                | 42.7%                 | 20.1%                | 47.1%         | -4.5%P                              | -27.0%P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90.6%                 | 78.5%                | 80.0%         | 10.6%P                              | -1.5%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26.4%                 | 32.6%                | 41.6%         | -15.2%P                             | -9.1%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55.9%                 | 46.4%                | 70.1%         | -14.3%P                             | -23.7%P                            |
| 전체                    | 63.2%                 | 76.2%                | 70.1%         | -7.0%P                              | 6.1%P                              |

주) a) 중소기업 청년층의 정규직 격차 = 중소기업 청년층의 정규직 비율 - 산업전체 정규직 비율

b) 대기업 청년층의 정규직 격차 = 대기업 청년층의 정규직 비율 - 산업전체 정규직 비율

청년층 고용율만 가지고 판단해보았을 때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취업자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약 14.3%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 등은 10%p 이상 대기업 청년층 고용율이 높은 직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 안정성이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산업별 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중소기업의 청년층 정규직 비율은 63.2%, 대기업의 청년층 정규직 비율은 76.2%로 나타나 기업 규모간 정규직 비율은 약 13.0%p로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청년층의 정규직 비율을 해당 산업 전체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과 비교하여 보자. 산업 전체 정규직 비율은 70.1%로 나타나 중소기업 청년층의 정규직 비율인 63.2% 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반면 대기업의 정규직 비율인 76.2%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산업별 중소기업 청년층과 해당 산업의 정규직 비율 격차를 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19.8%p 격차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8.0%p,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15.2%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는 운수업이 -36.7%p로 해당 산업의 평균과 가장 큰 격차를 보였으며, 교육서비스업이 -27.0%p의 격차로 그 다음을 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가운데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해당 산업의 평균 정규직 비율보다 청년층의 정규직 비율이 높았으며, 대기업의 경우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청년층의 정규직 비율이 더 높았다.



## 5. 청년층의 산업 및 규모별 임금, 근로시간

고용의 질 측면에서 청년층의 임금 및 근로 시간을 산업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금의 경우 정액급여(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 및 초과급여, 특별급여(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로 구성이 되는데 합산해서 처리할 경우 임금 상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으로 파악한다.

근로 시간 또한 소정실근로일수, 휴일실근로일수 및 소정실근로시간수, 초과실근로시간수 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분화된 상태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임금

2011년 전체 근로자의 정액급여 평균은 198만원 임에 반해 중소기업 청년층의 정액급여 평균은 137만원으로 약 50만원의 격차가 있으며 대기업 청년층의 경우 185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에 13만원 차이가 났다.

중소기업 청년층 가운데 가장 높은 임금을 주는 곳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약 195만원의 정액급여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172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63만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청년층의 경우는 건설업이 30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 및 보험업 213만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1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 평균과 청년층의 정액급여 격차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162만원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23만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11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기업의 경우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32만

원, 금융 및 보험업 -887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83만원의 순으로 산업 평균과의 격차를 보인다.

<표 3-19>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정액급여 현황

(단위 : 천원)

|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정액급여 | 대기업<br>청년층의<br>정액급여 | 산업전체<br>정액급여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정액급여격차 | 대기업<br>청년층의<br>정액급여격차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381.3              | 1,650.7             | 2,015.0      | -633.7                 | -364.3                |
| 광업                    | 1,657.2              | 1,738.9             | 2,305.5      | -648.3                 | -566.6                |
| 제조업                   | 1,453.8              | 1,699.3             | 1,924.7      | -470.9                 | -225.4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757.8              | 2,057.6             | 3,376.2      | -1,618.4               | -1,318.6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579.8              | 2,052.0             | 2,013.6      | -433.8                 | 38.4                  |
| 건설업                   | 1,598.8              | 3,012.5             | 2,093.9      | -495.2                 | 918.6                 |
| 도매 및 소매업              | 1,315.7              | 1,951.9             | 1,780.6      | -464.9                 | 171.3                 |
| 운수업                   | 1,571.5              | 2,028.6             | 1,945.0      | -373.5                 | 83.6                  |
| 숙박 및 음식점업             | 814.7                | 1,349.4             | 1,109.3      | -294.6                 | 240.2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633.0              | 1,978.3             | 2,861.0      | -1,228.0               | -882.7                |
| 금융 및 보험업              | 1,948.8              | 2,126.8             | 3,013.4      | -1,064.6               | -886.7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473.2              | 1,812.7             | 1,611.8      | -138.6                 | 200.9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717.6              | 2,100.9             | 2,815.1      | -1,097.5               | -714.2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488.0              | 1,546.3             | 1,793.3      | -305.3                 | -246.9                |
| 교육서비스업                | 1,427.7              | 1,608.7             | 2,151.4      | -723.7                 | -542.7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444.9              | 1,999.2             | 1,795.5      | -350.6                 | 203.8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1,096.7              | 1,163.9             | 1,483.5      | -386.9                 | -319.7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239.4              | 1,752.3             | 1,546.1      | -306.7                 | 206.2                 |
| 전체                    | 1,374.6              | 1,847.8             | 1,979.3      | -604.7                 | -131.5                |

주) a) 중소기업 청년층의 정액급여 격차 = 중소기업 청년층의 정액급여 평균 - 산업전체 정액급여 평균

b) 대기업 청년층의 정액급여 격차 = 대기업 청년층의 정액급여 평균 - 산업전체 정액급여 평균

초과급여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층의 평균은 8.4만원으로 나타났고, 대기업 청년층의 평균은 22.0만원으로 나타나 전체근로자 평균인 12.4만원에 비해 중소기업은 적게 나타나고 대기업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내 청년층의 격차는 중소기업의 경우 광업이 -16.2만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13.7만원,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2만원의 순으로 산업내 평균과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청년층의 경우는 산업내 평균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청년층의 초과급여가 더 높은 산업이 많게 나타났다. 특히,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경우는 산업 평균에 비해 46.5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8만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은 11.4만원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0>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초과급여 현황

(단위 : 천원)

|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초과급여 | 대기업<br>청년층의<br>초과급여 | 산업전체<br>초과급여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초과급여격차 | 대기업<br>청년층의<br>초과급여격차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32.4                 | 6.6                 | 37.6         | -5.2                   | -30.9                 |
| 광업                    | 143.7                | 276.6               | 306.1        | -162.4                 | -29.5                 |
| 제조업                   | 251.7                | 387.4               | 307.9        | -56.2                  | 79.5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42.6                | 247.0               | 279.7        | -137.1                 | -32.7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4.7                 | 651.3               | 186.4        | -91.7                  | 464.9                 |
| 건설업                   | 65.8                 | 51.9                | 55.0         | 10.8                   | -3.1                  |
| 도매 및 소매업              | 50.2                 | 141.4               | 51.3         | -1.1                   | 90.0                  |
| 운수업                   | 98.7                 | 136.8               | 173.0        | -74.3                  | -36.2                 |
| 숙박 및 음식점업             | 21.8                 | 143.1               | 24.8         | -3.0                   | 118.3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8.3                 | 163.0               | 68.6         | -40.3                  | 94.3                  |
| 금융 및 보험업              | 38.1                 | 39.1                | 43.8         | -5.7                   | -4.7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4.0                 | 96.0                | 35.7         | 8.3                    | 60.3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49.7                 | 98.5                | 75.2         | -25.5                  | 23.3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00.0                | 64.1                | 119.0        | -19.0                  | -55.0                 |
| 교육서비스업                | 12.4                 | 7.3                 | 29.1         | -16.7                  | -21.8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59.1                 | 169.5               | 75.4         | -16.2                  | 94.1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28.2                 | 186.6               | 72.8         | -44.6                  | 113.8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7.5                 | 103.2               | 30.7         | -13.2                  | 72.6                  |
| 전체                    | 84.4                 | 219.8               | 124.0        | -39.7                  | 95.7                  |

특별 급여의 경우는 규모 및 산업내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소기업 청년층의 특별급여 평균은 107.5만원이고, 대기업 청년층의 특별급여 690.2만원에 비해 약 583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근로자 평균인 372.0만원에 264만원 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1>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특별급여 현황

(단위 : 천원)

|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특별급여 | 대기업<br>청년층의<br>특별급여 | 산업전체<br>특별급여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특별급여격차 | 대기업<br>청년층의<br>특별급여격차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254.2              | 1,493.6             | 4,453.2      | -3,199.0               | -2,959.6              |
| 광업                    | 1,234.6              | 3,307.1             | 4,424.2      | -3,189.7               | -1,117.2              |
| 제조업                   | 1,638.9              | 11,086.0            | 5,974.1      | -4,335.2               | 5,111.9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435.8              | 8,415.5             | 15,737.6     | -10,301.8              | -7,322.1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547.8              | 0.0                 | 2,814.8      | -1,267.0               | -2,814.8              |
| 건설업                   | 667.3                | 5,730.1             | 1,662.1      | -994.8                 | 4,068.0               |
| 도매 및 소매업              | 869.7                | 3,782.6             | 2,448.2      | -1,578.5               | 1,334.5               |
| 운수업                   | 1,935.8              | 7,651.9             | 4,331.7      | -2,395.9               | 3,320.2               |
| 숙박 및 음식점업             | 161.8                | 3,030.3             | 426.6        | -264.8                 | 2,603.7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70.4                | 1,976.9             | 5,073.0      | -4,102.6               | -3,096.1              |
| 금융 및 보험업              | 4,290.4              | 6,095.7             | 8,224.5      | -3,934.0               | -2,128.8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733.1                | 2,913.2             | 1,433.4      | -700.3                 | 1,479.7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396.0              | 5,475.5             | 5,009.3      | -3,613.3               | 466.2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553.7              | 998.4               | 2,659.1      | -1,105.5               | -1,660.7              |
| 교육서비스업                | 285.5                | 283.6               | 1,919.7      | -1,634.2               | -1,636.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904.9                | 5,319.5             | 2,367.7      | -1,462.8               | 2,951.9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271.0                | 3,847.5             | 1,456.0      | -1,185.0               | 2,391.4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420.5                | 2,243.0             | 1,667.4      | -1,246.9               | 575.7                 |
| 전체                    | 1,075.2              | 6,902.4             | 3,719.4      | -2,644.2               | 3,183.0               |

주) a) 중소기업 청년층의 특별급여 격차 = 중소기업 청년층의 특별급여 평균 - 산업전체 특별급여 평균

b) 대기업 청년층의 특별급여 격차 = 대기업 청년층의 특별급여 평균 - 산업전체 특별급여 평균

특히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층은 산업내 평균보다 -1,030.2만원의 큰 격차를 보였으며, 제조업 -433.5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10.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청년층의 경우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732.2만원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9.6만원, 농림, 임업 및 어업 -396.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 2)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정규 근로일수를 의미하는 소정 근로 일수의 경우는 중소기업 청년층이 대기업 청년층보다 0.2일 많은 20.8일로 나타났다. 산업전체 평균은 21.2일로 중소기업 청년 평균 보다 0.4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큰 격차는 나지 않는다.

중소기업 청년층의 해당 산업 평균과의 격차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2.24일로 청년층의 근로일수가 적게 나타났으며, 도매 및 소매업은 -0.94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0.76일의 차이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청년층의 소정근로일수가 더 많은 직종은 농업, 임업 및 어업(0.29일), 건설업(0.33일), 금융 및 보험업(0.05일), 부동산업 및 임대업(0.92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0.05일), 교육서비스업(0.63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69일) 이다.

<표 3-22>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소정실근로일수 현황

(단위 : 일)

|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소정<br>실근로일수 | 대기업<br>청년층의<br>소정<br>실근로일수 | 산업전체<br>소정<br>실근로일수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소정실근로<br>일수격차 <sup>a)</sup> | 대기업<br>청년층의<br>소정실근로<br>일수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20.7                        | 21.0                       | 20.4                | 0.29  | 0.59                                       |
| 광업                    | 21.8                        | 20.5                       | 21.9                | -0.18                                       | -1.46                                      |
| 제조업                   | 21.4                        | 20.6                       | 21.4                | -0.06                                       | -0.77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21.0                        | 21.1                       | 21.1                | -0.15                                       | 0.02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22.0                        | 20.4                       | 22.4                | -0.37                                       | -1.93                                      |
| 건설업                   | 19.8                        | 20.7                       | 19.5                | 0.33  | 1.23                                       |
| 도매 및 소매업              | 21.2                        | 20.9                       | 22.1                | -0.94                                       | -1.25                                      |
| 운수업                   | 21.4                        | 21.2                       | 21.4                | -0.05                                       | -0.25                                      |
| 숙박 및 음식점업             | 19.1                        | 21.2                       | 21.4                | -2.24                                       | -0.21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0.0                        | 20.8                       | 20.7                | -0.68                                       | 0.05                                       |
| 금융 및 보험업              | 21.0                        | 20.7                       | 20.9                | 0.05  | -0.17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21.3                        | 20.8                       | 20.3                | 0.92  | 0.46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21.0                        | 20.7                       | 20.9                | 0.05  | -0.24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20.2                        | 19.1                       | 20.8                | -0.64                                       | -1.72                                      |
| 교육서비스업                | 19.9                        | 19.1                       | 19.3                | 0.63  | -0.18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2.7                        | 21.1                       | 22.0                | 0.69  | -0.90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20.5                        | 17.2                       | 20.9                | -0.40                                       | -3.67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21.4                        | 20.6                       | 22.1                | -0.76                                       | -1.51                                      |
| 전체                    | 20.8                        | 20.6                       | 21.2                | -0.32                                       | -0.60                                      |

주) a) 중소기업 청년층의 소정실근로일수 격차 = 중소기업 청년층의 소정실근로일수 평균 - 산업전체 소정실근로일수 평균

b) 대기업 청년층의 소정실근로일수 격차 = 대기업 청년층의 소정실근로일수 평균 - 산업전체 소정실근로일수 평균

<표 3-23>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휴일실근로일수 현황

(단위 : 일)

|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휴일<br>실근로일수 | 대기업<br>청년층의<br>휴일<br>실근로일수 | 산업전체<br>휴일<br>실근로일수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휴일실근로<br>일수격차 <sup>a)</sup> | 대기업<br>청년층의<br>휴일실근로<br>일수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0.20                        | 0.19                       | 0.24                | -0.04                                       | -0.04                                      |
| 광업                    | 0.87                        | 0.48                       | 0.94                | -0.06                                       | -0.46                                      |
| 제조업                   | 1.07                        | 1.93                       | 1.16                | -0.09                                       | 0.78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0.31                        | 0.45                       | 0.38                | -0.08                                       | 0.06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0.44                        | 5.00                       | 0.59                | -0.15                                       | 4.41                                       |
| 건설업                   | 0.37                        | 0.26                       | 0.24                | 0.13  | 0.02                                       |
| 도매 및 소매업              | 0.21                        | 0.42                       | 0.18                | 0.03  | 0.24                                       |
| 운수업                   | 0.48                        | 0.16                       | 0.50                | -0.02                                       | -0.35                                      |
| 숙박 및 음식점업             | 0.07                        | 0.65                       | 0.09                | -0.02                                       | 0.55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0.12                        | 0.92                       | 0.30                | -0.18                                       | 0.62                                       |
| 금융 및 보험업              | 0.04                        | 0.04                       | 0.05                | -0.01                                       | -0.01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0.20                        | 0.10                       | 0.10                | 0.10  | 0.01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0.26                        | 0.39                       | 0.27                | -0.02                                       | 0.12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0.49                        | 0.32                       | 0.48                | 0.01  | -0.16                                      |
| 교육서비스업                | 0.03                        | 0.02                       | 0.04                | -0.01                                       | -0.02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0.26                        | 0.57                       | 0.27                | -0.01                                       | 0.31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0.15                        | 1.20                       | 0.32                | -0.17                                       | 0.87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0.09                        | 0.28                       | 0.12                | -0.03                                       | 0.16                                       |
| 전체                    | 0.36                        | 1.00                       | 0.45                | -0.09                                       | 0.55                                       |

주) a) 중소기업 청년층의 휴일실근로일수 격차 = 중소기업 청년층의 휴일실근로일수 평균 - 산업전체 휴일실근로일수 평균

b) 대기업 청년층의 휴일실근로일수 격차 = 대기업 청년층의 휴일실근로일수 평균 - 산업전체 휴일실근로일수 평균

대기업 청년층의 경우는 대부분 산업전체 평균 소정근로일수보다 적게 나타났고, 더 높은 직종은 농업, 임업 및 어업(0.59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0.02일), 건설업(1.23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0.05일), 부동산업 및 임대업(0.46일) 이다.

하지만 소정 근로일수의 경우는 대부분의 셀에서 1일 이내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휴일 실근로일수의 경우는 대기업을 청년층이 가장 높은 1.0일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 청년층의 경우는 0.36일로 나타났다. 산업 전체의 휴일 실근로일수 평균은 0.45일로 중소기업 청년층 보다는 높고 대기업 청년층 보다는 낮은 분포를 보였다.

<표 3-24>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소정실근로시간수 현황

(단위 : 시간)

|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소정<br>실근로시간수 | 대기업<br>청년층의<br>소정<br>실근로시간수 | 산업전체<br>소정<br>실근로시간수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소정실근로<br>시간수격차 <sup>a)</sup> | 대기업<br>청년층의<br>소정실근로<br>시간수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64.1                        | 168.0                       | 162.36               | 1.77   | 5.64  |
| 광업                    | 176.1                        | 162.5                       | 174.70               | 1.44   | -12.17                                      |
| 제조업                   | 171.4                        | 165.6                       | 171.55               | -0.20  | -5.96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69.5                        | 169.8                       | 170.33               | -0.79  | -0.57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74.8                        | 163.6                       | 177.25               | -2.48  | -13.70                                      |
| 건설업                   | 158.9                        | 166.1                       | 157.00               | 1.90   | 9.08  |
| 도매 및 소매업              | 170.7                        | 169.4                       | 175.33               | -4.59  | -5.93                                       |
| 운수업                   | 170.9                        | 169.5                       | 171.38               | -0.51  | -1.85                                       |
| 숙박 및 음식점업             | 143.0                        | 170.0                       | 173.71               | -30.72                                       | -3.70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54.7                        | 165.9                       | 164.35               | -9.67  | 1.52  |
| 금융 및 보험업              | 168.2                        | 165.1                       | 167.25               | 0.95   | -2.12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73.9                        | 169.9                       | 199.23               | -25.31                                       | -29.34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67.5                        | 165.7                       | 167.37               | 0.18   | -1.64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62.9                        | 152.7                       | 166.13               | -3.23  | -13.41                                      |
| 교육서비스업                | 146.7                        | 147.1                       | 141.79               | 4.87   | 5.3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80.3                        | 169.0                       | 170.75               | 9.50   | -1.79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155.7                        | 136.7                       | 161.56               | -5.81  | -24.87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72.7                        | 164.9                       | 173.89               | -1.15  | -8.97                                       |
| 전체                    | 164.4                        | 164.6                       | 169.00               | -4.58  | -4.44                                       |

주) a) 중소기업 청년층의 소정실근로시간수 격차 = 중소기업 청년층의 소정실근로시간수 평균 - 산업전체 소정실근로시간수 평균

b) 대기업 청년층의 소정실근로시간수 격차 = 대기업 청년층의 소정실근로시간수 평균 - 산업전체 소정실근로시간수 평균



청년층의 휴일 실근로일수가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업으로 1.07일로 나타났다. 이어서 광업 0.87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0.49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5>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휴일실근로시간수 현황

(단위 : 시간)

|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휴일<br>실근로시간수 | 대기업<br>청년층의<br>휴일<br>실근로시간수 | 산업전체<br>휴일<br>실근로시간수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휴일실근로<br>시간수격차 <sup>주)</sup> | 대기업<br>청년층의<br>휴일실근로<br>시간수격차 <sup>주)</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3.80                         | 2.14                        | 3.57                 | 0.23   | -1.43                                       |
| 광업                    | 14.42                        | 31.28                       | 22.78                | -8.36  | 8.49  |
| 제조업                   | 29.86                        | 30.15                       | 27.45                | 2.41   | 2.69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2.28                        | 15.81                       | 14.41                | -2.13  | 1.40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32                         | 40.33                       | 15.29                | -5.97  | 25.04                                       |
| 건설업                   | 6.67                         | 3.35                        | 4.18                 | 2.49   | -0.83                                       |
| 도매 및 소매업              | 5.52                         | 13.35                       | 4.79                 | 0.73   | 8.56  |
| 운수업                   | 10.46                        | 8.64                        | 14.20                | -3.74  | -5.55                                       |
| 숙박 및 음식점업             | 2.75                         | 15.79                       | 2.75                 | 0.00   | 13.04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84                         | 16.98                       | 5.36                 | -2.52  | 11.61                                       |
| 금융 및 보험업              | 3.24                         | 3.23                        | 2.38                 | 0.86   | 0.85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48                         | 8.83                        | 2.58                 | 1.90   | 6.25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4.82                         | 5.83                        | 5.24                 | -0.42  | 0.59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9.08                         | 7.14                        | 10.40                | -1.32  | -3.26                                       |
| 교육서비스업                | 1.15                         | 0.72                        | 2.59                 | -1.45  | -1.87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5.53                         | 11.54                       | 5.94                 | -0.41  | 5.60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3.09                         | 16.12                       | 6.14                 | -3.06  | 9.98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80                         | 8.78                        | 2.59                 | -0.79  | 6.19  |
| 전체                    | 9.43                         | 17.17                       | 10.72                | -1.30  | 6.45  |

주) a) 중소기업 청년층의 휴일실근로시간수 격차 = 중소기업 청년층의 휴일실근로시간수 평균 - 산업전체 휴일실근로시간수 평균

b) 대기업 청년층의 휴일실근로시간수 격차 = 대기업 청년층의 휴일실근로시간수 평균 - 산업전체 휴일실근로시간수 평균

대기업의 경우 청년층의 휴일 실근로일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보건업의 경우 5.00일로 다른 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휴일 실근로일수를 보였으며, 제조업 1.93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0일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정 실근로시간수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체 전체 평균이 169시간인 반면 중소기업 청년층은 164.4시간, 대기업 청년층은 164.6시간으로 청년층의 근로시간이 다소 적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중소기업 청년층의 산업내 격차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30.7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25.3시간으로 그 다음으로 짧게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는 9.5시간 더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서비스업은 4.9시간 소정 실근로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청년층 에서는 건설업 9.1시간, 농업, 임업 및 어업 5.6시간, 교육서비스업 5.3시간 해당 산업 평균에 비해 더 많은 근로시간을 보인다.

휴일 실근로시간수의 경우는 중소기업 청년층의 경우 9.4시간, 대기업 청년층의 경우 17.2시간으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 전체 평균이 10.7 시간임을 감안하면 대기업 청년층의 휴일 실근로시간수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휴일 실근로시간수가 높은 상위 5개 직종을 보면 중소기업 청년층의 경우 광업(14.4시간), 제조업(29.9시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2.3시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9.3시간), 운수업(10.5시간)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청년층의 경우는 광업(31.3시간), 제조업(30.2시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40.3시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7.0시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16.2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업 청년층의 경우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수가 중소기업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전체 근로자 평균에 비해서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탈 유인을 억제하고 있다. 즉, 업무 강도를 근로 일수나 시간수로 가정하였을 때,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는 업무 강도 보다는 임금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6. 청년층의 산업 및 규모별 4대 보험, 상여금, 퇴직금, 노동조합 적용 현황

### 1) 4대 보험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4대 보험 가입율을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4대 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으로 구분된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4대 보험 항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앞선 산업별 분석에서는 산업 전체의 4대 보험 가입율이 청년층의 가입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규모별로 청년층의 4대 보험 가입율을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된다.

####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중소기업 청년층 근로자의 70.1%가 가입되었고, 대기업 청년층의 91.6%가 가입되어 그 격차가 21.5%p로 나타나 중소기업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은 대기업 청년층과의 격차가 50%P가 넘어 산업 내에서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과 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도 중소기업 청년층의 평균 가입율보다 낮고 대기업 청년층과의 격차도 크게 벌어져 있다.

<표 3-26>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단위 : %, %P)

|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고용보험<br>가입율 | 대기업<br>청년층의<br>고용보험<br>가입율 | 산업전체<br>고용보험<br>가입율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고용보험<br>가입율격차 <sup>a)</sup> | 대기업<br>청년층의<br>고용보험<br>가입율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66.7%                       | 100.0%                     | 67.3%               | -0.6%P                                      | 32.7%P                                     |
| 광업                    | 95.5%                       | 99.2%                      | 90.3%               | 5.2%P                                       | 8.9%P                                      |
| 제조업                   | 88.8%                       | 99.8%                      | 90.8%               | -2.0%P                                      | 9.0%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99.4%                       | 100.0%                     | 99.5%               | 0.0%P                                       | 0.5%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7.2%                       | 100.0%                     | 93.0%               | 4.2%P                                       | 7.0%P                                      |
| 건설업                   | 92.3%                       | 100.0%                     | 83.6%               | 8.8%P                                       | 16.4%P                                     |
| 도매 및 소매업              | 70.4%                       | 98.1%                      | 72.5%               | -2.1%P                                      | 25.6%P                                     |
| 운수업                   | 89.6%                       | 99.9%                      | 86.6%               | 3.0%P                                       | 13.3%P                                     |
| 숙박 및 음식점업             | 32.6%                       | 98.3%                      | 38.5%               | -5.9%P                                      | 59.8%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88.5%                       | 99.4%                      | 93.5%               | -5.1%P                                      | 5.8%P                                      |
| 금융 및 보험업              | 85.8%                       | 99.8%                      | 58.2%               | 27.6%P                                      | 41.7%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1.6%                       | 99.8%                      | 65.4%               | 16.2%P                                      | 34.4%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94.0%                       | 99.1%                      | 94.7%               | -0.7%P                                      | 4.5%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93.3%                       | 88.5%                      | 85.6%               | 7.6%P                                       | 2.9%P                                      |
| 교육서비스업                | -                           | -                          | -                   | -   |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96.4%                       | 75.1%                      | 87.1%               | 9.3%P                                       | -12.0%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30.9%                       | 80.6%                      | 50.3%               | -19.5%P                                     | 30.2%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54.8%                       | 100.0%                     | 57.6%               | -2.9%P                                      | 42.4%P                                     |
| 전체                    | 70.1%                       | 91.6%                      | 73.9%               | -3.8%P                                      | 17.7%P                                     |

주) a) 중소기업 청년층의 고용보험가입 격차 = 중소기업 청년층의 고용보험가입 평균 - 산업전체 고용보험가입 평균

b) 대기업 청년층의 고용보험가입 격차 = 대기업 청년층의 고용보험가입 평균 - 산업전체 고용보험 가입 평균

##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가입격차는 고용보험 가입격차 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중소기업 청년층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68.8%로 대기업 청년층 가입율 95.0%에 비해 약 26.2%p 차이가 난다.

산업별 기업규모간 격차도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연가관련서비스업은 대기업 청년층과의 격차가 50%p를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비정규직 문제와 연결지을 수 있는데, 위의 산업의 경우 각각 중소기업 청년층의 정규직 비율이 21.6%, 26.4%로 낮게 나타나 이러한 특성이 4대 보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는 해당 산업의 정규직 비율이 51.0%, 32.6%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비중이 높은 것은 비정규직 청년층에게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이러한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표 3-27>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단위 : %, %P)

|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건강보험<br>가입율 | 대기업<br>청년층의<br>건강보험<br>가입율 | 산업전체<br>건강보험<br>가입율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건강보험<br>가입율격차 <sup>가)</sup> | 대기업<br>청년층의<br>건강보험<br>가입율격차 <sup>가)</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76.8%                       | 100.0%                     | 72.8%               | 4.0%P                                       | 27.2%P                                     |
| 광업                    | 86.4%                       | 100.0%                     | 91.8%               | -5.4%P                                      | 8.2%P                                      |
| 제조업                   | 94.2%                       | 99.5%                      | 92.9%               | 1.3%P                                       | 6.5%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99.1%                       | 98.7%                      | 99.4%               | -0.4%P                                      | -0.7%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7.4%                       | 100.0%                     | 96.2%               | 1.2%P                                       | 3.8%P                                      |
| 건설업                   | 66.9%                       | 100.0%                     | 58.3%               | 8.6%P                                       | 41.6%P                                     |
| 도매 및 소매업              | 67.9%                       | 96.9%                      | 73.2%               | -5.3%P                                      | 23.8%P                                     |
| 운수업                   | 89.0%                       | 99.9%                      | 90.3%               | -1.3%P                                      | 9.6%P                                      |
| 숙박 및 음식점업             | 28.7%                       | 98.0%                      | 34.9%               | -6.2%P                                      | 63.1%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87.6%                       | 99.2%                      | 94.6%               | -7.0%P                                      | 4.6%P                                      |
| 금융 및 보험업              | 85.6%                       | 98.1%                      | 58.5%               | 27.1%P                                      | 39.7%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1.4%                       | 100.0%                     | 82.4%               | -1.1%P                                      | 17.6%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93.5%                       | 98.5%                      | 96.4%               | -3.0%P                                      | 2.0%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87.2%                       | 88.5%                      | 87.7%               | -0.5%P                                      | 0.8%P                                      |
| 교육서비스업                | -                           | -                          | 0.0%                | -   |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96.6%                       | 99.1%                      | 91.8%               | 4.8%P                                       | 7.3%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29.1%                       | 80.6%                      | 50.6%               | -21.5%P                                     | 30.0%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53.6%                       | 100.0%                     | 61.3%               | -7.7%P                                      | 38.7%P                                     |
| 전체                    | 68.8%                       | 95.0%                      | 73.7%               | -4.8%P                                      | 21.3%P                                     |

주) a) 중소기업 청년층의 건강보험가입 격차 = 중소기업 청년층의 건강보험가입 평균 - 산업전체 건강보험가입 평균

b) 대기업 청년층의 건강보험가입 격차 = 대기업 청년층의 건강보험가입 평균 - 산업전체 건강보험가입 평균

###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층의 가입율은 67.5%로 나타났고, 대기업 청년층의 가입율은 93.1%로 나타나 약 25.6%P 격차를 보였다.

국민연금 가입율에 있어서도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산업 및 규모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단위 : %, %P)

|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국민연금<br>가입율 | 대기업<br>청년층의<br>국민연금<br>가입율 | 산업전체<br>국민연금<br>가입율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국민연금<br>가입율격차 <sup>㉠</sup> | 대기업<br>청년층의<br>국민연금<br>가입율격차 <sup>㉡</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70.8%                       | 100.0%                     | 65.1%               | 5.7%P                                      | 34.9%P                                    |
| 광업                    | 86.4%                       | 99.2%                      | 83.5%               | 2.9%P                                      | 15.7%P                                    |
| 제조업                   | 88.8%                       | 99.0%                      | 88.8%               | 0.0%P                                      | 10.2%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99.1%                       | 98.7%                      | 98.8%               | 0.3%P                                      | 0.0%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7.0%                       | 100.0%                     | 88.5%               | 8.5%P                                      | 11.5%P                                    |
| 건설업                   | 66.0%                       | 100.0%                     | 54.9%               | 11.1%P                                     | 45.1%P                                    |
| 도매 및 소매업              | 67.3%                       | 96.9%                      | 70.8%               | -3.5%P                                     | 26.1%P                                    |
| 운수업                   | 88.7%                       | 99.8%                      | 82.7%               | 6.0%P                                      | 17.1%P                                    |
| 숙박 및 음식점업             | 27.9%                       | 98.2%                      | 32.6%               | -4.7%P                                     | 65.6%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87.5%                       | 99.2%                      | 93.6%               | -6.1%P                                     | 5.6%P                                     |
| 금융 및 보험업              | 85.4%                       | 98.1%                      | 58.1%               | 27.4%P                                     | 40.1%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1.2%                       | 100.0%                     | 53.6%               | 27.6%P                                     | 46.4%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93.4%                       | 98.4%                      | 93.2%               | 0.2%P                                      | 5.2%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87.1%                       | 88.5%                      | 77.4%               | 9.8%P                                      | 11.2%P                                    |
| 교육서비스업                | -                           | -                          | -                   | -  |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96.4%                       | 88.5%                      | 87.9%               | 8.6%P                                      | 0.6%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29.0%                       | 80.6%                      | 47.4%               | -18.4%P                                    | 33.2%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53.2%                       | 100.0%                     | 56.8%               | -3.6%P                                     | 43.2%P                                    |
| 전체                    | 67.5%                       | 93.1%                      | 69.4%               | -1.9%P                                     | 23.8%P                                    |

주) a) 중소기업 청년층의 국민연금가입 격차 = 중소기업 청년층의 국민연금가입 평균 - 산업전체 국민연금가입 평균

b) 대기업 청년층의 국민연금가입 격차 = 대기업 청년층의 국민연금가입 평균 - 산업전체 국민연금가입 평균

####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4대보험의 다른 보험들에 비해 격차는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 중소기업 청년층의 산재보험 가입율은 77.2%로 대기업 청년층의 가입율 96.1%에 비해 18.9%p 격차를 보인다.

<표 3-29>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의 산재보험 가입 현황

(단위 : %, %P)

|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산재보험<br>가입율 | 대기업<br>청년층의<br>산재보험<br>가입율 | 산업전체<br>산재보험<br>가입율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산재보험<br>가입율격차 <sup>a)</sup> | 대기업<br>청년층의<br>산재보험<br>가입율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77.3%                       | 100.0%                     | 75.8%               | 1.5%p                                       | 24.2%p                                     |
| 광업                    | 97.9%                       | 100.0%                     | 97.2%               | 0.7%p                                       | 2.8%p                                      |
| 제조업                   | 98.0%                       | 100.0%                     | 96.3%               | 1.7%p                                       | 3.7%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00.0%                      | 100.0%                     | 99.7%               | 0.3%p                                       | 0.3%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00.0%                      | 100.0%                     | 98.6%               | 1.4%p                                       | 1.4%p                                      |
| 건설업                   | 96.5%                       | 100.0%                     | 95.9%               | 0.6%p                                       | 4.1%p                                      |
| 도매 및 소매업              | 76.5%                       | 98.8%                      | 77.0%               | -0.5%p                                      | 21.8%p                                     |
| 운수업                   | 94.1%                       | 100.0%                     | 92.0%               | 2.1%p                                       | 8.0%p                                      |
| 숙박 및 음식점업             | 52.9%                       | 99.2%                      | 50.1%               | 2.8%p                                       | 49.1%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6.7%                       | 99.9%                      | 97.7%               | -1.0%p                                      | 2.1%p                                      |
| 금융 및 보험업              | 86.0%                       | 100.0%                     | 58.8%               | 27.3%p                                      | 41.2%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1.7%                       | 100.0%                     | 85.4%               | -3.7%p                                      | 14.6%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96.2%                       | 99.8%                      | 97.8%               | -1.6%p                                      | 2.0%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95.1%                       | 100.0%                     | 93.2%               | 2.0%p                                       | 6.8%p                                      |
| 교육서비스업                | -                           | -                          | 0.0%                | -   |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97.8%                       | 95.1%                      | 96.7%               | 1.1%p                                       | -1.6%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38.9%                       | 99.4%                      | 59.9%               | -21.0%p                                     | 39.5%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62.1%                       | 100.0%                     | 66.5%               | -4.4%p                                      | 33.5%p                                     |
| 전체                    | 77.2%                       | 96.1%                      | 80.5%               | -3.3%p                                      | 15.6%p                                     |

주) a) 중소기업 청년층의 산재보험가입 격차 = 중소기업 청년층의 산재보험가입 평균 - 산업전체 산재보험가입 평균

b) 대기업 청년층의 산재보험가입 격차 = 대기업 청년층의 산재보험가입 평균 - 산업전체 산재보험가입 평균



그러나 산업별로 보면 여전히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4대 보험 가입 비율에서는 청년층과 전체 근로자와의 큰 격차를 보이진 않지만, 중소기업 청년층과 대기업 청년층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 청년층의 취업에 기피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 2) 상여금, 퇴직금 적용 여부 및 노조가입 비율

### (1) 상여금

상여금 적용 여부나 퇴직금 적용 여부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층의 상여금 적용 비율은 49.4%로 대기업 청년층 상여금 적용 비중인 84.3%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4대 보험 적용비율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30>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의 상여금 적용 현황

(단위 : %, %P)

|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상여금<br>적용율 | 대기업<br>청년층의<br>상여금<br>적용율 | 산업전체<br>상여금<br>적용율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상여금<br>적용율격차 <sup>a)</sup> | 대기업<br>청년층의<br>상여금<br>적용율격차 <sup>b)</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47.2%                      | 100.0%                    | 54.7%              | -7.5%P                                     | 45.3%P                                    |
| 광업                    | 64.7%                      | 76.1%                     | 76.3%              | -11.6%P                                    | -0.1%P                                    |
| 제조업                   | 74.6%                      | 97.7%                     | 76.8%              | -2.2%P                                     | 20.9%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80.7%                      | 87.0%                     | 94.9%              | -14.2%P                                    | -7.9%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74.1%                      | -                         | 77.7%              | -3.7%P                                     | -   |
| 건설업                   | 41.9%                      | 89.9%                     | 36.4%              | 5.4%P                                      | 53.5%P                                    |
| 도매 및 소매업              | 47.6%                      | 79.5%                     | 54.0%              | -6.4%P                                     | 25.5%P                                    |
| 운수업                   | 61.4%                      | 94.7%                     | 72.4%              | -11.0%P                                    | 22.3%P                                    |
| 숙박 및 음식점업             | 15.5%                      | 61.5%                     | 22.1%              | -6.6%P                                     | 39.4%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49.2%                      | 72.7%                     | 64.5%              | -15.3%P                                    | 8.2%P                                     |
| 금융 및 보험업              | 75.3%                      | 90.3%                     | 56.4%              | 18.9%P                                     | 33.9%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5.4%                      | 86.5%                     | 38.9%              | 6.5%P                                      | 47.6%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64.2%                      | 84.5%                     | 70.3%              | -6.1%P                                     | 14.2%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57.7%                      | 53.2%                     | 52.4%              | 5.3%P                                      | 0.8%P                                     |
| 교육서비스업                | 29.2%                      | 28.5%                     | 36.5%              | -7.3%P                                     | -8.0%P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55.1%                      | 82.6%                     | 54.9%              | 0.1%P                                      | 27.6%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17.3%                      | 59.8%                     | 32.2%              | -14.9%P                                    | 27.6%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33.6%                      | 66.5%                     | 41.2%              | -7.6%P                                     | 25.2%P                                    |
| 전체                    | 49.3%                      | 84.3%                     | 56.1%              | -6.8%P                                     | 28.2%P                                    |

주) a) 중소기업 청년층의 상여금적용 격차 = 중소기업 청년층의 상여금적용 평균 - 산업전체 상여금적용 평균

b) 대기업 청년층의 상여금적용 격차 = 대기업 청년층의 상여금적용 평균 - 산업전체 상여금적용 평균

## (2) 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도 중소기업 청년층의 경우 67.0%인 반면 대기업 청년층의 경우 94.1%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내 격차도 4대 보험 적용율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31>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의 퇴직금 적용 현황

(단위 : %, %P)

|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퇴직금<br>적용율 | 대기업<br>청년층의<br>퇴직금<br>적용율 | 산업전체<br>퇴직금<br>적용율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퇴직금<br>적용율격차 <sup>주)</sup> | 대기업<br>청년층의<br>퇴직금<br>적용율격차 <sup>주)</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64.1%                      | 100.0%                    | 64.2%              | -0.1%P                                     | 35.8%P                                    |
| 광업                    | 77.7%                      | 100.0%                    | 87.3%              | -9.6%P                                     | 12.7%P                                    |
| 제조업                   | 88.4%                      | 98.2%                     | 87.7%              | 0.7%P                                      | 10.5%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83.2%                      | 83.2%                     | 94.9%              | -11.8%P                                    | -11.7%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0.6%                      | 100.0%                    | 87.5%              | 3.1%P                                      | 12.5%P                                    |
| 건설업                   | 62.7%                      | 100.0%                    | 52.7%              | 10.1%P                                     | 47.3%P                                    |
| 도매 및 소매업              | 63.0%                      | 97.1%                     | 65.4%              | -2.4%P                                     | 31.7%P                                    |
| 운수업                   | 83.7%                      | 99.9%                     | 84.5%              | -0.8%P                                     | 15.4%P                                    |
| 숙박 및 음식점업             | 28.4%                      | 79.8%                     | 30.7%              | -2.3%P                                     | 49.1%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77.3%                      | 94.7%                     | 88.5%              | -11.1%P                                    | 6.2%P                                     |
| 금융 및 보험업              | 82.5%                      | 93.7%                     | 57.3%              | 25.2%P                                     | 36.4%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73.0%                      | 79.9%                     | 75.6%              | -2.6%P                                     | 4.3%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86.3%                      | 95.7%                     | 88.9%              | -2.7%P                                     | 6.8%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83.1%                      | 100.0%                    | 84.2%              | -1.0%P                                     | 15.8%P                                    |
| 교육서비스업                | 43.9%                      | 56.4%                     | 43.1%              | 0.8%P                                      | 13.3%P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89.5%                      | 87.7%                     | 84.5%              | 5.0%P                                      | 3.3%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25.0%                      | 59.8%                     | 44.5%              | -19.4%P                                    | 15.3%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45.8%                      | 99.3%                     | 54.5%              | -8.7%P                                     | 44.9%P                                    |
| 전체                    | 67.0%                      | 94.1%                     | 70.8%              | -3.8%P                                     | 23.4%P                                    |

주) a) 중소기업 청년층의 퇴직금적용 격차 = 중소기업 청년층의 퇴직금적용 평균 - 산업전체 퇴직금적용 평균

b) 대기업 청년층의 퇴직금적용 격차 = 대기업 청년층의 퇴직금적용 평균 - 산업전체 퇴직금적용 평균

### (3)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중소기업 청년층의 경우 3.5%로 나타나 대기업 청년층의 가입 비율인 24.3%에 비해 1/7 수준이며, 전체 근로자 평균인 10.5%의 1/3 수준이다.

<표 3-32>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

(단위 : %, %P)

|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노동조합<br>적용율 | 대기업<br>청년층의<br>노동조합<br>적용율 | 산업전체<br>노동조합<br>적용율 | 중소기업<br>청년층의<br>노동조합<br>적용율격차 <sup>㉞</sup> | 대기업<br>청년층의<br>노동조합<br>적용율격차 <sup>㉞</sup>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1.2%                       | 35.7%                      | 27.6%               | -16.4%P                                    | 8.1%P                                     |
| 광업                    | 7.6%                        | 76.1%                      | 29.1%               | -21.5%P                                    | 47.1%P                                    |
| 제조업                   | 3.7%                        | 31.1%                      | 13.3%               | -9.6%P                                     | 17.8%P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7.6%                       | 87.2%                      | 70.1%               | -12.5%P                                    | 17.1%P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6%                        | 100.0%                     | 17.8%               | -8.2%P                                     | 82.2%P                                    |
| 건설업                   | 1.2%                        | 14.8%                      | 2.2%                | -1.0%P                                     | 12.6%P                                    |
| 도매 및 소매업              | 2.0%                        | 10.8%                      | 3.7%                | -1.7%P                                     | 7.1%P                                     |
| 운수업                   | 8.3%                        | 68.4%                      | 41.9%               | -33.6%P                                    | 26.5%P                                    |
| 숙박 및 음식점업             | 0.9%                        | 23.1%                      | 1.7%                | -0.8%P                                     | 21.4%P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1%                        | 10.8%                      | 15.3%               | -12.2%P                                    | -4.5%P                                    |
| 금융 및 보험업              | 24.0%                       | 37.4%                      | 23.5%               | 0.5%P                                      | 13.9%P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2.7%                        | 33.8%                      | 4.8%                | -2.1%P                                     | 29.0%P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3.4%                        | 14.3%                      | 9.4%                | -6.0%P                                     | 4.9%P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6.0%                        | 1.1%                       | 8.2%                | -2.1%P                                     | -7.1%P                                    |
| 교육서비스업                | 0.5%                        | 8.2%                       | 4.6%                | -4.1%P                                     | 3.7%P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0%                        | 18.5%                      | 6.3%                | -4.3%P                                     | 12.3%P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2.2%                        | 24.1%                      | 7.9%                | -5.7%P                                     | 16.3%P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0%                        | 23.7%                      | 3.7%                | -2.7%P                                     | 20.0%P                                    |
| 전체                    | 3.5%                        | 24.3%                      | 10.5%               | -7.1%P                                     | 13.8%P                                    |

주) a) 중소기업 청년층의 노동조합적용 격차 = 중소기업 청년층의 노동조합적용 평균 - 산업전체 노동조합적용 평균

b) 대기업 청년층의 노동조합적용 격차 = 대기업 청년층의 노동조합적용 평균 - 산업전체 노동조합적용 평균

특히,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층과

대기업 청년층의 격차는 -90.4%P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으며, 광업 - 68.5%P, 운수업 -60.1%P,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1%P의 순으로 노동조합 가입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 7. 청년 고용현황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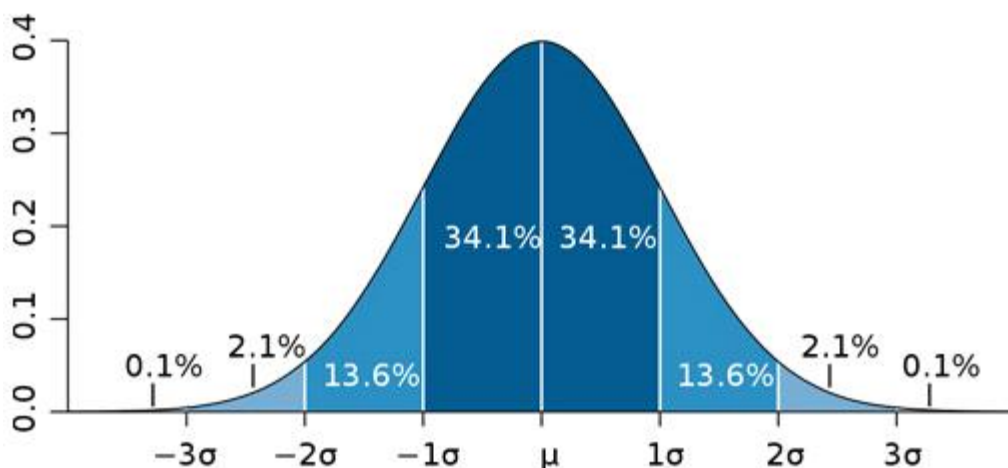
### 1) 추정 방법

이전 까지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청년층의 고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각 항목마다 측정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취약 업종인지, 어떤 업종이 안정적 업종인지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객관적 지표인 표준정규분포에 근사시켜 구분하는 방법을 시도하고자 한다. 표준 정규 분포의 경우  $\mu \pm 1\sigma$ 의 범주에 전체 데이터의 68.2%가 분포하고,  $\mu \pm 2\sigma$ 의 범주 안에는 95.4%가 분포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mu \pm 1\sigma$ 는 평균에 가장 가까운 집단,  $\mu \pm 2\sigma$ 는 조금 떨어져 있는 집단,  $\mu \pm 3\sigma$ 는 가장 떨어진 집단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평균에 밀접한 정도가 아닌 극단값에 가까운 것이 좋은 지표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특정 산업에 대한 임금의 경우 해당 집단의 평균 임금에 가까운 값 보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지표가 되어야 한다.

[그림 3-1] 표준정규분포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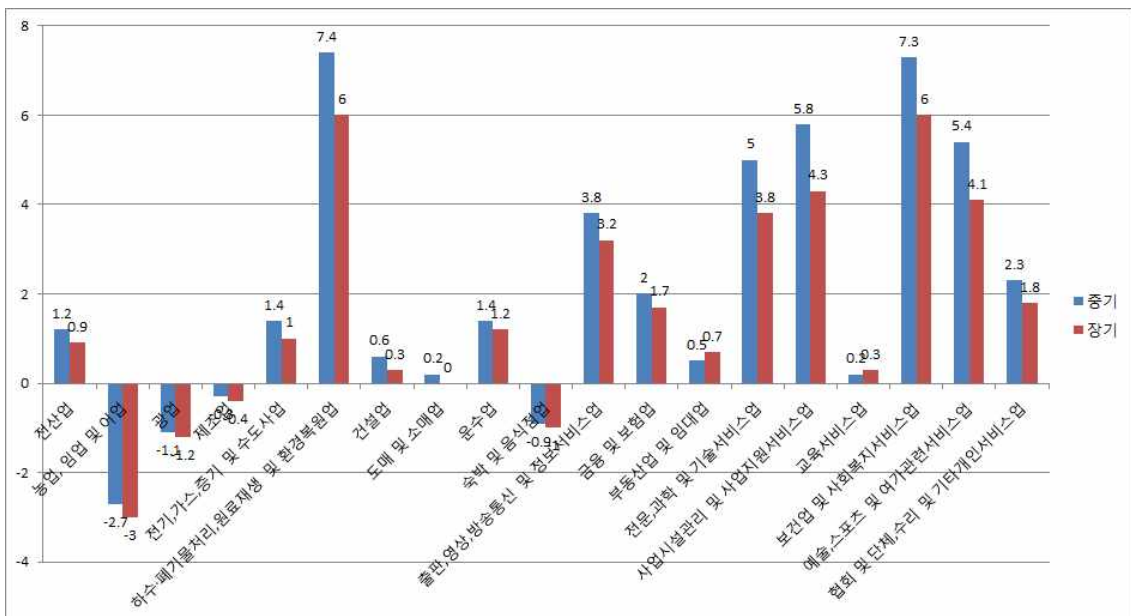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집단을 다음과 같이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 평가          | 정의                             | 구분                              |
|-------------|--------------------------------|---------------------------------|
| Red Zone    | - 청년 취약직종<br>-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집단  | $\mu - 1\sigma \geq$ , 하위 15.8% |
| Yellow Zone | - 청년 취약 차상위 직종<br>- 관리가 필요한 집단 | $\mu \pm 1\sigma$ , 중위 68.2%    |
| Green Zone  | - 청년 안정직종<br>- 유지관리 및 벤치마크 집단  | $\mu + 1\sigma \leq$ , 상위 15.8% |

## 2) 산업별 취업자 전망

청년 고용 현황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용 정보 외에 산업별 전망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이용하여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청년 고용현황 로드맵에 반영하고자 한다.

[그림 3-2] 산업 대분류 중장기 취업자 전망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11-2020, 한국고용정보원(2012)을 이용하여 작성.

고용 전망률을 보면 '11-'15 전망이 전산업 평균 1.2%이고, '11-'20 전망이 0.9%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패턴은 '11-'15와 '11-'20이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기의 추정값인 '11-'15 취업자증감률(연평균)을 이용하여 산업별 고용 전망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3-33> 산업 대분류 취업자 전망

(단위 : 천명, %)

|                       | 취업자    |        |        | 취업자 증감(기간증감) |       |       | 취업자 증감률(연평균) |       |       |
|-----------------------|--------|--------|--------|--------------|-------|-------|--------------|-------|-------|
|                       | 2010   | 2015   | 2020   | 11-15        | 16-20 | 11-20 | 11-15        | 16-20 | 11-20 |
| 전산업                   | 23,829 | 25,325 | 26,177 | 1,496        | 852   | 2,348 | 1.2          | 0.7   | 0.9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566  | 1,366  | 1,157  | -201         | -209  | -410  | -2.7         | -3.3  | -3.0  |
| 광업                    | 21     | 20     | 19     | -1           | -1    | -2    | -1.1         | -1.3  | -1.2  |
| 제조업                   | 1,028  | 3,976  | 3,887  | -52          | -89   | -140  | -0.3         | -0.5  | -0.4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78     | 84     | 87     | 6            | 3     | 8     | 1.4          | 0.6   | 1.0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65     | 94     | 119    | 29           | 25    | 54    | 7.4          | 4.7   | 6.0   |
| 건설업                   | 1,753  | 1,806  | 1,805  | 53           | -1    | 52    | 0.6          | 0.0   | 0.3   |
| 도매 및 소매업              | 3,580  | 3,613  | 3,569  | 33           | -45   | -12   | 0.2          | -0.2  | 0.0   |
| 운수업                   | 1,280  | 1,372  | 1,443  | 92           | 71    | 163   | 1.4          | 1.0   | 1.2   |
| 숙박 및 음식점업             | 1,889  | 1,809  | 1,708  | -80          | -100  | -181  | -0.9         | -1.1  | -1.0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668    | 808    | 921    | 141          | 112   | 253   | 3.8          | 2.6   | 3.2   |
| 금융 및 보험업              | 808    | 895    | 956    | 87           | 62    | 149   | 2.0          | 1.3   | 1.7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517    | 530    | 554    | 14           | 24    | 37    | 0.5          | 0.9   | 0.7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883    | 1,133  | 1,288  | 250          | 154   | 405   | 5.0          | 2.6   | 3.8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023  | 1,365  | 1,569  | 342          | 204   | 546   | 5.8          | 2.8   | 4.3   |
| 교육서비스업                | 1,799  | 1,821  | 1,854  | 22           | 33    | 55    | 0.2          | 0.4   | 0.3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153  | 1,659  | 2,106  | 507          | 446   | 953   | 7.3          | 4.8   | 6.0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380    | 496    | 574    | 116          | 78    | 195   | 5.4          | 2.9   | 4.1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216  | 1,365  | 1,452  | 149          | 87    | 236   | 2.3          | 1.2   | 1.8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11-2020, 2012.



2015년 까지 산업별 중기 취업자 전망을 살펴보자. 3% 이상 취업자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 산업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7.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8%)로 나타났다.

0~3%의 취업자 성장 전망 산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3%), 금융 및 보험업(2.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4%), 운수업(1.4%), 건설업(0.6%), 부동산업 및 임대업(0.5%), 도매 및 소매업(0.2%), 교육 서비스업(0.2%)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2.7%), 광업(-1.1%), 숙박 및 음식점업(-0.9%), 제조업(-0.3%)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취업자 전망과 관련해서는 3%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을 Green Zone으로, 0~3%의 저성장 산업을 Yellow Zone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을 Red Zone으로 구분하여 전체 평가에 반영한다.

### 3) 청년고용현황 로드맵

#### (1) 청년 고용

청년 고용 현황은 산업별 취업자 전망, 산업내 청년 취업자 비율, 산업내 청년 취업자의 정규직 비율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취업자 전망은 이전 절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산업내 청년 취업자 비중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산업내 청년 고용 비중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3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4.4%)에서 고용 비중이 높아 Green Zone으로 구분되었고 광업(4.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8.9%),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8.8%), 건설업(8.7%), 부동산업 및 임대업(7.0%)로 나타나 Red Zone으로 구분하였다.

<표 3-34> 산업 대분류 청년 고용 평가

(단위 : %)

|                       | 취업자 전망     |    | 청년 취업자 비중 |    | 청년 정규직 비중 |    |
|-----------------------|------------|----|-----------|----|-----------|----|
|                       | 취업전망       | 평가 | 취업비중      | 평가 | 정규직비중     | 평가 |
| 농업, 임업 및 어업           | -2.7%      | R  | 11.1%     | Y  | 48.2%     | Y  |
| 광업                    | -1.1%      | R  | 4.9%      | R  | 79.2%     | Y  |
| 제조업                   | -0.3%      | R  | 19.6%     | Y  | 86.4%     | G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4%       | Y  | 8.9%      | R  | 77.9%     | Y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7.4%       | G  | 8.8%      | R  | 84.9%     | G  |
| 건설업                   | 0.6%       | Y  | 8.7%      | R  | 64.6%     | Y  |
| 도매 및 소매업              | 0.2%       | Y  | 25.3%     | Y  | 61.0%     | Y  |
| 운수업                   | 1.4%       | Y  | 11.2%     | Y  | 69.8%     | Y  |
| 숙박 및 음식점업             | -0.9%      | R  | 33.2%     | G  | 22.2%     | R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8%       | G  | 29.5%     | Y  | 66.9%     | Y  |
| 금융 및 보험업              | 2.0%       | Y  | 14.7%     | Y  | 68.3%     | Y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0.5%       | Y  | 7.0%      | R  | 66.4%     | Y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5.0%       | G  | 23.5%     | Y  | 83.8%     | Y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5.8%       | G  | 20.6%     | Y  | 62.4%     | Y  |
| 교육서비스업                | 0.2%       | Y  | 22.6%     | Y  | 40.9%     | R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3%       | G  | 29.3%     | Y  | 87.8%     | G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5.4%       | G  | 44.4%     | G  | 26.7%     | R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2.3%       | Y  | 19.8%     | Y  | 55.7%     | Y  |
| 전산업                   | 1.2%       | Y  | 21.1%     | Y  | 65.3%     | Y  |
| 표준편차                  | 감소,저성장,고성장 |    | 0.107     |    | 0.188     |    |

청년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을 보면 제조업(86.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84.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7.8%)로 나타나

Green Zone으로 구분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22.2%), 교육 서비스업(4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6.7%)이 다른 산업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Red Zone으로 구분되었다.

## (2) 고용의 질

고용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임금 및 초과근로일수, 초과근로시간수를 이용하였다.

임금의 경우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특별급여가 있지만 그 격차도 크고 하나의 지표로 일반화하기 어려워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정액급여를 임금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근로 시간의 경우는 산업별 특성이 있고 시간의 장단에 따라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체 근로시간에서 차지하는 초과근로 시간은 그 수치가 크면 클수록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에서 초과근로일수나 초과근로시간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근로의 질을 판단하고자 한다.

청년의 고용의 질을 임금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880천원), 건설업(1,740천원), 금융 및 보험업(1,988천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806천원)으로 Green Zone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청년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826천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100천원)으로 Red Zone으로 구분되었다.

초과근로일수의 비율을 통한 고용의 질 평가는 농업, 임업 및 어업(0.96%), 숙박 및 음식점업(0.52%), 금융 및 보험업(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0.93%), 교육서비스업(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0.9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0.47%)로 낮게 나타나 Green Zone으로 구분하였고, 제조업의 경우 5.78%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Red Zone으로 구분하였다.

<표 3-35> 산업 대분류 청년 고용의 질 평가

(단위 : 천원, %)

|                       | 임금      |    | 초과근로일수       |    | 초과근로시간수       |    |
|-----------------------|---------|----|--------------|----|---------------|----|
|                       | 정액급여    | 평가 | 초과근로<br>일수비중 | 평가 | 초과근로<br>시간수비중 | 평가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389.3 | Y  | 0.96%        | G  | 2.26%         | G  |
| 광업                    | 1,675.9 | Y  | 3.59%        | Y  | 9.57%         | R  |
| 제조업                   | 1,521.5 | Y  | 5.78%        | R  | 14.97%        | R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879.6 | G  | 1.87%        | Y  | 7.47%         | Y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582.1 | Y  | 2.22%        | Y  | 5.16%         | Y  |
| 건설업                   | 1,740.2 | G  | 1.97%        | Y  | 3.80%         | Y  |
| 도매 및 소매업              | 1,343.6 | Y  | 0.94%        | Y  | 3.34%         | Y  |
| 운수업                   | 1,699.5 | Y  | 1.84%        | Y  | 5.54%         | Y  |
| 숙박 및 음식점업             | 825.5   | R  | 0.52%        | G  | 2.05%         | G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691.3 | Y  | 1.46%        | Y  | 3.21%         | Y  |
| 금융 및 보험업              | 1,988.4 | G  | 0.00%        | G  | 1.87%         | G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493.0 | Y  | 0.93%        | G  | 2.63%         | G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806.4 | G  | 1.42%        | Y  | 2.96%         | Y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503.0 | Y  | 1.97%        | Y  | 5.09%         | Y  |
| 교육서비스업                | 1,442.1 | Y  | 0.00%        | G  | 0.74%         | G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575.2 | Y  | 1.33%        | Y  | 3.74%         | Y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1,100.3 | R  | 0.98%        | G  | 2.40%         | G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247.7 | Y  | 0.47%        | G  | 1.09%         | G  |
| 전산업                   | 1,450.2 | Y  | 2.35%        | Y  | 6.11%         | Y  |
| 표준편차                  | 282.713 |    | 1.363        |    | 3.460         |    |

초과근로시간수의 경우도 농업, 임업 및 어업(2.26%), 숙박 및 음식점업(2.05%), 금융 및 보험업(1.87%), 부동산업 및 임대업(2.63%), 교육서비스업

(0.7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4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09%)로 낮게 나타나 Green Zone으로 구분하였고, 광업(9.57%), 제조업(14.97%)은 초과근로시간수의 비중이 높아 Red Zone으로 구분되었다.

### (3) 고용의 안정성

고용의 안정성 측면을 보기 위해 4대 보험 적용 여부와 상여금, 퇴직금 적용 비율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다.

4대 보험의 경우 각 보험마다 산업별 성격에 따라 가입 비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산업별로 각각의 보험 가입 비율을 비교하여 구분하고, 구분된 기준을 종합하여 4대 보험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4대 보험 모두를 반영하였고, 가장 많이 나오는 Zone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그 가운데 동수의 Zone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광업의 경우 고용보험 Green Zone, 건강보험 Yellow Zone, 국민연금 Yellow Zone, 산재보험 Green Zone으로 구분되어, Green Zone과 Yellow Zone이 각각 2개씩 나온 경우 보수적인 판단 기준으로 Yellow Zone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4대 보험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과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이 청년의 4대 보험 가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Green Zone으로 구분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Red Zone으로 구분되었다.

상여금과 퇴직금 적용 비율을 통해 살펴보면, 상여금의 경우 제조업(81.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83.3%), 금융 및 보험업(78.6%)로 나타나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 비율이 높아 Green Zone으로 구분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16.4%), 교육 서비스업(2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9.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34.2%)이 낮게 나타나 Red Zone으로 구분되었다.

<표 3-36> 산업 대분류 청년 고용의 안정성 평가(4대보험)

(단위 : %)

|                       | 고용보험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 산재보험   |    | 종합 |
|-----------------------|-------|----|-------|----|-------|----|--------|----|----|
|                       | 가입비   | 평가 | 가입비   | 평가 | 가입비   | 평가 | 가입비    | 평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67.7% | Y  | 77.5% | Y  | 71.6% | Y  | 78.0%  | Y  | Y  |
| 광업                    | 96.3% | G  | 89.5% | Y  | 89.3% | Y  | 98.4%  | G  | Y  |
| 제조업                   | 91.9% | Y  | 95.7% | G  | 91.6% | Y  | 98.6%  | G  | Y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99.7% | G  | 98.9% | G  | 98.9% | G  | 100.0% | G  | G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7.2% | G  | 97.4% | G  | 97.0% | G  | 100.0% | G  | G  |
| 건설업                   | 93.1% | Y  | 70.2% | Y  | 69.4% | Y  | 96.9%  | Y  | Y  |
| 도매 및 소매업              | 71.6% | Y  | 69.2% | Y  | 68.6% | Y  | 77.5%  | Y  | Y  |
| 운수업                   | 92.5% | Y  | 92.0% | Y  | 91.8% | Y  | 95.7%  | Y  | Y  |
| 숙박 및 음식점업             | 33.9% | R  | 30.1% | R  | 29.3% | R  | 53.8%  | R  | R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0.3% | Y  | 89.6% | Y  | 89.5% | Y  | 97.3%  | Y  | Y  |
| 금융 및 보험업              | 88.9% | Y  | 88.4% | Y  | 88.3% | Y  | 89.1%  | Y  | Y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2.6% | Y  | 82.5% | Y  | 82.3% | Y  | 82.8%  | Y  | Y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95.2% | G  | 94.6% | Y  | 94.6% | G  | 97.0%  | Y  | Y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92.0% | Y  | 87.5% | Y  | 87.5% | Y  | 96.4%  | Y  | Y  |
| 교육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91.4% | Y  | 97.2% | G  | 94.6% | G  | 97.2%  | Y  | Y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33.6% | R  | 31.9% | R  | 31.8% | R  | 42.2%  | R  | R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55.5% | Y  | 54.3% | Y  | 53.9% | Y  | 62.7%  | R  | Y  |
| 전산업                   | 73.6% | Y  | 73.0% | Y  | 71.6% | Y  | 80.2%  | Y  | Y  |
| 표준편차                  | 0.212 |    | 0.217 |    | 0.216 |    | 0.178  |    |    |

퇴직금 적용의 경우  $\mu + 1\sigma$ 를 벗어나는 범주가 없어 Green Zone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mu - 1\sigma$ 를 벗어나는 Red Zone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29.4%), 교육서비스업(44.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6.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46.7%)로 구분되었다.

<표 3-37> 산업 대분류 청년 고용의 안정성 평가(상여금, 퇴직금)

(단위 : %)

|                       | 상여금   |    | 퇴직금   |    | 종합 |
|-----------------------|-------|----|-------|----|----|
|                       | 적용비율  | 평가 | 적용비율  | 평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48.8% | Y  | 65.2% | Y  | Y  |
| 광업                    | 67.3% | Y  | 82.8% | Y  | Y  |
| 제조업                   | 81.0% | G  | 91.1% | Y  | Y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83.3% | G  | 83.2% | Y  | Y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73.7% | Y  | 90.6% | Y  | Y  |
| 건설업                   | 46.7% | Y  | 66.5% | Y  | Y  |
| 도매 및 소매업              | 49.0% | Y  | 64.5% | Y  | Y  |
| 운수업                   | 70.8% | Y  | 88.2% | Y  | Y  |
| 숙박 및 음식점업             | 16.4% | R  | 29.4% | R  | R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3.2% | Y  | 80.3% | Y  | Y  |
| 금융 및 보험업              | 78.6% | G  | 85.0% | Y  | Y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7.8% | Y  | 73.4% | Y  | Y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68.9% | Y  | 88.4% | Y  | Y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56.6% | Y  | 87.5% | Y  | Y  |
| 교육서비스업                | 29.1% | R  | 44.9% | R  | R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61.5% | Y  | 89.1% | Y  | Y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19.6% | R  | 26.9% | R  | R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34.2% | R  | 46.7% | R  | R  |
| 전산업                   | 54.9% | Y  | 71.3% | Y  | Y  |
| 표준편차                  | 0.204 |    | 0.211 |    |    |

#### (4) 청년층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비교

앞선 장에서 분석한 청년층의 종사자 규모별 고용 및 정규직 비율, 정액급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세 그룹(G, Y, R)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표 3-38>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 고용 현황

(단위 : %, 천원)

|                       | 고용비율  |       | 정규직 비율 |        | 정액급여    |         |
|-----------------------|-------|-------|--------|--------|---------|---------|
|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1.1% | 10.2% | 48.6%  | 35.7%  | 1,381.3 | 1,650.7 |
| 광업                    | 4.8%  | 5.0%  | 80.1%  | 76.1%  | 1,657.2 | 1,738.9 |
| 제조업                   | 17.9% | 26.3% | 83.8%  | 93.1%  | 1,453.8 | 1,699.3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8.2%  | 10.1% | 73.8%  | 84.0%  | 1,757.8 | 2,057.6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8.8%  | 6.5%  | 84.8%  | 100.0% | 1,579.8 | 2,052.0 |
| 건설업                   | 8.3%  | 15.9% | 63.1%  | 78.1%  | 1,598.8 | 3,012.5 |
| 도매 및 소매업              | 25.1% | 31.6% | 60.6%  | 69.7%  | 1,315.7 | 1,951.9 |
| 운수업                   | 9.6%  | 19.9% | 79.4%  | 45.0%  | 1,571.5 | 2,028.6 |
| 숙박 및 음식점업             | 33.2% | 32.9% | 21.6%  | 51.0%  | 814.7   | 1,349.4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1.7% | 21.8% | 67.6%  | 63.5%  | 1,633.0 | 1,978.3 |
| 금융 및 보험업              | 13.3% | 23.4% | 69.4%  | 64.4%  | 1,948.8 | 2,126.8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  | 12.3% | 66.9%  | 57.9%  | 1,473.2 | 1,812.7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23.9% | 22.2% | 85.5%  | 78.2%  | 1,717.6 | 2,100.9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9.2% | 26.2% | 63.2%  | 60.0%  | 1,488.0 | 1,546.3 |
| 교육서비스업                | 25.0% | 10.7% | 42.7%  | 20.1%  | 1,427.7 | 1,608.7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7.3% | 38.3% | 90.6%  | 78.5%  | 1,444.9 | 1,999.2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44.7% | 40.7% | 26.4%  | 32.6%  | 1,096.7 | 1,163.9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9.7% | 22.0% | 55.9%  | 46.4%  | 1,239.4 | 1,752.3 |
| 전체                    | 20.5% | 24.9% | 63.2%  | 76.2%  | 1,374.6 | 1,847.8 |

고용 비율만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대부분이 Yellow Zone으로 중소기업 청년층의 고용 비율이 대기업 청년층의 고용 비율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및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는 정규직과의 격차가 평균 격차에 비해 1 $\sigma$ 를 상회하여 Green Zone으로 구분되었다.

<표 3-39>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청년 고용 현황 격차

(단위 : %p, 천원)

|                       | 고용비율     |    | 정규직 비율   |    | 정책급여     |    |
|-----------------------|----------|----|----------|----|----------|----|
|                       | 격차       | 평가 | 격차       | 평가 | 격차       | 평가 |
| 농업, 임업 및 어업           | 0.90%p   | Y  | 12.90%p  | G  | -269.4   | Y  |
| 광업                    | -0.20%p  | Y  | 4.00%p   | G  | -81.7    | Y  |
| 제조업                   | -8.40%p  | Y  | -9.30%p  | Y  | -245.5   | Y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90%p  | Y  | -10.20%p | Y  | -299.8   | Y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2.30%p   | Y  | -15.20%p | Y  | -472.2   | Y  |
| 건설업                   | -7.60%p  | Y  | -15.00%p | Y  | -1,413.7 | R  |
| 도매 및 소매업              | -6.50%p  | Y  | -9.10%p  | Y  | -636.2   | Y  |
| 운수업                   | -10.30%p | Y  | 34.40%   | G  | -457.1   | Y  |
| 숙박 및 음식점업             | 0.30%p   | Y  | -29.40%p | R  | -534.7   | Y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0%p   | G  | 4.10%p   | G  | -345.3   | Y  |
| 금융 및 보험업              | -10.10%p | Y  | 5.00%p   | G  | -178.0   | Y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5.50%p  | Y  | 9.00%p   | G  | -339.5   | Y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70%p   | Y  | 7.30%p   | G  | -383.3   | Y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7.00%p  | Y  | 3.20%p   | G  | -58.3    | Y  |
| 교육서비스업                | 14.30%p  | G  | 22.60%p  | G  | -181.0   | Y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1.00%p | Y  | 12.10%p  | G  | -554.3   | Y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4.00%p   | G  | -6.20%p  | Y  | -67.2    | Y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2.30%p  | Y  | 9.50%p   | G  | -512.9   | Y  |
| 전체                    | -4.40%p  | Y  | -13.00%p | Y  | -473.2   | Y  |
| 표준편차                  | 0.070    |    | 0.151    |    | 309.546  |    |

정규직 비율에서도 마찬가지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의 정규직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규직 비율이 높아 Green Zone으로 구분되는 영역이 많다.

하지만 임금의 경우에는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대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건설업의 경우는 전산업 평균 임금 격차에 비해  $1\sigma$ 를 벗어나는 범주에 있어 Red Zone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정규직 여부와 같은 안정성 보다는 임금과 같은 일자리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청년층의 고용율과 정규직 비율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오히려 더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임금의 경우는 모든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낮고, 평균 격차 또한 크게 나타나 중소기업 기피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업무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초과근로일수 비율과 초과근로시간수 비율을 보면 초과근로일수 및 초과근로시간수는 모두 평균적으로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에 비해 대기업 청년층의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층의 초과근로일수 비율이 낮게 나타나 Green Zone으로 구분되었고, 나머지 산업에서는 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격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

초과근로시간수 비율에서는 광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의 초과근로시간수가 상대적으로 Green Zone으로 구분되었고, 건설업, 운수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초과근로시간수 비율이 대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Red Zone으로 구분되었다.

<표 3-40>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초과근로 격차

(단위 : %p, 천원)

|                       | 초과근로일수 비율 |       |        |    | 초과근로시간수 비율 |       |        |    |
|-----------------------|-----------|-------|--------|----|------------|-------|--------|----|
|                       | 중소        | 대     | 격차     | 평가 | 중소         | 대     | 격차     | 평가 |
| 농업, 임업 및 어업           | 0.96      | 0.90  | 0.06   | Y  | 2.26       | 1.26  | 1.01   | Y  |
| 광업                    | 3.84      | 2.29  | 1.55   | Y  | 7.57       | 16.14 | -8.57  | G  |
| 제조업                   | 4.76      | 8.57  | -3.80  | Y  | 14.84      | 15.40 | -0.57  | Y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45      | 2.09  | -0.63  | Y  | 6.76       | 8.52  | -1.76  | Y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96      | 19.69 | -17.72 | G  | 5.06       | 19.78 | -14.71 | G  |
| 건설업                   | 1.83      | 1.24  | 0.59   | Y  | 4.03       | 1.98  | 2.05   | R  |
| 도매 및 소매업              | 0.98      | 1.97  | -0.99  | Y  | 3.13       | 7.31  | -4.17  | Y  |
| 운수업                   | 2.19      | 0.75  | 1.44   | Y  | 5.77       | 4.85  | 0.92   | R  |
| 숙박 및 음식점업             | 0.37      | 2.97  | -2.61  | Y  | 1.89       | 8.50  | -6.61  | Y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0.60      | 4.24  | -3.64  | Y  | 1.80       | 9.28  | -7.48  | Y  |
| 금융 및 보험업              | 0.19      | 0.19  | 0.00   | Y  | 1.89       | 1.92  | -0.03  | Y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0.93      | 0.48  | 0.45   | Y  | 2.51       | 4.94  | -2.43  | Y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22      | 1.85  | -0.63  | Y  | 2.80       | 3.40  | -0.60  | Y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2.37      | 1.65  | 0.72   | Y  | 5.28       | 4.47  | 0.81   | R  |
| 교육서비스업                | 0.15      | 0.10  | 0.05   | Y  | 0.78       | 0.49  | 0.29   | Y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13      | 2.63  | -1.50  | Y  | 2.98       | 6.39  | -3.42  | Y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0.73      | 6.52  | -5.80  | Y  | 1.95       | 10.55 | -8.60  | G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0.42      | 1.34  | -0.92  | Y  | 1.03       | 5.06  | -4.02  | Y  |
| 전체                    | 1.70      | 4.63  | -2.93  | Y  | 5.42       | 9.45  | -4.02  | Y  |
| 표준편차                  | 4.41      |       |        |    | 4.47       |       |        |    |

4대 보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대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청년층의 가입비율이 높았고, 중소기업 사업장의 가입 비율이 높은 경우도 그 격차가 크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은 모든 보험 영역에서 대기업 종사 청년층과의 격차가 표준편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안정적 요소에서도 취약한 산업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청년층의 4대 보험

적용 비율이 대기업 청년층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4대 보험 적용에 있어선 벤치마크할 산업이 될 수 있다.

<표 3-41> 산업 및 규모별 청년 고용의 안정성 평가(4대보험)

(단위 : %p)

|                      | 고용보험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 산재보험    |    | 종합 |
|----------------------|---------|----|---------|----|---------|----|---------|----|----|
|                      | 격차      | 평가 | 격차      | 평가 | 격차      | 평가 | 격차      | 평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33.3%p | Y  | -23.2%p | Y  | -29.2%p | Y  | -22.7%p | Y  | Y  |
| 광업                   | -3.7%p  | Y  | -13.6%p | Y  | -12.8%p | Y  | -2.1%p  | Y  | Y  |
| 제조업                  | -11.0%p | Y  | -5.3%p  | Y  | -10.2%p | Y  | -2.0%p  | Y  | Y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0.6%p  | Y  | 0.4%p   | Y  | 0.4%p   | Y  | 0.0%p   | Y  | Y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2.8%p  | Y  | -2.6%p  | Y  | -3.0%p  | Y  | 0.0%p   | Y  | Y  |
| 건설업                  | -7.7%p  | Y  | -33.1%p | Y  | -34.0%p | Y  | -3.5%p  | Y  | Y  |
| 도매 및 소매업             | -27.7%p | Y  | -29.0%p | Y  | -29.6%p | Y  | -22.3%p | Y  | Y  |
| 운수업                  | -10.3%p | Y  | -10.9%p | Y  | -11.1%p | Y  | -5.9%p  | Y  | Y  |
| 숙박 및 음식점업            | -65.7%p | R  | -69.3%p | R  | -70.3%p | R  | -46.3%p | R  | R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0.9%p | Y  | -11.6%p | Y  | -11.7%p | Y  | -3.2%p  | Y  | Y  |
| 금융 및 보험업             | -14.0%p | Y  | -12.5%p | Y  | -12.7%p | Y  | -14.0%p | Y  | Y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8.2%p | Y  | -18.6%p | Y  | -18.8%p | Y  | -18.3%p | Y  | Y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5.1%p  | Y  | -5.0%p  | Y  | -5.0%p  | Y  | -3.6%p  | Y  | Y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8%p   | G  | -1.3%p  | Y  | -1.4%p  | Y  | -4.9%p  | Y  | Y  |
| 교육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1.3%p  | G  | -2.5%p  | Y  | 7.9%p   | G  | 2.7%p   | G  | G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49.7%p | R  | -51.5%p | R  | -51.6%p | R  | -60.5%p | R  | R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45.2%p | R  | -46.4%p | R  | -46.8%p | R  | -37.9%p | R  | R  |
| 전산업                  | -21.5%p | Y  | -26.2%p | Y  | -25.6%p | Y  | -18.9%p | Y  | Y  |
| 표준편차                 | 0.217   |    | 0.201   |    | 0.210   |    | 0.183   |    |    |

<표 3-42> 산업 및 규모별 청년 고용의 안정성 평가(상여금, 퇴직금)

(단위 : %p)

|                       | 상여금     |    | 퇴직금     |    | 종합 |
|-----------------------|---------|----|---------|----|----|
|                       | 적용비율    | 평가 | 적용비율    | 평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52.8%p | R  | -35.9%p | Y  | R  |
| 광업                    | -11.4%p | G  | -22.3%p | Y  | Y  |
| 제조업                   | -23.1%p | Y  | -9.8%p  | G  | Y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6.3%p  | G  | 0.0%p   | G  | G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 -  | -9.4%p  | G  | Y  |
| 건설업                   | -48.0%p | Y  | -37.3%p | Y  | Y  |
| 도매 및 소매업              | -31.9%p | Y  | -34.1%p | Y  | Y  |
| 운수업                   | -33.3%p | Y  | -16.2%p | Y  | Y  |
| 숙박 및 음식점업             | -46.0%p | Y  | -51.4%p | R  | R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3.5%p | Y  | -17.4%p | Y  | Y  |
| 금융 및 보험업              | -15.0%p | G  | -11.2%p | Y  | Y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1.1%p | Y  | -6.9%p  | G  | Y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20.3%p | Y  | -9.4%p  | G  | Y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p   | G  | -16.9%p | Y  | Y  |
| 교육서비스업                | 0.7%p   | Y  | -12.5%p | Y  | Y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7.5%p | Y  | 1.8%p   | G  | Y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42.5%p | Y  | -34.8%p | Y  | Y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32.9%p | Y  | -53.5%p | R  | R  |
| 전산업                   | -35.0%p | Y  | -27.1%p | Y  | Y  |
| 표준편차                  | 0.170   |    | 0.165   |    |    |

상여금 및 퇴직금 적용 비율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대기업 청년층의 적용 비율이 높았다. 다만,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층의 적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좋거나 다른 산업군에 비해 대기업 청년층과의 격차가 적어 Green Zone으로 구분되었고,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의 경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커서 Red Zone으로 구분되었다.

(5) 종합

① 산업별 청년층 고용 실태 분석

산업별 청년층의 취업, 고용의 질, 고용 안정성 지표를 종합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자.

<표 3-43> 청년 고용 로드맵 종합

|                      | 취업       |    |     | 고용의 질 |          | 고용 안정성   |           | 종합 |   |
|----------------------|----------|----|-----|-------|----------|----------|-----------|----|---|
|                      | 취업<br>전망 | 취업 | 정규직 | 임금    | 초과<br>근로 | 4대<br>보험 | 상여<br>퇴직금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R        | Y  | Y   | Y     | G        | Y        | Y         | 7  | Y |
| 광업                   | R        | R  | Y   | Y     | R        | Y        | Y         | 4  | R |
| 제조업                  | R        | Y  | G   | Y     | R        | Y        | Y         | 6  | Y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Y        | R  | Y   | G     | Y        | G        | Y         | 8  | Y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G        | R  | G   | Y     | Y        | G        | Y         | 9  | G |
| 건설업                  | Y        | R  | Y   | G     | Y        | Y        | Y         | 7  | Y |
| 도매 및 소매업             | Y        | Y  | Y   | Y     | Y        | Y        | Y         | 7  | Y |
| 운수업                  | Y        | Y  | Y   | Y     | Y        | Y        | Y         | 7  | Y |
| 숙박 및 음식점업            | R        | G  | R   | R     | G        | R        | R         | 4  | R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G        | Y  | Y   | Y     | Y        | Y        | Y         | 8  | Y |
| 금융 및 보험업             | Y        | Y  | Y   | G     | G        | Y        | Y         | 9  | G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Y        | R  | Y   | Y     | G        | Y        | Y         | 7  | Y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G        | Y  | Y   | G     | Y        | Y        | Y         | 9  | G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G        | Y  | Y   | Y     | Y        | Y        | Y         | 8  | Y |
| 교육서비스업               | Y        | Y  | R   | Y     | G        | -        | R         | 5  | R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G        | Y  | G   | Y     | Y        | Y        | Y         | 9  | G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G        | G  | R   | R     | G        | R        | R         | 6  | Y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Y        | Y  | Y   | Y     | G        | Y        | R         | 7  | Y |
| 전산업                  | Y        | Y  | Y   | Y     | Y        | Y        | Y         | 7  | Y |

산업 가운데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T. 가구내 자기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18개 산업을 비교하여 살펴보자. 종합적인 Zone 구분을 위해 취업전망, 취업자, 정규직 취업비율, 임금, 초과근로, 4대 보험, 상여·퇴직금 적용에 대한 세부 Zone에 대하여 Red Zone 0점, Yellow Zone 1점, Green Zone 2점을 부여하고 합산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하였다.

물론 각 항목마다 중요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이용하여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중요도를 가정하고 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종합적인 평가 결과는 구분을 위한 정도로만 활용해야 할 것이며,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동시에 이용하여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청년층 취업에 취약한 산업은 광업(4점), 숙박 및 음식점업(4점), 교육 서비스업(5점)으로 나타났다.

광업의 경우 취업 전망과 취업자 수, 초과 근로 부분에서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청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나머지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요하는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취업자 수와 초과 근로 부분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취업전망, 정규직 비율, 임금, 4대 보험 적용, 상여·퇴직금 적용 부분 모두 취약하여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는 초과 근로가 적어 다른 산업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정규직 비율과 상여·퇴직금 적용 비율 등이 청년층 내에서도 떨어지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Yellow Zone으로 평가한 산업 가운데 낮은 평가를 받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취업전망 및 취업자 수, 초과근로 부분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정규직 비율 및 임금, 4대 보험 적용, 상여·퇴직금 적용 부분에서 평가가 낮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른 산업군에 비해 고평가 되어있는 Green Zone에는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과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구분되었다.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은 청년 취업자 수는 적지만 앞으로의 취업전망과 정규직 비율, 4대 보험 적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 및 보험업은 청년층의 임금 및 초과 근로 부분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취업 전망 및 임금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취업 전망 및 정규직 비율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청년층 고용 실태 비교 분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Green Zone으로 구분되었다고 하여 중소기업의 근로 안정성이나 근로의 질이 높다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인 비율이 적어서 나타난 결과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고 파악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의 상대 격차를 비교하여 파악해 보면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Green Zone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대기업과의 상대적인 격차가 적은 산업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대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에 비해 처우가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Red Zone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대기업 종사 청년층과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군을 의미한다. 건설업의 경우는 임금 및 초과근로 분야에서 상대적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 전망, 정규직 비율, 4대보험 적용, 상여·퇴직금 적용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4> 청년 고용 로드맵 종합(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                      | 취업       |    |     | 고용의 질 |          | 고용 안정성   |           | 종합 |   |
|----------------------|----------|----|-----|-------|----------|----------|-----------|----|---|
|                      | 취업<br>전망 | 취업 | 정규직 | 임금    | 초과<br>근로 | 4대<br>보험 | 상여<br>퇴직금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R        | Y  | G   | Y     | Y        | Y        | R         | 6  | Y |
| 광업                   | R        | Y  | G   | Y     | Y        | Y        | Y         | 7  | Y |
| 제조업                  | R        | Y  | Y   | Y     | Y        | Y        | Y         | 6  | Y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Y        | Y  | Y   | Y     | Y        | Y        | G         | 8  | Y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G        | Y  | Y   | Y     | G        | Y        | Y         | 9  | G |
| 건설업                  | Y        | Y  | Y   | R     | R        | Y        | Y         | 5  | R |
| 도매 및 소매업             | Y        | Y  | Y   | Y     | Y        | Y        | Y         | 7  | Y |
| 운수업                  | Y        | Y  | G   | Y     | R        | Y        | Y         | 7  | Y |
| 숙박 및 음식점업            | R        | Y  | R   | Y     | Y        | R        | R         | 3  | R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G        | G  | G   | Y     | Y        | Y        | Y         | 10 | G |
| 금융 및 보험업             | Y        | Y  | G   | Y     | Y        | Y        | Y         | 8  | Y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Y        | Y  | G   | Y     | Y        | Y        | Y         | 8  | Y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G        | Y  | G   | Y     | Y        | Y        | Y         | 9  | G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G        | Y  | G   | Y     | R        | Y        | Y         | 8  | Y |
| 교육서비스업               | Y        | G  | G   | Y     | Y        | -        | Y         | 8  | Y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G        | Y  | G   | Y     | Y        | G        | Y         | 10 | G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G        | G  | Y   | Y     | Y        | R        | Y         | 8  | Y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Y        | Y  | G   | Y     | Y        | R        | R         | 6  | Y |
| 전산업                  | Y        | Y  | Y   | Y     | Y        | Y        | Y         | 7  | Y |

## 8. 소결

본 장은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이중구조에 기인한다고 보고, 고용 및 종사상지위, 임금, 근로시간, 4대 보험, 상여·퇴직금 적용여부, 노동조합 가입 비율 등의 다양한 노동시장 지표를 이용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분석 결과 산업별로는 광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청년층의 고용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업의 경우는 향후 취업전망과, 취업자 수 그리고 초과근로와 같은 노동 환경적인 측면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전망, 정규직 비율, 임금, 4대 보험 및 상여·퇴직금 적용과 같이 고용의 질이나 고용 안정성을 대표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년층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는 정규직 비율과 상여·퇴직금 적용과 같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산업군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층과 대기업 청년층의 고용실태 격차 분석에서는 상당수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정규직 비율이 대기업의 정규직 비율 보다 높아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종사상 지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격차 부분에서는 모든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용안정성을 추측할 수 있는 4대 보험 적용 비율이나 상여·퇴직금 적용 비율에서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동종 산업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청년층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되고 대기업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이 지속·심화될 수 있으며, 청년층의 경우는 대기업 취업을 위한 과도한 스펙 쌓기로 사회적 비용을 증대 시키면서, 노동시장 이행 기간이 장기화되고 노동 이동이 많아지면서 실업 낙인 효과(stigma effect, scarr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추측되는 임금의 경우 그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쉽지가 않다. 임금의 경우 개인 및 기업의 생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일괄적인 정책은 현실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적용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전의 분석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가장 심각한 임금격차를 보인 산업은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거래가 일반적이고 도급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근로 조건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선 산업 구조 공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Bargaining Power를 끌어올리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 - 예를 들어, '계약체결 후 추가 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미교부 행위' '낮게 책정한 실행예산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하는 행위' '계속발주를 구실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기성금·준공금 등을 현금으로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행위' 등 - 을 개선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상여금 적용과 같은 고용의 양적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4대 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시키고,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과 같은 기존의 관행을 개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수준 등을 정부지원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제4장.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 1. 청년고용 실태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주요국의 청년 대책을 살펴봤을 때, 청년대책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직접적인 고용이 가능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 지역에 맞는 수요 중심적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학중 브릿지 프로그램 및 청년아카데미, 그리고 인턴 등의 제도를 실시할 때 단순한 경험을 쌓거나 취업가능성이 낮은 곳에서의 경험은 직접적인 구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각 지역이나 수요에 맞추어 청년고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작 단계에서부터 보다 세심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전반적인 청년층을 아우르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취약 청년층만을 집중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구분하여 수립하여야만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청년고용정책이 일부 저질의 일자리를 채워주는데 악용되어 다른 연령대의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경쟁으로 혹은 세대간 일자리 갈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오랜 기간 받는 청년의 경우 낙인효과로 인해 기업에서 꺼리는 등 과도한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청년층 취업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고 보조금의 사중효과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청년고용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써 정부의 청년취업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 채용기업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청년고용 장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취업자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시부터 기업의 정확한 요구 파악과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중소기업 청년층과 대기업 청년층의 고용실태 격차 분석에서는 상당수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정규직 비율이 대기업의 정규직 비율 보다 높아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종사상 지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

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격차 부분에서는 모든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추측되는 임금의 경우 그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치가 않다. 임금의 경우 개인 및 기업의 생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일괄적인 정책은 현실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적용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실태분석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가장 심각한 임금격차를 보인 산업은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거래가 일반적이고 도급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근로 조건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선 산업구조 공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 하에서 단순히 공정거래정책만으로는 원청의 성과주의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하도급 기업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원청의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가 매우 경직적이어서 하청에게 돌아가야 할 몫의 상당부분을 이미 원청에서 흡수한 후, 사후적인 잔차항만을 공정거래를 통해 분배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청의 성과주의 확대와 원·하청간의 성과공유, 그리고 원·하청관계 형성시 임금수준과 임금체계에 대한 서면계약주의를 확대하여 임금수준과 공정거래의 상호작용이 선순환을 그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각 기업의 구매 및 총무부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계약상의 내용을 공정거래에서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적절한 임금수준의 보장 및 공정한 이윤배분 등의 세밀한 계약내용이 원·하청관계 성립시 서면계약에 정착되고 건강한 약속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관할 부서와 공정거래가 협업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중소기업 청년층과 대기업 청년층의 고용실태 격차 분석에서는 상당수 산업에서 고용안정성을 추측할 수 있는 4대 보험 적용 비율이나 상여·퇴직금 적용 비율에서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동종 산업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년들은 졸업초기에는 연봉, 기업브랜드 등이 직업 선택시 최우선 변수이나 직장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근무환경(근무시간, 시설), 직장-주거지역 일치여부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에도 원인이 있으나, 열악한 근무환경, 직업-주거환경의 불일치 등도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있어 단순한 인력양성 및 매칭 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또한, 교통비 상승과 출퇴근 어려움 때문에 직업 선택시 직장-주거일치형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재를 교육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수용하는 취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단위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 예를 들어 지역단위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써 중소기업의 취업을 조건부로 하는 산학공동의 장학금을 학업의 시작단계부터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지역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능력 및 자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입학 초기단계부터 산학간의 긴밀한 연계 및 계획 하에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여 그 지역의 청년들을 교육하고 수용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업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 마련이고 산업에 대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기존의 다양한 정책을 연계하고 강화하여 청년고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먼저는 지역단체 및 산업 등의 예산지원을 일자리 창출실적과 연계하여 고용창출형 산업정책을 유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또한 현재 정부는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강화 및 확대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이 고용과 좀 더 긴밀히 연결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물론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동시에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핵심 사업 2~3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성과 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각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욱 확충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혹은 폐지시켜, 많은 사업을 실시하기 보다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



## 2. 청년문화 친화적 고용대책

### (Youth Culture Friendly Employment Policy)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을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의 청년실업 정책들을 통해 한국의 청년실업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근로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최근 데이터인 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취약한 산업, 관리가 필요한 산업, 유지 및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특성 또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경제불황으로 인한 노동 수요는 감소하였으나 고학력의 신규 대졸자의 공급은 오히려 확대되는 문제, 청년층들의 대기업 및 공무원 등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은 일자리만을 선호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 또한 앞서 언급한 주장들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주장과 정책방향에 대해 상당부분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에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년층의 '문화(文化)'이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이건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해당 집단의 문화와 사고의 충분한 이해는 기존의 정책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 및 분석결과들을 청년문화 친화적 고용대책의 관점과 접목시켜 시사점과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청년고용 정책의 문화적 접근 필요성

한 사회의 문화체계를 형성하는 주도문화(主導文化)의 한 부분으로써 청년들이 창조하고 선택하고 향유하고 있는 문화가 바로 청년문화이다. 여기서 청년문화는 주도문화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문화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한 사회에는 다양한 성격의 부분문화가 존재할 수 있으며, 주도문화가 견제하게 존재하는 한 다양한 부분문화가 함께 공존할수록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다원주의사회의 표상이며 주도문화의 포용력을 길러주고 끊임없이 생성, 발전되는 문화적 적응력과 창조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청년문화는 한 사회의 다양한 부분문화 가운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성격을 지닌다. 만약 청년문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주도문화의 그것과 정반대되는 경우에 청년문화는 반문화(反文化)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물론 반문화의 세력이 어떤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계층을 중심으로 왜곡되어 확대되어 간다면 그것은 기존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수도 있다<sup>11)</sup>.

청년문화의 특징은 자유분방함, 다양성, 개성으로 표현되며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조직 내 새롭게 등장한 이러한 젊은 세대를 가리켜 ‘브라보(BRAVO) 세대’라고 정의했다. 즉, 이들은 회사는 생활의 일부일 뿐으로 다양한 인간관계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B, Broad network), 평가결과와 보상에 민감하며(R, Reward-sensitive),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다(A, Adaptable). 또한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V, Voice), 회사보다 개인생활을 중시하는(O, Oriented to myself) 특징을 가진다.<sup>12)</sup> 불특정다수와 SNS를 통해 교류하고 이익에 민감하고 자기감정에 솔직할 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에 당당한, 그리고 개인생활을 존중하는 세대가 바로 BRAVO세대 인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BRAVO세대들을 가리켜 혹자는 ‘88만원세대’라고도 칭한다. 이것은 2007년 전후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의 20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비정규직 평균 급여 119만원에 20대 평균급여에 해당하는 73%를 곱한

11)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이응백·김원경·김선풍 교수 감수, 1998, 한국사전연구소

12) 삼성경제연구소, BRAVO세대를 경영하라

금액이 88만원임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 말은 2007년 8월 출간된 책 《88만원 세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우석훈씨는 "지금의 20대 중 상위 5% 정도만이 5급 사무원 이상의 단단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평균 임금 88만원 정도를 받는 비정규직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BRAVO의 특성을 가졌지만 처한 현실은 88세대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노동공급을 전담해야 하는 현대의 청년층을 평가할 때, 일부 경영계에서는 이들의 눈높이 임금이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상위 5%의 우수 대졸인력을 공기업이나 경쟁 대기업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초봉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지급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한국기업에 지배적인 호봉체계의 임금체계와 맞물려 인건비 상승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나머지 95%의 청년들은 낮은 초봉, 열악한 근무환경, 95%에 대한 사회적 패배주의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간 대부분의 청년고용정책 패러다임은 국가가 노동시장의 열패자나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시혜성의 청년정책들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즉 역동적으로 대한민국을 견인할 청년인력 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패배주의 젖은 나약한,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같은 감성주의적인 소극적 청년상에 국가가 시혜적 정책을 베풀어 왔던 정서가 강하다. 이러한 정서에서 탄생되는 정책은 앞서 주요국가에서 살펴본 결과처럼 청년실업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BRAVO세대를 대상으로 한 현재의 청년고용대책도 인문학적 그리고 청년 문화적인 배경이 고려되지 못하고 기계주의적인 정책이 제조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인력수급미스매치, 숙련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목적에 치우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청년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다소 결핍되어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예컨대 ‘중소기업 빈일자리 채우기’ 정책도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남아있으

니 취직 못한 청년들로 채우라는 식의 발상으로는 BRAVO세대를 이들 기업으로 이끄는 데 문화적 간극이 너무나도 커 역부족이다. 본질적으로 유사한 정책이지만 ‘World Class 300’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견기업 300개를 선정하여 우수청년들을 위한 유망기업 취업 리스트로 추천하는 것은 많은 청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안감을 정부가 잘 파악하여 정부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보증하는 방식을 취해 그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준 것이 성공비결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같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립되는 정책과 밀어내기식의 반강제적인 정책의 차이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차기정부의 핵심공약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수위에 청년특별위원회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두는 등 청년의 역동성을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에 투영하고자 하는 정책·문화적 노력은 과거 청년정책의 기계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일을 통해 꿈을 이루는 나라’라는 모토를 가지고 청년구직자들을 열패자로, 또는 패배주의에 젖은 구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힘찬 주역으로써 주목해야 하겠다. 즉, 이러한 문화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메뉴의 세부사항에 녹아들어가야만 한다.

## 2) 청년문화와 정합적인 정책의 재구성

### (1) 청년층 관점에서의 접근

노동공급측면에서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를 경영주들은 비판한다.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은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작동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근로여건을 감수하면서 까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높은 눈높이의 원인은 그들의 높은 콧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린 사업장 정책을 펼쳐 나가고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뿐만 아니라, 대기업 대비 장기근속 및 합리적인 업무부담 등 중소기업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업 규모별 정규직 비율이 대기업보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직무능력을 이해하고 함양하려는 직무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고 일반적인 스펙 쌓기에만 투자한 결과, 막연하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임금수준에 대해서 높은 눈높이를 가지게 되었을 수 있다. ‘대기업 취업=성공’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취업을 준비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인 것이 현실이다. 반면, 우수한 중소기업이라면 취업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학생이 있더라도 대학에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취업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 CEO 특강, 취업캠프, 정부주도의 우수 중소기업 정보공유 등을 통해 취업준비생들과 취업담당자들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대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진로설정에 실질적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 (2) 기업의 채용 및 인사관리문화의 개선방향

기업차원에서는 중소기업에서의 직장경험이 직무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무설계를 하고 청년문화에 정합적인 인사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업종별 협의체에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청년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여 기업의 조직문화에 청년문화 정합적인 인사관리가 현장에서 수행되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스펙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기업별 최소 스펙을 공지하고 이 이상의 스펙은 불필요하며 직무능력 중심으로 선별해 나가는 채용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 전경련-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 중앙회가 공동으로 인증하는 표준화된 핵심직무평가모형을 구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청년인턴제를 병행해 나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직무설계를 통해 직무능력을 함양하고 인턴을 통해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단순히 스펙에 안주하는 편의주의적 인사관리를 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젊은 피에 달려 있고 기업의 미래경쟁력도 청년들의 창발성에 달려있음을 기업들은 인지하여 획일화된 스펙으로만 평가되는 인재채용관행을 타파해 나가야 하겠다.

더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열사뿐만 아니라 기업 간에 상호협력적인 자매관계를 맺어 이들 기업 간에 공동채용, 공동훈련, 기업 간 인력교류 등을 왕성하게 진행해 나간다면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입직원·재직자에 대한 직무교육(OJT)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으나, 일반 소양교육은 사내에서 해나가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종별 기업협의체를 활성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 (3) 지역사회와 직업교육적 차원의 접근

취업 시 대기업·수도권 집중 현상은 압축성장의 폐해로서 기성세대가 만든 사회적 산물일 뿐만 아니라, 고학력자 과잉공급에 따른 취업난은 무분별하게 대학교를 양산한 과거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구직자가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 또한 우리 사회와 역사가 자초한 결과이다. \*\*대학교에서 '대기업 취업 ○○명'이라고 하며 학내외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기대감만을 유발한다. 작금의 현실은 지방소재 대학교 학생도 본인이 속한 지방의 취업을 꺼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선 영국 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것처럼 인력이 필요한 지방소재 기업과 지역단체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방거점대학을 육성하고 해당 지역의 졸업생을 유치하는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한 선배들과의 대화 채널을 활용하여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선배들이 자기주도적 역할을 더 많이 담당하고 있으며 사내 성장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 등의 정확한 노동시장 정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층에 홍보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만일 중소기업에 취업할지라도 직무역량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고, 경력사원을 위한 직무능력평가 중심의 노동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에서부터 직업과 직무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스펙 All-In 문화의 불필요성이 조기교육을 통해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특히 초중생의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 동안 직장체험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전문가의 지도하에 밀도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고교생의 직업의식 형성을 위한 지원을 위해 주니어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음을 해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직장 견학에 의한 취업 체험을 통해 직업의식 형성을 보완해줌과 동시에 보호자에게도 자녀들의 직업의식을 높여 주기 위한 세미나가 실시되고 있다. 적성이나 능력, 흥미, 혹은 직업, 산업의 실태를 바탕으로 장래 경력 형성에 관한 의식을 높여주는 지원 방법으로써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의 직무능력을 바로 이해하여 미래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고도의 직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 간다면 무분별하게 그리고 막연하게 높은 눈높이 임금을 가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직업 인식 변화를 위해 어린시기부터 진로탐색 교육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드라마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방 근무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회 홍보하는 노력도 하나의 문화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들도 청년들의 직무능력 함양 로드맵을 제시하여 성공한 중소기업 인재 Role-Model 창출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이 우수한 여가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 또한 필요한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청년층들의 문화나 여가활동이 가능한 시설들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4)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

그동안의 중앙단위 청년고용정책들은 그들의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다기 보다는 시혜적 성격이 강한 정책이 시행되어온 측면이 있다. 또한 지자체의 청년정책 담당관들은 고령층이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정책의 수립 및 고용서비스 제공에 있어 청년특별위원회를 두어 청년정책 및 문화 전문가들과 지역별 미팅을 정기적으로 열어 청년문화 친화적 정책을 수행하고 Best Practice를 확산시켜 청년고용정책 문화를 역동적으로 혁신시켜 나가야 한다.

먼저는 노동시장 민간포탈의 취업컨설턴트, 고용센터의 상담자들이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멘토라고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도리어 취업에 실패한 저임 비정규직 근로자에 의한 청년 취업 컨설팅으로 인식되어 취업경쟁력이 강한 청년들은 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혹은 전문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전문적이고 가치 있는 취업



서비스 그리고 역동적이고 당당한 미래상의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고용 정책 전달체계 종사자들의 교육과 보상, 그리고 문화적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학교 단위에서의 취업을 위한 마인드와 행정개혁 또한 시급하다. 정상적인 기간 안에 졸업하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장기 재학생들도 정책대상으로 고려해야 하고, 취업에 별관심이 없고 낙담한 학생들을 취업시장으로 유인하여 취업 버퍼링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커리큘럼’의 도입도 필요하다. 예컨대 100일간의 신문·타자·글쓰기 교육, 2시간 이상의 유산소운동, 취업준비생들이 9 to 6(근무시간)를 경험할 수 있는 학내 환경 조성(조직생활) 등을 통해 현재 직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더라도, 취업을 준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장기적으로 체화시키도록 도와주는 문화·심리적인 접근방법도 필요하다. 더불어 청년들의 취업마인드를 촉진시키기 위해 학교주도의 산학협력체계가 아니라 기업주도의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학협력교수를 기업과 학교의 겸임교수 등으로 임용하고 현장실습을 통해 산학협력활동의 참여를 학점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도 중소기업들의 시간당 임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임료가 낮은 것이 도리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담당직무와 훈련 그리고 향후 전망 등 중소기업의 청년경력형성 로드맵을 제시하여 근로자와 창업가로 성공하는 가교로서 중소기업에서의 경력이 기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하겠다.

## [ 참고 문헌 ]

- Belleville, A.(2001), “L'Utilisation des aides a l'emploi par les entreprises:permanence ou logique conjonturelle?”, Premieres Syntheses, 25(1), DARES.
- Betcherman, Gordon et al.(2007), “A Review of Interventions to Support Young Workers: Findings of the Youth Employment Inventory”, SP Discussion Paper No. 0715, The World Bank.
- Blundell, Richard, Monica Costa Dias, Costas Meghir, and John Van Reenen(2004), EVALUATING THE EMPLOYMENT IMPACT OF A MANDATORY JOB SEARCH PROGRAM.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2(4), (Jun., 2004), pp. 569-606.
- Board of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1980), Summary and Findings of the National Supported Work Demonstration,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
- Bonnal, L & A. Serandon(1994), “L'impact des dispositifs d'emploi sur le devenir desjeunes chomeurs: une evaluaton econometrique sur données longitudinales”, Economie eet Prevision 115, pp. 1-28.
- Brodady, T., B. Crepon, and D. Fougere(2000), Using Matching Estimators to Evaluate Alternative Youth Employment Programs: Evidence from France, 1986-1988.
- Cockx, Bart et al.(1996), On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nd Job Duration: a microeconomic evaluation for Belgium, European Association of Labour Economists Conference Papers Vol 4.
- Dorsett, Richard(2004),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Effect of the options on the labour market status of young men”,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7, Policy Studies Institute.

O'Connell, P.J. & McGinnity, F.(1997), "What works, who works? The employment and earnings effects of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among young people in Ireland, Wokr", Employment and Society, 11, pp. 639-661.

OECD (2010),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OECD Publishing.

OECD(2004), Employment Outlook 2004, Paris.

OECD(2005), Economic Survey: France, Paris.

OECD(2007), Taxes and Wages 2007, Paris.

OECD(2009), Jobs for Youth: France, Paris.

고용노동부(2011.2.24), 이명박 정부 3년간 고용노동정책 성과와 향후과제(보도자료).

고용노동부(2011.5.19),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발표(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0),「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일자리정책연구 제 6호..

금재호(2009), 청년고용대책.

김승택.허재준.조준모.전용일(2009),『고용과 성장』, 박영사.

김세종(2009), 『중소기업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방안』, 중소기업연구원.

김안국(2005),「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 분석」.『Working Paper』, 2005-10,한국직업 능력개발원.

남궁인철(2010),「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대한상공회의소(2006),『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2006. 6. 7),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만족도 조사(보도자료).

류지성(2009),「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Issue Paper』,삼성경제연구소  
(2010),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박성준(2007),『대졸 청년실업, 대졸자 자신에게는 문제 없는가』, 한국경제연구원.

박강우.홍승제(2009),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방하남·조준모·홍성우·류장수·심재웅(2011), 청년 일자리대책 평가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백필규(2005), 『중소기업 인력유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2010), 『중소기업 인력수급미스매치 실태분석 및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유길상 외(2011),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시장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고용노동부.
- 이규용(2009), 「청년인턴사업 평가」, 『월간노동리뷰』 2009년 10.11.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11), 「일자리지원사업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동임·김덕기(2005), 『독일의 자격제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병희(2003), 청년층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 김주영, 박혁, 황규성, 옥우석(2010),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심층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영현 외(2008), 청소년직장체험 관련사업의 국내외 운영조사.여구를 통한 연계방안 모색, 노동부.
- 이장우 외(2010),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창출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 전병유 외(2009),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전략, 노동부.
- 정인수, 남재량, 이승우(2006),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조준모 외(2010), 임금격차 등 임금체계 유연화 저해요인 및 극복방안, 고용노동부.
- 조준모 외(2010), 청년고용과 실태분석 및주요 이슈별 정책대안 연구, 고용노동부.
- 조준모 외(2011), 노동시장 채용패턴 변화에 따른 청년취업인턴제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조준모 외(2011), 청년 창업직업훈련 실태와 정책과제, 고용노동부.
- 주무현(2009), 『직무 및 교육 불일치의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방향』, 한국고용정보원.
- 채창균 외(200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외(2006),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외(2008), 인재대국형 고등교육-노동시장 연계의 쟁점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커리어(2009. 7), 2009 상반기 채용동향 및 트렌드.
- 통계청(2010. 10),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한국의 고용구조, 2004.

황성수(2009),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지원업종 확대방안 연구』, 중소기업  
연구원.